研究報告 175
1988. 12

農業金融 供給體系 改善을 위한 基礎調査研究

薛 光 彦(責任研究員)
奇 七 能(研 究 員)

韓國農村經濟研究院

빈 면

연구보고 175

농업금융공급체계 개선을 위한 기초조사연구

요 약

○ 농수산물 가격하락과 농가의 부채누증, 농수산물 수입개방과 상업농화에 따른 농업구조조정의 필요성, 금융자율화에 따른 농업금융기관의 역할변화 등, 농업과 농업금융기관을 둘러싼 여건변화는 현행 농업금융공급체계의 질적 개설을 필요로 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를 위한 선행과제로서 농가의 금융구조와 자금조달 및 운용, 정책농업금융과 상호금융의 재원조달 및 운용현황과 문제점을 분석·정리하고 이를 농업금융체계 개선방안 연구의 기초자료로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농가의 저축규모는 1987년말 현재 호당 256만원으로 도시가구 저축 479만원의 약 절반이다. 그리고 경영주연령이 증가할수록 농가의 저축규모가 감소하는 바, 경영주 연령이 50대이상인 농가가 우리나라 전체 농가의 과반수를 차지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농가자체에 의한 농업자금조달이 어렵다고 하겠다. 한편 조사농가중 저축보유액이 가장 많은 상위 10%의 농가가 조사농가의 전체저축의 약 45%를 보유하고 있어, 최근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농가저축은 일부 농가에 의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 농가의 저축행태를 보면, 저축의 목적은 대부분 예비적 동기이며 농업투자 특히 중장기투자재원 마련을 위한 저축은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저축기관의 선택에 있어서는 경제적인 측면(수익성, 안정성 등)보다는 인간관계(조합원 등)가 보다 중시되었고, 타금융기관과의 비교에 있어서도 이자율변화에 비탄력적으로 반응하였다. 한편 농가의 사금융저축인 계의 경우 계가입농가의 23%정도가 재산증식을 목적으로 계를 하

고 있으며, 그 나머지는 상부상조 및 소비용(여행 등) 계를 하였다.

○ 농가부채를 도시가구의부채와 비교해 보면, 동일한 소득수준일 경우 농가가 도시가구보다 많은 부채를 보유하고 있으며, 저소득계층으로 갈수록 농가의 부채규모가 도시가구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부채를 지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 단기농사자금은 현실적으로 농가의 영농비지원 이외에 농가의 자금수급불균형을 보완하는 기능을 갖는다. 이를 고려하여 농가의 외부차입 특히 사채 및 상호금융차입이 많은 시기인 1/4분기에 단기농사자금을 집중 방출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통화규제방식이 직접규제에서 간접규제로 전환되는 만큼, 농가가 자신에게 배정된 단기농사자금을 언제든 필요한 시기에 인출하여 자금수급을 조절할 수 있도록 「자동대출한도제」의 도입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 농업기계화자금은 그 상환방식이 1년 거치 4～7년 균분상환으로 되어 있는 바, 농기계의 자본소득 발생시기와 일치하지 않는다. 즉 농기계 사용초기에는 수리·수선비가 거의 들지 않지만, 해가 갈수록 기계마모도가 심하여 자본소득도 감소한다. 결국 상환기간이 채 끝나기도 전에 기계가 처분되어 버림으로써 부채누증의 한 요인이 되고 있다. 이를 감안하여 원리금 상환방식을 체감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 아울러 농기계의 자본소득은 주로 임경작업에서 발생하나 향후 농기계의 급속한 보급으로 대상 임경면적이 감소하게 되면 농기계의 자본수익율도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에는 트랙터 이앙기 콤바인은 자본수익율이 이자율(연 8%)보다 다소 높지만 향후 수익율이 감소하게 되면 농기계자금의 대출금리에 대한 인하요구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된다.

○ 농지구입자금은 그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영농후계자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 있다. 영농후계자가 다른 자금의 혜택(영농후계자자금, 단기농사자금 등)을 받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선정기준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지금까지 농지구입자금을 대출받은 농가의 80.6%가 농과계통의 학력과는 상관없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영농의지가 확고한 농가가 선정될 수 있는 규정이 명문화될 필요가 있다.

현재 농지구입자금의 지원한도(호당 700 만원)는 앞으로 예상되는 농지가격상승을 감안하여 상향조정될 필요가 있으며 상향조정에 따른 추가재원의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농지구입자금의 일시방출에 따른 농지가격상승을 막기 위해 지역별·시기별로 융자를 분산할 필요가 있다.

ㅇ 농가의 상호금융자금 사용용도를 보면 농업생산과 관련된 지출이 1983년 60.1%에서 1987년에는 38.8%로 격감하고 있다. 이는 상호금융의 성격이 농업금융에서 농촌지역 가계금융으로 변모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가계자금으로서의 상호금융자금의 이자율을 생산자금인 정책농업자금 금리수준으로까지 인하할 수는 없으나, 일반 금융기관의 대출금리수준을 감안하여 다소 하향 조정될 필요가 있다.

ㅇ 금융자율화에 따른 경쟁심화와 농촌의 도시화에 따른 금융수요의 다양화 등 상호금융을 둘러싼 여건변화는 상호금융의 역할변화와 경영방식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새로운 여건변화 속에서 상호금융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상호금융운영의 자율성 확대와 함께,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도록 영세조합의 통폐합이 이루어져야 한다.

빈 면

머 리 말

농산물가격 하락과 농업기계화에 따른 농가부채의 누증, 농수산물 수입개방과 상업농화에 따른 농업구조개편의 필요성, 금융자율화에 따른 농업금융기관의 역할변화 등, 농업과 농업금융기관을 둘러싼 여건변화는 현행 농업금융 공급체계의 질적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본연구에서는 이러한 개선을 위하여 선행되어야 할 과제로서 농가의 금융구조와 자금조달 및 운용현황을 분석하고, 현행 농업자금공급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정책금융과 상호금융의 재원조달 및 배분방식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정리함으로써 앞으로 예상되는 농업금융체계 개선방안 연구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끝으로 본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농림수산부 유통통계관실 및 전산실의 농가경제통계담당자 여러분과 농협중앙회 금융부 직원, 그리고 현지에서 보완조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경북·충남지역 통계사무소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1988. 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김 영 진

빈 면

목 차

제 1 장 서 론 1

제 2 장 농가의 금융구조

1. 농가의 자산 및 부채 2
2. 농가의 자금조달 21
3. 농가의 외부자금 조달과 지출 24

제 3 장 농업금융의 현황과 문제점

1. 농업금융의 개황 31
2. 정책농업금융의 현황과 문제 37

제 4 장 상호금융의 현황과 과제

1. 상호금융의 자금조달과 운용 76
2. 상호금융의 현황 78
3. 경제여건의 변화와 상호금융의 역할 89

제 5 장 요약 및 결론 95

표 목 차

제 2 장

표 2 — 1 농가자산 현황 ····· 3
표 2 — 2 농가금융자산 추이 ····· 3
표 2 — 3 농가총저축규모 추정(1987년말) ····· 4
표 2 — 4 저축보유 규모별 가구분포 ····· 5
표 2 — 5 경지규모별 · 지대별 저축보유 농가분포 ····· 6
표 2 — 6 경영주 연령별 저축보유액(평균) ····· 6
표 2 — 7 농가별 저축보유액 분포실태 ····· 7
표 2 — 8 저축하는 주요 목적 ····· 8
표 2 — 9 농가의 금융기관 이용 ····· 9
표 2—10 금융기관 선택의 주된 이유 ····· 9
표 2—11 환매조건부채권 구입액별 농가호수 ····· 10
표 2—12 타금융기관의 이자율이 더 높을 경우 거래선 이전여부 ··· 11
표 2—13 이자율의 차가 어느 정도면 옮길 것인가? ····· 11
표 2—14 계를 하는 이유 ····· 11
표 2—15 계의 목적별 납입실태 ····· 12
표 2—16 조사농가의 사채 대여실태, 1987 ····· 13
표 2—17 조사농가의 사채 대여금액 ····· 13
표 2—18 사채의 평균이자율 ····· 14
표 2—19 경지규모별 농가의 평균부채액, 1987(전국) ····· 15
표 2—20 부채규모별 가구분포, 1987 ····· 15
표 2—21 경지규모별·부채규모별 농가분포 ····· 16

표 2－22 소득계층별 농가·도시가구 부채비교, 1987 ····· 17
표 2－23 경지규모별·차입처별 부채현황, 1987 ····· 17
표 2－24 경지규모별·용도별 부채현황, 1987 ····· 19
표 2－25 농가의 부채상환 재원구성 변화추이 ····· 20
표 2－26 경지규모별 차입금 상환재원의 구성변화 ····· 20
표 2－27 농가재원의 운용구성비 변화 ····· 23
표 2－28 경지규모별 재원조달 및 운용구성 변화 ····· 24
표 2－29 농가의 외부자금 조달 구성변화(flow) ····· 25
표 2－30 단협을 통한 농가차입금 구성, 1987 ····· 26
표 2－31 차입금의 용도별 지출구성비 변화 ····· 27
표 2－32 경지규모별 차입금 용도, 1987 ····· 28
표 2－33 약정 차입기간별 농가차입금 구성비 ····· 28
표 2－34 경지규모별·약정차입기간별 농가차입금 구성, 1987 ····· 29
표 2－35 차입금중 자본적 지출과 중장기성 차입금 비중 ····· 30

제 3 장

표 3－1 농업의 대 GNP 비중과 농업자금 대출비중 ····· 32
표 3－2 농협 점포수 비중, 1987 ····· 32
표 3－3 농협 예·대출금의 금융기관에서의 비중(1987 년말) ··· 33
표 3－4 농협중앙회 농업자금 재원조달(연말잔액) ····· 35
표 3－5 농협예수금 중 농업자금 구성비(연말잔액 기준) ····· 36
표 3－6 농협계통기관의 농업자금 배분현황(1987 년말 잔액) ····· 37
표 3－7 정책농업자금의 비중 ····· 39
표 3－8 농협계통조직을 통한 대농민 대출금 추이 ····· 39
표 3－9 정책농업자금의 지원절차 ····· 42
표 3－10 주요 농업정책자금 지원제도 ····· 43
표 3－11 지원형태별 정책자금 공급액 ····· 45
표 3－12 융자기간별 공급현황 ····· 46
표 3－13 정책농업자금의 배분(연말잔액 기준) ····· 47

표 3－14 경지규모별 대 농민 주요 정책자금의 배분(1987년 공급액 기준) ····· 47
표 3－15 농가계층별 정책자금 배분의 격차, 1987 ····· 48
표 3－16 농업기계화자금의 농가계층별 불평등 ····· 49
표 3－17 주요 정책자금의 차입금의 용도 ····· 50
표 3－18 단기농사자금의 수급상황 ····· 52
표 3－19 단기농사자금의 경영비 지원비율 ····· 54
표 3－20 연도별·분기별 단기농사자금 공급액 ····· 54
표 3－21 단기농사자금 배정실태 ····· 56
표 3－22 농가의 분기별 차입금과 단기농사자금의 공급, 1987 ··· 56
표 3－23 농기계 투자재원 구성 추이 ····· 58
표 3－24 농업기계화 지원자금 조달실적 ····· 59
표 3－25 농가계층별 농업기계화자금 차입현황, 1987 ····· 60
표 3－26 농업기계화 자금의 융자조건, 1988 ····· 60
표 3－27 농업기계 자본소득의 추이 ····· 61
표 3－28 기종별 자본수익률('86년 기준) ····· 62
표 3－29 농가의 경지규모별 농기계 임작업률 ····· 62
표 3－30 비농민 토지소유현황과 임차료 유출현황 ····· 63
표 3－31 농지구입자금 지원실적 총괄('88.5.31 기준) ·····64
표 3－32 구입농지의 유형 ····· 65
표 3－33 구입농지의 거리 ····· 65
표 3－34 지원농가 형태별 소유면적 변화 ····· 66
표 3－35 농지구입자금 지원농가의 분류 ····· 66
표 3－36 농지구입자금 대상자 선정 배점기준표 ····· 67
표 3－37 육성자금의 대부연도와 투입용도와의 관계 ····· 68
표 3－38 농협의 융자대상자 선정 비중 ····· 70
표 3－39 주요정책자금 금리수준 ····· 72
표 3－40 농업자본의 순수익률 ····· 72
표 3－41 경지규모별 농가수, 1987 ····· 73

제 4 장

표 4 — 1 단위조합의 재원조달과 운용방법 ····· 77
표 4 — 2 상호금융 예수금의 추이 ····· 78
표 4 — 3 예수금중 저축성 예금의 비중 ····· 79
표 4 — 4 상호금융 예수금 중 농가저축비중 ····· 80
표 4 — 5 지역별 상호금융 예수금 ····· 80
표 4 — 6 상호금융 예수금중 농가저축 (추정) ····· 81
표 4 — 7 상호금융자금 조달 및 운용실적 (단협) ····· 82
표 4 — 8 지역별 상호금융의 예 • 대현황 ····· 83
표 4 — 9 단위조합의 대출현황 ····· 83
표 4—10 단위조합의 대출형태 (건수별) ····· 84
표 4—11 단위조합의 대출형태 (금액별) ····· 84
표 4—12 상호금융의 분기별 공급비율 ····· 85
표 4—13 상호금융자금 조달 및 운용실적 (중앙회 특별회계) ····· 87
표 4—14 상호금융 대출자금의 사용용도 ····· 88
표 4—15 여유자금 운용시의 금융상품별 수익률 비교 ····· 90
표 4—16 상호금융 대출을 받지 못한 이유 ····· 91
표 4—17 우체국 및 상호신용금고와의 단기예수금 금리비교 ····· 92
표 4—18 대출금리 1% 인하시 적자전환 단위조합 분포 ····· 93
표 4—19 예수금 규모별 단협 분포 ····· 94

그 림 목 차

제 2 장

그림 2 — 1 농가의 자금조달 구성 변화추이 ····· 22

제 3 장

그림 3 — 1 농협의 자금조달 및 배분체계 ····· 34
그림 3 — 2 정책농업자금 조달 및 운용체계 ····· 38
그림 3 — 3 정책농업자금 지원체계도 ····· 40
그림 3 — 4 영농자금 배정 및 융자체계도 ····· 53

제 4 장

그림 4 — 1 상호금융자금 조달 및 운용 체계도 ····· 77

제 1 장
서 론

우리 나라의 농업금융은 각종 정책자금의 확대공급과 상호금융의 급격한 성장 등을 통하여 그동안 양적으로 괄목할만한 성장을 보여왔다. 이러한 농업금융의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최근들어 농가의 금융사정은 농산물가격하락과 농가부채의 누증 등으로 악화되고 있으며, 농업과 농업금융을 둘러싼 여건의 변화 즉, 농수산물수입개방, 농촌공업화, 농촌의 도시화, 상업농화에 따른 농업구조개선의 필요성, 금융자율화조치 등의 각종 여건 변화는 농업금융의 양적 성장과 아울러 질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농업금융의 질적 변화는 농업정책자금의 효율적 배분, 농업금융 이자율의 조정, 대출재원의 확보방법 개선, 금융자율화에 따른 농업금융기관의 경쟁체제 확립, 상호금융의 역할 재정립 등 농업금융공급체계의 새로운 정립을 요구하고 있다. 농업금융공급체계의 개선을 위해서는 제도개선에 앞서서 현행 농업금융제도의 현황과 농업금융의 대상인 농가의 금융구조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작업을 통하여 문제점을 파악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농업금융의 실수요자인 농가의 자산 및 부채상황에 대한 분석과 아울러 농가의 자금조달 및 운용현황을 파악하고, 현행 농업금융 공급체계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정책농업금융과 상호금융이 어떠한 메카니즘 속에서 농업금융의 재원을 조달 운용하고 있으며, 자금배분상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하는 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함으로써 앞으로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농업금융 공급체계의 개선방안연구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제 2 장
농가의 금융구조

1. 농가의 자산 및 부채

가. 농가의 자산

농가의 자산은 농림수산부 「농가경제조사요령」에 의하면 고정자산, 유동자산, 유통자산으로 구분된다.

이 구분에 따르면 고정자산은 1회(통상 1년을 기준) 사용으로 그 가치가 전부 소모되지 않고 수년도에 걸쳐 가치가 이전되는 생산수단으로서 토지, 건물, 대농기구, 대동물, 대식물이 여기에 해당된다. 유동자산은 1회(1년) 사용으로 가치가 모두 소모되는 자산으로서 고정자산에 비해 유동성(liquidity)이 높은 것으로서, 여기에는 소동물, 재고농산물, 재고생산자재가 포함된다. 한편 유통자산은 일반회계에서 말하는 유동자산[1] 중에서 금융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현금, 예·저금, 대부금품, 보험·적립금, 유가증권, 계(불입액), 미수입금 등이 포함된다.

농가의 자산구성을 보면 1987년말 현재 고정자산이 약 2,805만원으로

---

1) 일반회계에서는 금융자산 중에서도 일부 유동성이 낮은 것은 고정자산 또는 투자 및 기타자산으로 분류한다.

서 전체 자산의 84.8%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유통자산 약 281만원, 유동자산 약 223만원이다〈표2－1〉. 한편 최근 농가자산구성의 변화추이를 보면 고정자산의 비중이 대체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 반면, 유통자산의 비중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즉, 고정자산의 비중은 1980～87년 사이에 88.1%에서 84.8%로 다소 감소한 데 비해 유통자산의 비중은 4.7%에서 8.5%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유통자산의 증가는 주로 제도금융저축, 그 중에서도 특히, 예·저금의 비약적인 증가에 기인한다〈표2－2〉. 즉, 1980～87년 사이에 현금, 사금융저축의 비중이 각각 18.7%, 38.4%에서 8.5%, 26.4%로 크게 감소한 반면, 예·저금의 비중은 31%에서 50.2%로 급증하고 있다.

표2－1 농가 자산 현황

단위 : 천원, %

구 분	1980		1984		1985		1986		1987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고정자산	11,795	88.1	23,403	87.0	24,810	87.4	25,985	86.5	28,049	84.8
유동자산	963	7.2	1,712	6.4	1,806	6.4	1,854	6.2	2,234	6.8
유통자산	625	4.7	1,779	6.6	1,762	6.2	2,204	7.3	2,808	8.5
자산총액	13,384	100.0	26,894	100.0	28,378	100.0	30,043	100.0	33,091	100.0

자료 : 농림수산부, 「농가경제조사결과보고」, 각년도.

표2－2 농가 금융자산 추이

단위 : 천원

구 분	1980		1984		1985		1986		1987	
		%		%		%		%		%
현 금	117	18.7	229	12.9	190	10.8	212	9.6	238	8.5
예·저금	194	31.0	558	31.4	681	38.6	943	42.8	1,409	50.2
보 험 금	32	5.1	186	10.5	155	8.8	238	10.8	305	10.9
대 부 금	125	20.0	401	22.5	415	23.6	465	21.1	477	17.0
계납입금	115	18.4	244	13.7	215	12.2	245	11.1	265	9.4
기 타	42	6.8	161	9.1	106	6.0	101	4.6	114	4.1
계	625	100.0	1,779	100.0	1,762	100.0	2,204	100.0	2,808	100.0

자료 : 농림수산부, 「농가경제조사결과보고」.

이와 같이 제도금융저축 특히 예·저금의 비중이 급속히 증가한 반면 현금과 사금융저축의 비중이 크게 감소한 이유는 농촌지역에 각종 금융기관이 늘어남에 따라 사금융이 제도금융으로 흡수된 점과 상호금융 예수금이 높은 예수금리를 배경으로 급속히 증가한 데 있다.

나. 농가의 저축

우리는 앞에서 농가의 유통자산(금융자산) 중에서 현금이외의 금융저축이 최근 급증하고 있음을 보았다. 여기서는 농가금융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농가의 저축현황을 보다 세부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여기에서 농가저축이라 함은 경제학에서 일반적으로 정의하는 개념인 소득과 소비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농가의 연말 유통자산(stock개념)에서 현금보유를 제외한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농가저축에는 연도말 현재 농가가 보유하고 있는 예·저금, 보험, 적립금, 계불입금, 대부금, 유가증권, 미수금품 등이 포함되고 있다.

1 저축규모

1987년말 현재 농가 호당 평균저축보유액은 256만원으로 농가전체의 총저축규모는 약 4조 8,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중에서 현물저축을 제외한 금융저축은 약 4조 6,000억원 정도로 추정된다. 한편 농가저축보유액 중에서 제도금융저축과 사금융저축의 구성비는 각각 71%와 29%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표 2 - 3〉.

표 2 - 3 농가 총저축규모 추정(1987년말)

구 분	제도금융 저축	사금융 저축	계	현물저축제외
농가호당평균(만원)	181.9	74.2	256.1	246.0
전체농가(억원)	34,033	13,883	47,916	46,027
	(71.0)	(29.0)	(100.0)	(96.1)

주 : 전체농가 187만 1천호(1987) 기준.

자료 : 농림수산부, 「농가경제조사결과보고」, 1988.

표 2 - 4 저축보유 규모별 가구분포

단위 : %, 만원

저축보유규모 / 구분	50만원 미만	50~100 만원	100~300 만원	300~500 만원	500~1,000 만원	1,000만 원이상	계	평균저축 보유액
농가	28.8	16.5	30.0	11.9	8.2	4.6	100	256.1
	(32.7)	(17.2)	(27.8)	(10.6)	(7.9)	(3.8)	(100)	(246.0)
도시가구	16.0	9.1	30.1	16.7	17.0	11.1	100	479.0

주 : ( )안은 현물저축을 제외한 경우.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충남·경북지역 농가조사 결과(546호).
한국은행, 「저축시장조사」, 1988.

〈표 2 - 4〉는 농가의 저축상황을 도시가구의 경우와 비교한 것인데 농가의 호당 평균저축액은 1987년 현재 256만원인데 비하여 도시가구의 평균저축액은 479만원으로서 농가의 저축이 도시가구의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다. 저축보유 규모별 분포를 비교해 보면, 저축보유액이 100만원 미만인 가구의 비중이 농가의 경우는 전체농가의 약 50%인데 비하여 도시가구는 25%에 불과하며 300만원 이상의 고액저축보유가구의 비중은 도시가구가 전체가구수의 44.8%인데 비하여 농가의 경우는 22.3%에 불과하다.

2 경지규모별 · 지대별 저축보유 현황

〈표 2 - 5〉는 저축보유농가의 분포를 경지규모별 · 지대별로 분류한 것인데, 지대별 분포상황을 보면 도시근교의 경우가 타지역의 경우보다 고액저축농가가 많이 분포되어 있고, 이 지역 농가의 평균저축보유액도 월등히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경지규모별 평균저축보유액은 경지규모가 0.5 *ha* 미만인 영세농과 2 *ha* 이상의 대농계층이 여타계층과는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0.5 *ha*~2.0 *ha* 사이의 소농이나 중농층에 있어서는 평균저축보유액에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고액저축보유 농가의 비중은 전반적으로 볼 때 경지규모에 비례하여 증가하고 있다.

표 2 - 5 경지규모별 · 지대별 저축보유 농가분포

단위 : %, 만원

구분 \ 저축규모		50만원 미만	50~100 만원	100~300 만원	300~500 만원	500~1,000 만원	1,000만원이상	계	평균저축 (만원)
경지규모별	0.5ha미만	32.4	16.7	34.3	7.8	5.9	2.9	100.0	185.1
	0.5~1.0ha	32.4	12.2	29.5	15.8	4.3	5.8	100.0	256.5
	1.0~1.5ha	29.7	18.7	29.0	9.0	8.4	5.2	100.0	237.9
	1.5~2.0ha	20.5	18.2	34.1	10.2	12.5	4.5	100.0	260.1
	2.0ha 이상	24.2	17.7	21.0	19.4	14.5	3.2	100.0	317.0
지대별	도시근교	20.0	11.7	33.3	13.3	8.3	13.3	100.0	408.0
	평야	23.0	19.5	24.8	19.5	8.0	5.3	100.0	254.5
	중간	29.4	18.8	31.2	8.3	9.2	3.2	100.0	220.6
	산간	35.5	12.9	31.0	11.0	7.1	2.6	100.0	210.5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충남 · 경북 농가조사결과(546 호).

3 경영주 연령별 저축보유 분포

농가의 저축보유액을 경영주의 연령별로 살펴보면 농가의 경우 30대 경영주가 278만원으로 가장 많은 저축을 갖고 있고, 경영주의 연령이 높은 농가일수록 저축보유액이 감소하여 60세 이상 경영주의 저축보유액은 164만원에 불과하다〈표 2 - 6〉.

표 2 - 6 경영주 연령별 저축보유액(평균)

연령별	농가 (A)	도시가구(B)	A / B (%)
~30세미만	229 만원	268 만원	85.4
30 ~ 39	278	389	71.5
40 ~ 49	271	567	47.8
50 ~ 59	216	516	41.9
60세이상	164	627	26.2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충남 · 경북지역 농가조사 결과(546 호).
한국은행, 「저축시장조사」, 1988.

이에 비해 도시가구의 경우에는 농가의 경우와는 달리 대체로 가구주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저축보유액도 증가하여 그 결과 경영주 또는 가구주의 연령이 높을수록 도시와 농촌간의 저축보유규모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도시가구의 경우에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승진, 호봉증가 등의 이유로 소득이 증가하는 반면에 농가의 경우에는 고령화가 소득증가와 큰 상관관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가계비, 특히 자녀의 고등교육비, 분가지출, 관혼상제비용 등이 50대 이후부터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위와 같은 사실과 함께 현재 우리나라 전체농가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농가들의 경영주 연령이 50대 이상이란 것을 고려한다면 농업생산자금의 조달을 농가자체에게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농가저축의 불균형 분포

〈표 2 — 7 〉은 저축보유액의 크기에 따라 546호 조사농가를 10등분하

표 2 - 7 농가별 저축보유액 분포실태

등 위	농 가 호 수	평균저축보유액 (만 원)		전체농가저축 총액에 대한 해당 농가저축 비중	누 계
1	55	7.6	3.1	0.3	0.3
2	54	22.5	9.2	0.9	1.2
3	55	41.9	17.1	1.7	2.9
4	54	65.3	26.6	2.7	5.6
5	55	103.1	42.0	4.2	9.8
6	55	147.0	59.9	6.1	15.9
7	54	209.0	85.2	8.4	24.3
8	55	293.1	119.5	12.0	36.3
9	54	461.1	188.0	18.6	54.9
10	55	1,098.7	447.9	45.1	100.0
평 균		245.3	100.0		

주 : 충남 · 경북지역 농가경제 조사대상농가(546호)를 저축규모순으로 10등분하여 하위에서 상위 순으로 열거.

여 하위로부터 상위의 순서대로 평균저축보유액과 그 상대적 비중을 나타낸 것이다. 이 표에 의하면 저축보유액이 가장 많은 상위 10%에 해당하는 농가들이 조사농가 전체저축보유액의 약 45%를 차지하고 있어 농가저축이 상위계층에 편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조사농가의 평균저축보유액은 호당 245만원이나 이들 농가의 70% 이상이 저축보유액에 있어 평균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이는 농가의 저축보유액이 최근들어 급속히 증가해 온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증가가 일부 상위계층의 농가에 의해 이루어져 왔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해 준다.

다. 농가의 저축행태

농가의 저축행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충남, 경북지역에 소재하는 546호 농가에 대하여 저축의 목적, 계가입 실태, 금융기관선택의 이유, 예수금 이자율변화에 따른 반응 등에 대하여 설문조사한 결과(응답농가수 398호)에 의하면 저축하는 목적에 있어서는 일시적 여유자금의 활용이나 불시의 목돈 필요에 대비한 예비적 동기가 29.7%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자녀교육비 마련이 17.3%, 영농자금마련이 14.7%, 부채상환을 위한 것이 10.1%의 순으로 나타났다〈표2－8〉. 이에 비해 농지구입이나 농기계구입, 또는 대동물구입 등 농업생산과 관련된 고정자산투자를 위한 저축목적은 7%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이는 농업생산을 위한 중장기 투자재원을 정책적으로 공급해 주지 않는 한 농가자체의 재원조달에 의한 중장기 투자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을 시사해 준다.

표 2－8 저축하는 주요 목적

구분	부채상환	자녀교육비마련	농지구입	농기계구입	대동물구입	관혼상제자금마련	영농자금마련	대부받기위해	노후대비	일시적여유자금활용	이농준비	내구성소비재구입	불시의목돈소요에대비	이자수입	기타
개	111	190	26	14	38	83	161	19	51	189	4	26	137	27	22
%	(10.1)	(17.3)	(2.4)	(1.3)	(3.5)	(7.6)	(14.7)	(1.7)	(4.6)	(17.2)	(0.4)	(2.4)	(12.5)	(2.5)	(2.0)

주 : 주요 목적 보기중 최대 3개씩 선택하도록 하여 집계했음.
총 응답농가 398호.

농가의 제도금융기관 이용현황을 보면 단위조합이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우체국, 농협중앙회의 지부, 새마을금고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표2－9〉. 농가가 금융기관을 선택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하게 되는 요소로는 농가자신이 농협의 조합원이기 때문이거나 아는 사람이 특정 금융기관에 종사하기 때문에 그 기관을 이용하게 되는것이 가장 큰 이유이고, 그 다음으로는 안정성, 수익성, 금융기관이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가 하는 점 등이다〈표2－10〉.

농가의 금융기관 선택기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단위조합을 선택한 농가의 경우 그 선택이유가 조합원이기 때문이라고 대답한 농가가 27%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거리(19.4%) 안정성(16.8%) 등의 순서인데 반하여, 우체국을 선택한 농가의 경우는 수익성(19.6%)을 가장 큰 선택이유로 들었고 그 다음이 인적관계(11.2%) 안정성(10.2%)의 순이었다. 반면 새마을금고를 택한 농가는 주로 가까운 거리와 인적관계에 선택기준을 두고 있다.

우체국을 선택한 농가가 수익성을 금융기관 선택이유중 첫번째로 들고 있는 것은 우체국이 단기성 고수익 상품인 환매조건부채권(환매채)을 취급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표2－9 농가의 금융기관 이용

단위 : %

계	농협지부	단 협	우체국	새마을금고	은 행	보험회사	신 협	기 타
100.0	7.0	60.0	14.7	5.8	4.1	3.0	2.9	2.5

표2－10 금융기관 선택의 주된 이유

단위 : %

금융기관	수익성	안전성	거 리	인적관계	대 부	조합원	기 타
전 체	13.3	16.3	14.7	9.4	6.9	17.9	21.5
단 협	6.7	16.8	19.4	6.0	9.7	27.0	14.4
우 체 국	19.6	10.2	6.5	11.2	-	-	52.5
새마을금고	11.9	7.1	23.8	19.0	4.8	21.4	12.0

빈 면

표 2 - 12 타금융기관의 이자율이 더 높을 경우 거래선 이전 여부

구 분	옮기겠다	안옮기겠다	모르겠다	무 응 답	계
명	160	153	75	10	398
(%)	(40.2)	(38.4)	(18.8)	(2.5)	(100.0)

표 2 - 13 이자율의 차가 어느 정도면 옮길 것인가?

구 분	1%이하	1%정도	1.5%정도	2%이상	계
명	1	34	49	76	160
(%)	(0.6)	(21.3)	(30.6)	(47.5)	(100.0)

표 2 - 14 계를 하는 이유

구분	총 조사 농가 호수	계 가입 농가 호수	금융기관보다 계를 더 선호하는 이유							
			이자율이 높다	농협저축제도를 잘 몰라서	현물취급 때문에 인플레의 손해가 없다	친목과 상부상조가 중요하다	농협에 매월불입하기가 번잡	목돈을 전부 불입하기 전에 목돈을 탄다	기타	합계
명	398	308	18	0	17	230	11	24	8	308
(%)	(100.0)	(77.4)	(5.8)	(0.0)	(5.5)	(74.7)	(3.6)	(7.8)	(2.6)	(100.0)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충남·경북지역 농가조사, 1988.

다음은 사금융에 있어서 농가의 저축행태에 대해 보기로 한다. 우선 계의 경우 농가의 계가입율은 1987년말 현재 77.4%로 나타났다〈표2-14〉 이는 가장 최근의 계에 대한 조사(장경수 1979)에서 나타난 계가입율 96.1%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인데 비록 조사대상에서 차이가 있다 해도 계 가입농가가 최근들어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들 계 가입농가가 금융기관에 비해 계를 더 선호하는 이유는 '친목과 상부상조가 중요하다'고 답변한 농가가 230호로서 전체 계 가입농가의 74.7%나 되었다. 이에 비해 경제적 측면에서 계가 금융기관의 저축보다

유리하기 때문에 계에 가입한 농가는 계 가입농가의 19.2%에 불과했다. 다시 말해서 농가는 계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경제적인 동기보다는 친목이나 상부상조를 보다 중시하고 있다 하겠다. 그 결과 조사농가중 계 가입농가가 들고 있는 계는 그 목적에 있어서 상부상조와 소비용(주로 여행 등 친목) 계가 전체의 83.5%로서 대종을 이루고 있다〈표2－15〉.

한편 농가는 계의 목적에 따라서 납입형태 및 시기에 다소 차이를 두고 있다. 즉, 재산증식을 목적으로 하는 저축계의 경우 현금계는 월납, 현물계는 연납이 주종을 이루며,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하는 계는 현금계의 경우 월납 현물계의 경우엔 수시 납부가 대부분이다. 그리고 소비용계는 거의 대부분 현금계로서 월납이 대종을 이룬다. 요약해서 말하면 현금계는 대부분 월납이고, 현물계는 연납과 수시납부가 많은데, 연납은 주로 쌀계를 중심으로 한 재산증식계에서, 수시납부는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하는 계에서 행해진다.

표 2－15 계의 목적별 납입실태

구분 / 목적	납입형태	납입시기					
		월	분기	반년	연	수시	합계
재산증식	현금	41	2	0	17	0	60
	현물	2	0	3	30	2	37
	소계	43	2	3	47	0	137
상부상조	현금	132	12	25	24	59	252
	현물	0	1	3	9	53	66
	소계	138	13	28	33	112	318
소비용	현금	103	14	17	16	21	171
	현물	1	0	0	0	0	1
	소계	104	14	17	16	21	172
합계	현금	276	28	42	57	80	483
	현물	3	1	6	39	55	104
	소계	279	29	48	96	135	587

주 : 조사농가(398호)중 계가입농가(308호)의 계 납입실태를 집계했음.

사채는 전체농가의 약 29%가 대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2 — 16〉. 충남·경북지역 현지조사 결과 총 조사응답농가 398호 중 사채를 대여한 농가는 115호이며, 이들이 대부한 사채건수는 141건으로서 전체 조사농가에 대해서는 호당 0.35건, 사채 대부농가에 대해서는 호당 1.23건에 이르고 있다.

조사농가 호당 사채(「농가경제조사결과보고」에서는 대부금이라고 표현됨)는 47.3만원(「농가조사결과보고」에 의하면 87년말 전국 평균은 47.7만원)이고, 사채대부농가에 한정하면 호당 약 164만원에 이른다〈표 2 — 17〉. 한편 총 사채대여금 중에서 현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75%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나머지 25%는 현물 사채로 나타났다.

표 2 - 16 조사농가의 사채 대여 실태, 1987

조사농가 호수(A)	대여건수별 농가호수					총사채 건수(C)	C/A	C/B
	1건	2건	3건	4건	소계(B)			
호					호	건	건	건
398	94	18	1	2	115	141	0.35	1.23
(100.0)					(28.9)			

주 : (　　)안은 조사농가호수에 대한 백분비.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충남·경북지역 농가조사.

표 2 - 17 조사농가의 사채 대여 금액

총사채대여금액[1]			조사농가 호수 (B)	사채대여 농가호수 (C)	A/B[2]	A/C
현금	현물	소계(A)				
		만원	호	호	만원	만원
14,170	4,671	18,841	398	115	47.3	163.8
(75.2)	(24.8)	(100.0)				

1) 1987년말 잔액 기준.

2) '87년말 전국평균은 47.7만원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충남·경북지역 농가조사.

표 2 - 18 사채의 평균이자율

구 분	현 금	현 물	평 균[1]
연 %	17.9 (136)	23.2 (5)	18.1 (141)

1) 건수를 기준으로 함. ( )안은 건수.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충남·경북지역 농가조사.

이러한 사채는 비제도권 금융으로서 안전성의 측면에서는 제도권 금융보다 불리하나 그 수익성의 측면에서는 상당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즉 조사결과에 따르면 사채 이자율은 현금사채 17.9%, 현물사채 23.2% 평균 18.1%로 나타났다〈표 2 - 18〉. 사채의 약정·상환기간이 일반적으로 1년임을 감안할 때 사채는 일반 제도권 금융상품(저축성예금)보다 높은 수익을 가져다 준다 하겠다.

라. 농가의 부채 현황

농가의 부채가 얼마나 되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조사대상농가가 어떤 농가들이며, 조사지역은 어디며, 조사시점은 언제인가에 따라 각기 그 결과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이 많다.

농가의 부채현황분석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는 농림수산부의 「농가경제조사결과보고」와 충남, 경북지역의 표본농가 546호(이들 농가는 농림수산부가 농가경제조사를 위하여 선정한 표본농가와 일치함)를 조사한 결과 등이다. 부채보유액은 연도말 기준이기 때문에 연도중의 부채액보다는 다소 낮게 평가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이유는 대부분의 농가가 하반기에 단기농사자금이나 상호금융대출금 등 부채의 일부를 상환하고 있기 때문이다.

표 2 - 19 경지규모별 농가의 평균부채액, 1987(전국)

단위 : 만원

농가평균	0.5 *ha*미만	0.5 ~ 1.0 *ha*	1.0 ~ 1.5 *ha*	1.5 ~ 2.0 *ha*	2.0 *ha*이상
239.0	146.5	216.1	256.7	253.1	370.6

자료 : 농림수산부, 「농가경제조사 결과보고」, 1988.

먼저 「농가경제조사결과보고」에 나타난 자료를 근거로 해서 살펴보면 1987년말 현재 전국의 농가평균 부채액은 239만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2 - 19〉. 이를 경지규모별로 보면 0.5 *ha* 미만의 영세농이 146.5만원, 0.5 ~ 1.0 *ha*의 소농이 216만원, 1.0 ~ 2.0 *ha*의 중농이 250 만원이 약간 넘는 부채를 지고 있고, 2.0 *ha*이상의 농가는 부채보유액이 370.6 만원으로 경지규모가 클수록 부채액도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위의 평균부채액은 부채없는 농가를 포함한 평균치이므로 실제로 부채를 지고 있는 농가들의 부채규모는 늘어나게 될것이다.

다음으로 부채규모별로 농가분포를 살펴보면, 부채 없는 농가가 전체조사농가의 21.8%이며, 100만원에서 300만원 사이의 부채를 지고 있는 농가가 전체농가의 27.8%로 가장 많고 300만원 이상의 부채를 지고 있는 농가는 전체농가의 28.5%에 달한다〈표 2 - 20〉.

한편 부채규모별 분포를 도시가구와 비교해 보면 농가의 경우는 부채 없는 농가가 21.8%인데 반하여 도시가구의 경우는 70.8%가 부채 없는 가구로 나타나고 있어 농가의 경우 부채문제가 일반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 - 20 부채규모별 가구분포, 1987

단위 : %

구분 \ 부채규모	없음	30만원 미만	30 ~ 50	50 ~ 100	100 ~ 300	300 ~ 500	500 ~ 1,000	1,000 만원이상	계
농가	21.8	5.7	5.9	10.3	27.8	13.5	11.9	3.1	100.0
도시가구	70.8	1.1	1.0	2.7	12.1	5.7	2.0	4.7	100.0

주 : 도시가구의 부채는 한국은행 조사시점이 1987년 6월인데 비하여 농가조사는 1987년 12월 말이므로 이 비교에는 약간의 문제가 있음을 밝혀둔다.

표 2 - 21 경지규모별·부채규모별 농가분포

단위 : %

부채규모 / 경지규모	없음	30만원 미만	30 ~ 50	50 ~ 100	100 ~ 300	300 ~ 500	500 ~ 1,000	1,000만원이상	계
0.5 ha미만	44.1	8.8	6.9	13.7	17.6	4.9	3.9	0.0	100.0
0.5~1.0 ha	20.1	5.0	3.6	8.6	33.1	12.9	12.9	3.6	100.0
1.0~1.5 ha	13.5	7.7	5.8	11.6	27.7	15.5	16.1	1.9	100.0
1.5~2.0 ha	18.2	1.1	10.2	8.0	36.4	11.4	11.4	3.4	100.0
2.0 ha이상	14.5	3.2	3.2	8.1	21.0	27.4	12.9	9.7	100.0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충남·경북지역 농가조사.

〈표 2 - 21〉는 부채규모별 농가분포를 경지규모별로 세분화한 것인데, 이 표에 의하면 경지규모가 클수록 부채규모가 큰 농가의 비중이 대체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예를 들면 부채가 없거나 부채액이 30만원 미만인 농가의 비중은 경지규모가 0.5 ha 미만인 영세농의 경우가 52.9%로 가장 높고 2.0 ha 이상의 대농의 경우는 17.8%로 가장 낮다. 반면에 부채규모가 500만원 이상인 농가의 비중은 2.0 ha 이상의 대농의 경우 22.6%로 가장 높고, 0.5 ha 미만의 영세농은 3.9%에 불과하다. 이러한 결과는 경지규모가 농가의 경영규모나 투자규모, 그리고 외부 차입능력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표 2 - 22〉은 농가와 도시가구의 평균 부채보유액을 소득계층에 따라 분류한 것이다. 이 표에 의하면 월평균소득이 120만원을 넘는 농가를 제외하고는 모든 소득계층의 농가가 동일한 소득수준의 도시가구보다도 월등히 많은 부채를 보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소득수준이 낮은 계층의 농가일수록 동일한 소득계층의 도시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는 도시가구와는 달리 농가는 소비주체인 동시에 생산주체이기 때문에 농업생산에 필요한 자금을 외부로부터 차입하여 생산활동을 계속하지 않을 수 없다는 특성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지금까지는 농가의 부채규모를 경지규모나 소득계층별로 살펴 보았는데 이하에서는 농가가 어떤 기관에 대해 부채를 지고 있는가를 살펴 보고자

표 2 - 22 소득계층별 농가 · 도시가구 부채 비교, 1987

단위 : 만원, %

구분 \ 월소득규모	25 만원 이 하	25 ~ 40	40 ~ 60	60 ~ 80	80 ~ 100	100 ~ 120	120 만 원초과	평 균
농 가 (A)	241	204	236	264	268	310	222	240
도시가구(B)	70	79	117	137	139	219	359	126
A/B (%)	344	258	202	193	193	142	62	190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경북 · 충남지역 농가조사.
한국은행, 「저축시장조사」, 1988.

한다.

〈표 2 - 23〉는 충남, 경북지역의 표본농가 중에서 부채 있는 농가들의 부채구성을 차입처별로 분석한 결과이다. 농가 평균으로 보면 부채의 75.9 %가 제도금융기관 부채이며, 사채의 비중은 24.1 %이다. 제도금융 부채 중에서도 농협부채가 전체 부채의 70 %를 차지하고 있어 농가부채의 대부분이 농협부채임을 알 수 있다. 사채의 비중이 비교적 높은 농가계층은 2.0*ha*이상의 대농으로서 사채비중이 전체 부채의 36.9 %를 차지하고 있고, 기타 농가계층은 대체로 20 % 내외의 사채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사

표 2 - 23 경지규모별 · 차입처별 부채 현황, 1987

단위 : %

경지규모 \ 구분	제도금융			사금융			합 계
	농 협	기 타 금융기관	소 계	비농가	농 가	소 계	
~ 0.5 *ha*	71.0	8.9	79.9	9.6	10.5	20.1	100.0
0.5 ~ 1.0*ha*	76.4	3.5	79.9	4.1	15.9	20.1	100.0
1.0 ~ 1.5*ha*	67.0	8.7	75.7	11.6	12.7	24.3	100.0
1.5 ~ 2.0*ha*	76.2	5.2	81.4	6.6	12.0	18.6	100.0
2.0 *ha*~	58.8	4.3	63.1	20.0	17.0	36.9	100.0
평 균	70.0	5.9	75.9	10.1	14.0	24.1	100.0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충남 · 경북지역 546 호 농가조사결과에 의함.

채 중에서도 농가 상호간의 금전대차결과가 14%로 비농가로부터의 사채보다(10.1%) 다소 높은 구성비를 보이고 있다.

농가가 왜 자금을 차입하며,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는 앞으로의 농업금융정책의 방향을 모색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이하에서는 농가부채를 용도별로 구분해서 살펴 보고자 한다. 〈표2-24〉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농가의 부채중 농업생산을 위한 부채는 농가 평균으로 볼 때 48.1%, 겸업자금을 위한 것이 2.7%, 비생산성 부채가 49.2%로서 농가부채의 절반 가량이 농업생산과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다. 비생산성부채 중에서는 채무상환 및 이자지급을 위한 부채가 16%로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토지·건물·대동물 및 대농구 구입을 위한 부채 비중이 38.4%로 농업생산을 위한 부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1987년말 기준으로 볼 때 농업용 고정자산투자를 위한 부채가 농업생산과 관련된 부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뜻한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할 점은 표에서 나타난 결과는 연말 기준이기 때문에 영농을 위한 단기성 농업부채는 대부분 연말에 상환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의 해석을 그대로 수용하는 데는 다소 문제가 있다는 점이다.

경지규모별로는 1.5~2.0*ha* 농가계층이 전체 부채 중에서 농업생산과 관련된 부채비중이 가장 높아서(63%), 이 계층의 농가가 외부자금을 가장 건전한 방향으로 사용하였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부채의 용도별 특성을 보면 대농구 구입과 관련된 부채가 전체부채액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경지규모가 큰 농가일수록 높게 나타나고 있어서 농기계 구입과 관련된 외부차입이 중·대농계층에서 많았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비생산성 부채 중에서 채무상환 및 이자지급을 위한 부채비중은 경지규모가 작은 농가일수록 높게 나타나고 있어 영세농일수록 부채상환을 위한 부채가 문제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농가가 부채상환을 어떻게 하여 왔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최근 4년간의 부채상환재원의 구성변화를 살펴 보면, 〈표2-25〉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농업수입의 비중이 크게 감소한 반면 차입금의 비중이 크게 증

표 2 – 24 경지규모별 · 용도별 부채 현황, 1987

단위 : %

용도 \ 경지규모			농가평균	0.5 ha미만	0.5~1.0 ha	1.0~1.5 ha	1.5~2.0ha	2.0 ha 이상
생산성부채	농업생산	토지	7.8	3.0	7.1	3.3	8.0	18.9
		건물	10.0	18.6	13.0	6.4	11.0	7.3
		대동물	9.6	6.5	8.9	8.2	17.0	6.4
		대농구	11.0	5.5	7.1	11.9	15.4	13.5
		비료·농약·사료·소동물등	9.7	8.0	8.6	12.6	11.6	5.1
		소계	48.1	41.6	44.7	42.4	63.0	51.2
	겸업자금		2.7	6.2	5.2	1.4	0.0	2.8
	합계		50.8	47.8	49.9	43.8	63.0	54.0
비생산성부채	농업외재산구입		8.1	7.2	6.3	11.3	6.2	7.1
	관혼상제		5.2	2.4	4.7	5.9	6.5	4.8
	교육비		4.6	5.5	4.7	5.5	3.8	3.3
	의료비		1.8	5.8	2.4	0.8	0.6	2.4
	채무상환 및 이자		16.0	20.6	17.7	16.7	12.2	14.4
	기타자금		13.3	10.8	14.6	15.9	7.2	13.9
	합계		49.2	52.0	50.1	56.2	37.0	46.0
총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 충남, 경북지역 농가조사결과

가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추세는 ──경지규모별로 농가에 따라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경지규모에 상관없이 나타나고 있다〈표2－26 참조〉.

표 2－25 농가의 부채상환재원 구성 변화추이

단위 : %

구 분	1984	1985	1986	1987
농 업 수 입	75.0	61.9	56.5	50.3
겸 업 수 입	2.0	4.9	3.3	1.9
사 업 이 외 수입	1.6	4.8	6.0	4.7
토지등부동산매각	6.2	3.1	4.4	3.5
예 금 인 출	0.8	2.1	2.4	2.7
차 입 금 증 가	12.3	18.9	22.8	34.1
기 타	2.1	4.3	4.6	2.9
계	100.0	100.0	100.0	100.0

자료 : 농협중앙회.

표 2－26 경지규모별 차입금 상환재원의 구성변화

단위 : %

구 분		1984	1985	1986	1987
0.5 ha 미 만	농업수입	68.0	51.9	48.3	38.6
	차 입 금	15.3	21.2	28.3	40.4
0.5 ~1.0 ha	농업수입	72.5	59.7	51.8	45.0
	차 입 금	16.0	20.2	20.7	39.4
1.0 ~ 1.5 ha	농업수입	79.3	65.7	58.4	54.3
	차 입 금	9.0	17.3	26.4	30.7
1.5 ~ 2.0 ha	농업수입	74.9	68.2	60.7	56.5
	차 입 금	10.1	16.5	26.6	30.3
2.0 ha 이 상	농업수입	81.0	67.3	64.8	58.9
	차 입 금	5.6	18.2	13.2	26.7

자료 : 농협중앙회.

2. 농가의 자금조달

가. 농가의 자금조달

농가의 자금조달은 그 조달재원에 따라서 크게 내부조달과 외부조달(차입)로 구분된다. 1987년 현재 농가의 자금조달액은 호당평균 1,394만원이며, 전체농가로 보면 26조 817억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농업수입, 겸업수입, 사업이외수입, 이전수입, 고정자산 매각, 유통자산 감소 등의 내부조달이 85.1%이고, 외부로부터의 차입은 14.9%에 불과하다.

최근 4년간(1984~87) 농가의 자금조달 추이를 살펴 보면 전체 조달재원구성에 있어서 농외수입과 유통자산 감소를 통한 자금조달 비중이 대체로 증가한 반면, 고정자산매각 수입과 외부차입금의 비중은 대체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즉, 겸업수입, 사업이외수입, 이전수입 등의 농외수입과 유통자산매각 수입의 비중이 1984~87년 사이에 각각 19.5% 14.4%에서 22.0%, 15.6%로 증가한 데 비해, 차입금 증가와 고정자산매각에 의한 자금조달의 비중은 같은 기간에 각각 16.3%, 14.2%에서 14.9% 10.8%로 감소하고 있다〈그림 2-1〉.

나. 농가의 자금운용

농가는 자금운용에 있어서 재산적 지출에 가장 많은 재원을 사용하고 있으며, 그 다음이 가계비 농업지출 등의 순이다〈표 2-27〉. 즉, 1987년 현재 총가용재원의 45.8%가 재산적 지출에 37.3%가 가계비에 충용되었으며 농업지출 즉, 농업경영비에는 12.6%만이 충용되었다. 한편, 최근 4년간(1984~87)의 자금운용추이를 보면 각 항목별 지출구성에 대체로 큰 변화는 없으나 다만 고정자산증가(매입)의 비중이 대체로 감소해 온 반면, 유통자산매입(증가)의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1984~87년 사이에 고정자산매입을 위한 지출구성비가 14.8%에서 10.3%로 감소한 반면, 유통자산매입을 위한 지출구성비는 18.4%에서 21.7%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최근

그림 2 - 1 농가의 자금조달 구성 변화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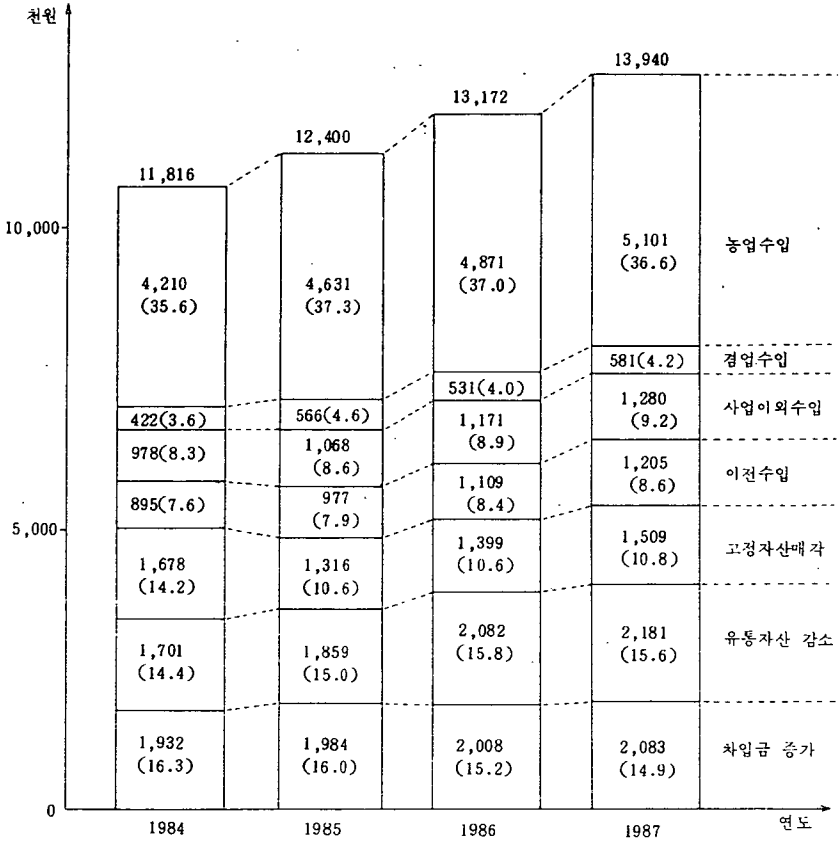

주 : 「농가경제조사결과보고」의 "재산적 수입"란에서 "유통자산의 감소"에는 전기 이월금, 유가증권의 매각, 예저금품의 인출, 계 및 보험금수취, 대여금품 회수, 용도미정 현물인출 등의 매월 거래실적이 합산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기 이월금의 경우 1월(연초)분만 계산하고 나머지는 제외했다. 마찬가지로 자금운용분석에서는 "재산적 지출"중 차기 이월금은 12월(연말)분만 계산하였다.

표 2 - 27 농가재원의 운용 구성비 변화

단위 : %

구 분	1984	1985	1986	1987
농 업 지 출	11.9	12.8	13.3	12.6
겸 업 지 출	1.9	2.8	1.9	2.2
사 업 외 지 출	1.8	1.8	1.8	1.8
가 계 비	36.1	37.8	37.8	37.3
분 가 지 출	0.3	0.3	0.4	0.5
재 산 적 지 출	48.0	44.5	44.8	45.8
고정자산매입	14.8	10.4	10.9	10.3
유통자산매입	18.4	19.6	19.7	21.7
차 입 금 상 환	14.8	14.4	14.2	13.8

자료 : 농림수산부, 「농가경제조사결과보고」, 각년도.

농가의 자산구성에 있어서 유통자산 특히, 예저금 등이 크게 증가해 온 사실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와 같이 유통자산의 매입에 점차 많은 재원이 충용되는 것은 농가가 자금운용에 있어서 실물자산인 고정자산 보다는 금융자산인 유통자산을 보다 더 선호하고 있음을 뜻한다 하겠다.

다. 경지규모별 자금조달과 운용

〈표 2 — 28〉는 최근 농가의 자금조달재원과 운용방식에서 비교적 뚜렷하게 나타난 변화추이를 경지규모별로 정리한 것이다. 이 표에 의하면 대체로 경지규모 1.5 *ha* 이하의 계층에서는 농외수입 즉 겸업수입, 사업외수입, 이전수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 데 비해, 경지규모 1.5 *ha* 이상의 계층에서는 사업외수입의 비중이 커지는 대신 겸업수입의 비중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한편 조달재원의 운용방식에서 나타난 변화추이를 살펴 보면 경지규모 2.0 *ha* 이하 계층에서는 고정자산 매입의 비중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며, 0.5 *ha* 이상의 계층에서는 농업지출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바 있는 유통자산 매입비중의 증가경향은 경지규모에는 크게 관계없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2 - 28 경지규모별 재원조달 및 운용 구성 변화

구 분 / 경지규모	조달재원의 상대적 변화	운용방식의 상대적 변화
0.5 *ha*미만	증가 : 겸업수입, 이전수입 사업외 수입 감소 : 고정자산 매각, 차입	감소 : 고정자산 매입
0.5 ~ 1.0 *ha*	증가 : 겸업수입, 이전수입 사업외 수입, 유통자산 매각 감소 : 고정자산 매각	증가 : 농업지출, 겸업지출 유통자산 매입 감소 : 고정자산 매입
1.0 ~ 1.5 *ha*	증가 : 사업외수입, 이전수입	증가 : 농업지출, 유통자산 매입 감소 : 고정자산 매입
1.5 ~ 2.0 *ha*	증가 : 사업외 수입 감소 : 겸업수입	증가 : 농업지출 감소 : 고정자산 매입
2.0 *ha*이상	증가 : 사업외 수입, 이전 수입, 유통자산 매각 감소 : 겸업수입	증가 : 유통자산 매입, 농업지출

주 : 조달재원 = 농업수입 + 겸업수입 + 사업이외수입 + 이전수입 + 고정자산매각 + 유통자산매각 + 차입금 증가

운용방식 = 농업지출 + 겸업지출 + 사업이외지출 + 가계비 + 분가지출 + 고정자산매입 + 유통자산매입 + 차입금 상환

3. 농가의 외부자금 조달과 지출[1)]

가. 농가의 외부자금조달 구성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농가의 총조달자금 중에서 외부조달(차입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최근 4년간 대체로 15 ~ 16 % 수준을 유지하면서 약간

1) 여기서의 외부자금(차입금)은 flow로서, 일정시점(통상 연말 기준)에서 집계된 부채(stock)와는 다른 개념이다.

씩 감소하는 경향에 있다. 그런데 이 외부자금의 구성을 차입처별로 구분해 보면 1987년 현재 제도금융자금이 64.6% 사금융자금이 34.4%에 이르고 있다〈표 2 — 29〉.

농가의 외부자금구성의 변화추이를 보면 1980년대에 들어 외부자금구성에 급격한 변화가 일어났음을 알 수 있다. 즉, 제도금융자금의 비중이 1980 ~ 87년의 7년사이에 33.9%에서 64.6%로 급증한 데 비해, 사금융자금은 같은 기간에 65.6%에서 34.4%로 격감했다. 다시 말해서 제도금융자금의 공급액(flow)이 같은 기간에 연평균 35.8%씩 증가한 데 비해 사금융자금의 공급액은 연평균 12.9% 증가한 데 불과했다. 이러한 현상은 외부자금의 구성의 측면에서 볼 때 농가가 제도금융기관으로부터 비교적 좋은 조건(장기 또는 저리)으로 자금을 공급받았음을 뜻하는 동시에, 매년 급증하고 있는 외부차입금이 주로 제도금융자금을 중심으로 일어났음을 뜻하고 있다. 한편 농가의 입장에서 볼 때 매년 조달해야 할 외부자금(flow)중 사채의 비중이 아직도 34.4%로서 적지 않은 수준인 바 1987년에 농가에 공급된 총사채규모는 약 1조 3,4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호당 사채평균 716천원 × 1,871천호 = 1조 3,396억원).

표 2 - 29 농가의 외부자금 조달 구성변화(flow)

단위 : 천원, %

차입처	1980		1983		1985		1986		1987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제도금융	158	33.9	825	47.1	1,034	52.1	1,115	55.5	1,346	64.6
농협	138	29.5	756	43.2	932	47.0	1,021	50.8	1,226	58.8
기타금융기관	20	4.4	69	3.9	102	5.1	94	4.7	120	5.8
사금융	306	65.6	912	52.1	932	47.0	857	42.7	716	34.4
농가차입	244	52.3	674	38.5	628	31.7	602	30.0	487	23.4
비농가차입	62	13.3	238	13.6	304	15.3	255	12.7	229	11.0
가수금품	2	0.5	15	0.8	18	0.9	35	1.7	21	1.0
계	467	100.0	1,752	100.0	1,984	100.0	2,008	100.0	2,083	100.0

자료 : 농림수산부, 「농가경제조사결과보고」, 각년도.

표 2 - 30 단협을 통한 농가차입금 구성, 1987

단위 : %

구 분	상 호 금 융	정 책 자 금	공제대출	경제사업	계
비 중	65.5	13.5	1.5	5.2	100.0

자료 : 농협중앙회.

이러한 사채시장은 제도금융의 확대에 따라 그 구조가 상당히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사채를 농가차입과 비농가차입으로 구분할 때 농가차입의 비중은 1980 ~ 87 년 사이에 52.3 %에서 23.4 %로 크게 감소했으나 비농가차입의 비중은 같은 기간에 13.3 %에서 11.0 %로 감소한 데 불과했다. 다시 말해서 1980 년대에 들어 크게 확대된 제도금융은 농가들간의 사금융을 흡수하는 데에는 크게 기여했으나 비농가로부터의 차입은 충분히 흡수하지 못했다. 그 결과 1987 년 농가가 차입한 사채중 약 47 %가 비농가차입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1980 년 20.3 %에 비하면 크게 신장한 수준이다.

제도금융자금은 거의 대부분 농협으로부터 공급되고 있다. 전체 제도금융자금중 농협공급자금의 비중은 1980 ~ 87 년 사이에 87.3 %에서 91.1 %로 증가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농협의 공급자금확대는 주로 단협의 상호금융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단협의 공급자금은 상호금융대출금(소위, 일반대출), 정책자금, 공제대출금, 경제사업자금 (주로 외상공급) 등으로 구성되는데 농협중앙회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이 중 상호금융자금이 1987 년 공급액기준으로 65.5 %로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이 정책자금 13.5 %, 경제사업 5.2 %, 공제대출금 1.5 %의 순이었다 〈 표 2 — 30 〉.

나. 농가의 차입금 지출용도

농가의 용도별 차입금 지출현황을 보면 1987 년 현재 농업경영비나 자본적지출 등 생산적인 지출의 비중이 47.8 %로서 가장 많고 교육비, 관혼상제, 의료비 등 소비적 지출은 22.1 %이었다 〈 표 2 — 31 〉. 이들 용도별 지출의 최근 5 년간 동향을 보면 생산적 지출의 비중은 대체로 감소

표 2 - 31 차입금의 용도별 지출구성비 변화

단위 : %

구 분 \ 연 도	1983	1984	1985	1986	1987
생산적 지출	65.5	58.1	43.3	47.3	47.8
농업경영비	34.0	28.4	19.6	25.8	23.6
자본적지출	29.9	28.3	23.0	20.1	24.2
소비적 지출	24.8	22.7	34.4	26.8	22.1
교 육 비	11.5	9.1	12.5	10.0	7.8
관혼상제	4.4	3.1	5.0	3.1	2.9
의 료 비	2.7	2.6	4.3	3.2	2.6
기 타	9.7	19.2	22.3	25.0	30.1
구채상환	8.5	16.2	19.1	23.5	24.8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 농협.

해 왔으나 소비적 지출의 비중은 그다지 뚜렷한 증감경향을 보이지는 않고 있다. 한편 舊債상환을 위한 차입금지출비중은 1983 ~ 87 년 사이에 8.5 %에서 24.8 %로 급증하고 있는데, 1987 년 장기저리의 사채대체자금공급, 일부 정책자금의 이자면제와 장기분할상환 등의 조치에 의해 그 증가속도가 다소 둔화되고 있다.

1987 년 현재 차입금 지출용도를 경지규모별로 나누어서 보면 전체차입금중 생산적 지출의 비중은 경지규모가 증가함에 따라서 커지고 있다〈표 2 — 32〉. 즉, 경지규모 0.5 *ha* 미만의 계층에서는 총차입금의 38 %가 생산적인 용도로 지출되는 데 비해 경지규모 2.0 *ha* 이상의 계층에서는 생산적 지출의 비중이 약 60 %에 달하고 있다. 생산적 지출 중에서도 특히 중장기투자에 해당하는 자본적 지출의 비중은 경지규모의 증가에 따라서 커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가계소비지출의 비중은 경지규모의 증가에 따라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한편 약정차입기간별 농가차입금 구성을 보면 3 년 미만의 단기성자금

표 2 - 32 경지규모별 차입금 용도, 1987

단위 : %

구 분	0.5 ha미만	0.5～1.0 ha	1.0～1.5 ha	1.5～2.0ha	2.0ha이상
생 산 적 지 출	38.0	44.9	50.5	54.4	59.7
농업경영비	21.6	20.9	25.9	23.5	25.8
겸 업 지 출	1.4	1.9	1.6	1.1	0.5
자본적지출	15.0	22.1	23.0	29.8	33.4
가 계 비 지 출	26.4	23.0	22.7	19.3	18.7
기 타 지 출	34.0	30.7	25.7	25.1	21.3
타 인 대 여	1.7	1.3	1.0	1.1	0.2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 농협중앙회.

의 비중이 1987 년말 현재 85.6 %로서 대부분을 차지하며 3 년 이상의 중장기성자금의 비중은 14.4 %에 불과하다〈표 2 - 33 〉. 그리고 이들 단기성 및 중장기성차입금 구성비의 변화추이를 보면 단기성자금의 비중은 대체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1 년 미만의 자

표 2 - 33 약정 차입기간별 농가차입금 구성비

단위 : %

기간 \ 연도	1983	1984	1985	1986	1987
단 기 성	86.6	91.7	91.3	90.2	85.6
6 개월 미만	12.0	7.9	7.3	2.6	2.3
6 개월～1 년	64.1	60.7	49.1	49.3	31.4
1 ～3 년	10.6	23.1	34.9	38.3	51.9
중 · 장 기 성	13.4	8.3	8.7	9.8	14.4
3 ～5 년	4.4	2.8	1.9	2.3	1.9
5 ～7 년	4.7	3.8	3.9	4.4	8.1
7 년 이상	4.2	1.7	3.0	3.1	4.4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 농협중앙회.

금의 비중은 1983～87년 사이에 76.1%에서 33.7%로 격감한 반면 1～3년 자금의 비중은 같은 기간에 오히려 10.6%에서 51.9%로 증가했다. 아울러 중장기성 자금의 경우 5년 이상의 자금의 비중이 최근 뚜렷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상을 요약하면 최근 약정차입기간별 농가차입금 구성을 보면 약정기간 1년 미만의 자금은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1～3년 또는 5년 이상의 자금은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끝으로 약정차입기간별 농가차입금 구성현황을 경지규모별로 구분해 보면 단기성 및 중장기성차입금의 구성비가 경지규모에 관계없이 대체로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표2－34〉. 한편 차입금중 자본적지출비중과 중장기성차입금 비중을 경지규모별로 비교해 보면 평균농가의 경우 전체 차입금중 24.2%가 자본적 지출로 사용되는 데 비해 중장기성자금차입 비중은 14.4%에 불과하다〈표2－35〉. 이는 농가가 자본적 지출을 위해 단기성 차입금을 사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중장기성차입금의 과부족상태를 경지규모별로 구분해서 살펴 보면, 경지규모 0.5*ha* 미만의 계층에서는 오히려 중장기성자금의 일부(전체차입금의 1.9%)가

표 2－34 경지규모별·약정차입기간별 농가차입금 구성, 1987

단위 : %

구 분	평 균	0.5*ha*미만	0.5～1*ha*	1～1.5*ha*	1.5～2*ha*	2*ha*이상
단기성차입	85.6	83.0	85.3	86.5	86.3	85.2
6개월 미만	2.3	1.5	1.9	3.0	1.7	3.5
6개월～1년	31.4	29.3	29.7	33.2	31.8	31.9
1～3년	51.9	52.2	53.7	50.3	52.8	49.8
중·장기성차입	14.4	16.9	14.7	13.6	13.7	14.8
3～5년	1.9	1.3	2.0	2.0	2.8	1.3
5～7년	8.1	12.2	9.9	7.3	3.6	7.7
7년이상	4.4	3.4	2.8	4.3	7.3	5.8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 농협중앙회.

표 2 - 35 차입금 중 자본적 지출과 중장기성 차입금 비중

단위 : %

구 분	평 균	0.5 ha 미만	0.5 ~ 1.0 ha	1.0 ~ 1.5 ha	1.5 ~ 2.0 ha	2.0 ha 이상
차입금중 자본적 지 출 비 중 (A)	24.2	15.0	22.1	23.0	29.8	33.4
차입금중 중·장기성 자금비중(B)	14.4	16.9	14.7	13.6	13.7	14.8
A－B	9.8	△1.9	7.4	9.4	16.1	18.6

자료 : 〈표 2 － 33 〉와 〈표 2 － 34 〉.

자본적지출 이외의 용도로 지출된 반면, 경지규모 0.5 ha 이상의 계층에서는 자본적 지출에 비해 중장기성 자금이 부족한데, 그 부족한 정도는 경지규모가 클수록 크게 확대되고 있다.

제 3 장
농업금융의 현황과 문제점

1. 농업금융의 개황

가. 농업금융의 위치[1)]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함께 농업의 국민총생산(GNP)에 대한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으로서 우리 나라의 경우도 역시 농업의 대 GNP 비중이 낮아지고 있다 〈표 3-1〉.

농업이 GNP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과 관련하여 농업부문에 대한 자금공급이 우리 나라 전체 민간부문 대출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보면 1980년대에 대체로 8% 정도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농업의 국민총생산에 대한 기여도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다만 1980년도 후반

---

1) 농업금융은 그 정의에 따라서 구체적인 내용도 다르게 된다. 여기서는 일단 "농협계통기관의 농업관련대출"을 농업금융의 정의로 한다. 즉 타산업금융과의 비교분석, 비교적 신뢰할만한 통계자료의 구비, 농협이 사실상 농업금융의 전담기관이라는 현실 등 때문에 농협이외의 제도금융과 사금융은 농업금융의 위치를 분석함에 있어서 일단 제외한다.

표 3 - 1 농업의 대 GNP 비중과 농업자금 대출비중

단위 : 억원 (경상가격), %

구분 / 연도	GNP			대 출 금		
	전산업(A)	농 업 (B)	B / A	민간부문 대 출 (C)	농협의 농업 자금대출 (D)	D / C
1980	366,723	46,635	12.7	183,804	15,269	8.3
1982	507,246	67,464	13.3	310,222	26,249	8.5
1984	664,082	76,205	11.5	464,114	35,936	7.7
1986	839,758	86,535	10.3	653,036	50,816	7.8
1987 (잠정)	975,317	92,255	9.5	760,096	63,271	8.3

자료 : 농림수산부, 「 농림수산주요통계 」, 1988.
농협중앙회, 「 정책자금대출실무교재 」.

표 3 - 2 농협 점포수 비중, 1987

단위 : 개소, %

구 분		도 시		농 촌		계	
		점 포 수	구성비	점 포 수	구성비	점 포 수	구성비
예금 은행	농협중앙회	282	65	150	35	432	100
	은 행	2,186	93	152	7	2,338	100
	계	2,468	89	302	11	2,770	100
저축 기관	단 협	399	18	1,795	82	2,194	100
	마을금고등	4,117	42	5,721	58	9,838	100
	계	4,516	38	7,516	62	12,032	100
합 계 (A)		6,984	47	7,818	53	14,802	100
(농 협) (B)		(681)	26	(1,945)	74	(2,626)	100
(B / A)		(10 %)		(25 %)		(18 %)	

자료 : 농협중앙회, 「 정책자금대출 실무교재 」, 1988.

표 3 - 3 농협 예·대출금의 금융기관에서의 비중(1987년말 기준)

단위 : 억원, %

구 분	통화금융기관			비통화금융기관			계		
	전 체 (A)	농 협 중앙회 (B)	B / A (%)	전 체 (C)	단 협 상호금융 (D)	D / C (%)	전 체 (E)	농 협 (F)	F / E (%)
예수금규모	457,204	45,841	10.0	463,199	51,072	11.0	920,403	96,913	10.5
대출금규모	420,479	44,217	10.5	359,617	36,186	10.1	780,096	80,403	10.3

자료 :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 1988.

에 들어오면서 그 차이가 다소 완화되고 있는데, 이는 농업부문에 대한 자금공급의 증가라는 면도 있겠지만 농업성장의 상대적 둔화에 더 큰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농업금융이 금융시장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가 하는 것을 점포수와 예금 및 대출금규모를 중심으로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농협이 농업금융의 전담기관이란 점을 감안하여 농협점포가 전국의 예금은행 및 저축기관의 점포수와 비교하여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살펴 보면 1987년 말 현재 농협점포수는 2,626개소로서 전체 예금은행 및 저축기관 점포수의 18%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역별로는 도시소재 금융기관의 10%, 농촌지역 금융기관의 25%를 농협계통의 금융기관이 차지하고 있다. 또한 농협은 대부분의 점포가 농촌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예수금 및 대출금규모에 있어서는 농협계통기관이 전체 금융기관의 예금 및 대출금의 약 10% 수준을 차지하고 있다〈표 3-3〉.

나. 농협계통 금융의 조달 및 배분

농협은 조직체계상 「은행법」에 적용받는 농협중앙회와 「신용협동조합법」에 적용받는 단위조합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농협중앙회는 「은행법」에 따른 일반금융업무 외에도 정부정책에 의한 정책금융업무(자금조달 및 배분)를 수행하고, 단위조합은 상호금융업무와 정책금융실무(대출 및 회수)를 수행한다. 이와 같은 업무수행에 따른 자

그림 3 - 1 농협의 자금조달 및 배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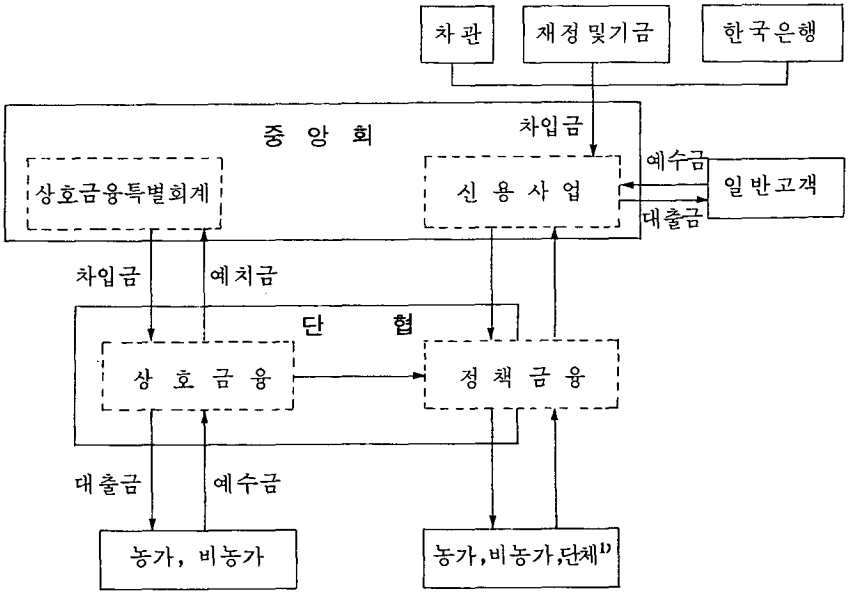

1) 단체에는 농수산관련 단체 및 기업이 포함됨.

금조달 및 배분체계를 간단히 도식화하면 〈그림 3-1〉과 같다.

이를 농업자금의 조달 및 배분의 측면에서 보면 농협중앙회는 정부의 특정 정책의 수행을 위촉받아서 한국은행차입금, 재정대하금, 각종기금 차입금 및 차관자금으로 재원을 조달하는 한편 부족한 재원을 농협예수금의 일부로 충당한다. 이렇게 조성된 자금은 주로 정책금융자금으로서 정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서 농가·비농가 또는 농업관련 단체 및 기업에 공급된다.

이에 대해 단위조합은 정책자금의 대출 및 회수업무 외에 상호금융을 통해서 조합원 상호간의 자금수급을 조절한다. 예컨대 여유자금이 있는 조합원으로부터 예수금을 받아서 자금이 부족한 조합원에게 대출을 함으

로써 조합원간의 자금과부족상태를 조절한다. 그리고 지역간 또는 조합간의 자금수급은 중앙회의 상호금융특별회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여유자금이 비교적 풍부한 도시·근교지역 소재 단협으로부터 예치금을 받아서 이를 자금이 부족한 단협에 공급한다. 이와 같이 상호금융은 조합원간 또는 조합간의 자금수급을 조절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다만 조합원인 농민들이 대체로 자금부족상태에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비조합원으로부터의 자금조성을 촉진하고 단협의 수지개선을 위한 방법으로서 비조합원에 대한 대출이 일정한도(당해 회계년도 사업량의 1/3)내에서 인정되고 있다.

다음으로 농협의 농업자금조달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중앙회의 경우 농업자금대출금 3조 5,207억원(1987년말 잔액기준)중에서 농협예수금이 1조 995억원(전체의 31.2%)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각종기금 차입금 1조 972억원, 재정대하금 8,521억원, 한국은행 차입금 3,341억원, 차관자금 1,378억원 순이었다〈표3-4〉. 이들 재원의 조

표 3 - 4 **농협중앙회 농업자금[1]재원조달(연말 잔액)**

단위 : 억원, %

재원 \ 연도	1975	1980	1982	1984	1986	1987
예 수 금[2]	693 (30.5)	4,114 (41.2)	5,661 (40.1)	8,320 (41.4)	9,652 (37.5)	10,995 (31.2)
한은차입금	576 (25.4)	967 (9.7)	408 (2.9)	694 (3.5)	371 (1.4)	3,341 (9.5)
재정대하금	602 (26.5)	2,340 (23.4)	3,448 (24.4)	4,627 (23.0)	7,190 (28.0)	8,521 (24.2)
각 종 기 금	204 (9.0)	2,074 (20.8)	3,810 (27.0)	5,548 (27.6)	7,481 (29.1)	10,972 (31.2)
차 관 자 금	194 (8.6)	494 (4.9)	784 (5.6)	902 (4.5)	1,022 (4.0)	1,378 (3.9)
대 출 금 계	2,269 (100.0)	9,989 (100.0)	14,111 (100.0)	20,091 (100.0)	25,716 (100.0)	35,207 (100.0)

주 : 1) 중앙회 신용사업 대출금에서 일반자금(저축추진자금) 제외.

2) 예수금은 총 농업자금 대출금에서 타 조달재원을 공제하여 계산했음.

자료 : 농협중앙회, 「정책자금대출실무교재」.

달추이를 보면 농협예수금의 비중은 1980～87년 사이에 41.2%에서 31.2%로 크게 감소한 반면 각종기금 차입금의 비중은 같은 기간에 20.8%에서 31.2%로 급증했다. 이에 대해 재정대하금의 비중은 대체로 25%내외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차관자금의 비중은 점차 감소하고 있다. 다만 한국은행 차입금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해 오다가 1987년 농가사채대체 저리자금공급과 관련하여 최근 크게 상승했다.

농업자금조달재원에서 농협예수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저하하는 것과 관련하여 중앙회 예수금에서 농업자금이 조달되는 정도를 보면 1987년말 현재 1조 995억원의 예수금이 농업자금의 재원으로 조달되었는데 이는 총예수금 4조 6,523억원의 23.6%에 해당한다. 〈표 3-5〉에 따르면 농협예수금에서 농업자금이 조달되는 정도는 1982년 31.4%에서 이후 대체로 감소하여 1987년에는 23.6%였다.

이에 반하여 단위조합의 상호금융은 그 재원조달에 있어서 전적으로 예수금에 의존하고 있다. 물론 각 단협에 따라서는 중앙회 특별회계로부터의 차입금이 재원의 일부를 구성하나 그 차입금은 여유자금이 풍부한 조합의 예수금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전체 단협의 측면에서 보면 상호금융대출금의 재원은 상호금융예수금이라고 할 수 있다.

끝으로 농협의 농업자금배분에 대해서 보면 중앙회의 경우 총농업자금 대출금 3조 5,207억원의 81%에 해당하는 2조 8,524억원이 농가에 배분되었고, 비농가에는 1,301억원, 농업관련단체 및 기업에는 5,382억

표 3 - 5 농협예수금 중 농업자금 구성비(연말 잔액 기준)

단위 : 억원, %

연 도	예 수 금 (A)	예수금중농업자금(B)	B / A (%)
1982	18,051	5,661	31.4
1984	22,713	8,320	36.6
1986	33,169	9,652	29.1
1987	46,523	10,995	23.6

주 : 예수금에는 상호부금, CD(양도성 예금증서)가 포함되어 있음.

자료 : 농협중앙회, 「정책자금대출실무교재」.

표 3 - 6 농협계통기관의 농업자금[1] 배분현황 (1987년말 잔액)

단위 : 억원, %

구 분	중앙회자금	상호금융자금		계	
			중 농업자금		중 농업자금
농 가	28,524 (81.0)	29,712 (84.1)	11,528	58,236 (82.6)	40,052 (85.7)
비 농 가	1,301 (3.7)	5,610 (15.9)	-	6,911 (9.8)	1,301 (2.8)
단 체	5,382 (15.3)	-	-	5,382 (7.6)	5,382 (11.5)
계	35,207 (100.0)	35,322 (100.0)	11,528	70,529 (100.0)	46,735 (100.0)

1) 중앙회 자금은 농가가 타용도로 지출했다 하더라도 일단 명목상으로는 농업용 자금으로 대출된 자금으로서 중앙회 총대출금 (잔액) 에서 일반대출금을 제외하여 계산했음. 그러나 상호금융자금은 뚜렷한 대출명목이 없으므로 대출금 중 농업용 지출비중 38.8% (표 4-14 참조) 를 적용하여 계산했음.

자료 : 농협중앙회, 「금융주요계수」, 1988.

원이 각각 공급되었다〈표 3-6〉. 이에 대해 단위조합의 상호금융대출금은 농가에 2조 9,712억원 비농가에 5,610억원 합계 3조 5,322억원이 대출되었는데, 이 중 1조 1,528억원이 농업자금으로서 농가에 배분되었다.

2. 정책농업금융의 현황과 문제

가. 정책농업자금의 조달과 운용체계

정책농업자금의 조달과 운용은 농림수산부의 농수산자금지원계획, 농협의 사업계획, 통화당국의 통화운용계획 등을 기초로 하여 각 부처별 협의를 거쳐 확정된 연간 또는 분기별 자금수급계획에 따라 정책농업자금의 조달 및 공급계획이 확정되면 이에 근거하여 필요한 자금을 조달·운용

그림 3 - 2 정책농업자금 조달 및 운용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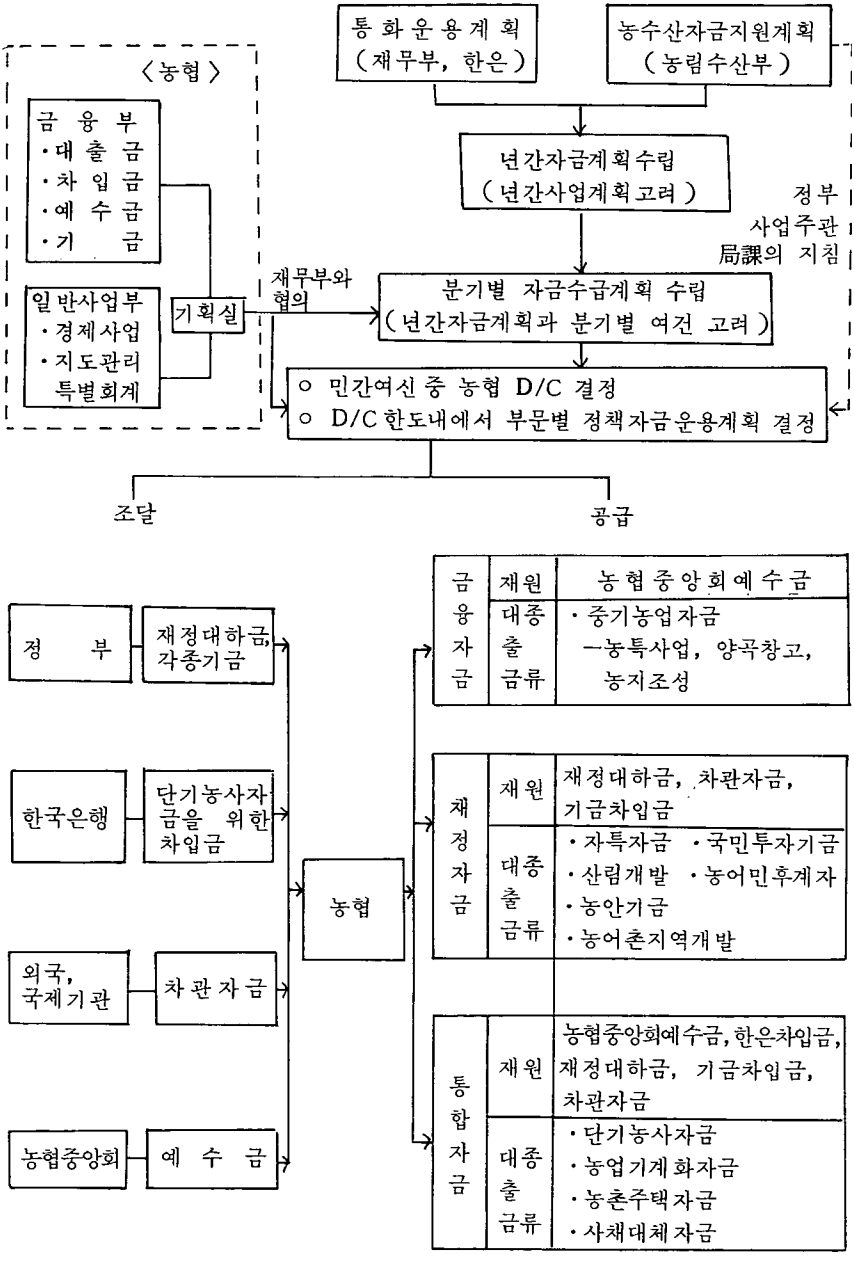

하게 된다. 이 때 자금조달은 정부로부터의 재정자금과 각종 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외국이나 국제기관의 차관자금, 농협 신용사업부의 예수금 중 일부 등으로 이루어지며, 이렇게 조달된 자금은 조달재원의 구성에 따라 금융자금, 재정자금, 통합자금의 형태로 농협을 통하여 농민, 농수산단체 및 농업관련기업에서 다양한 정책목적에 따라 배분되고 있다〈그림 3-2〉.

나. 정책농업자금의 지원현황

1 정책농업자금의 위치

정책농업자금은 농업금융의 중추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서 1987년중 정책자금의 공급액은 2조 1,797억원으로 농협중앙회 총대출금의 87.1%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출금잔액 기준으로는 농협중앙회 대출금의 72.8%를 차지하고 있다〈표 3-7〉. 한편 농협계통조직(중

표 3-7 정책농업자금의 비중

단위 : 억원, %

구 분	1985		1986		1987	
	공급액	잔 액	공급액	잔 액	공급액	잔 액
농협총대출금	14,344	28,542	15,914	32,712	25,039	44,217
정책대출금	11,732	20,604	13,291	23,330	21,797	32,209
점 유 비	81.8	72.2	83.5	71.3	87.1	72.8

자료 : 농협중앙회, 「정책자금대출 실무교재」.

표 3-8 농협 계통조직을 통한 대농민 대출금 추이(연말 잔액기준)

단위 : 억원, %

구 분	1983		1984		1985		1986		1987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정책자금	12,497	48.8	14,882	50.5	17,126	50.0	19,437	46.5	27,529	46.9
상호금융	12,462	48.7	13,905	47.2	16,287	47.5	21,346	51.1	29,712	50.7
기타대출	637	2.5	689	2.3	848	2.5	1,011	2.4	1,405	2.4
대농민대출금총액	25,596	100	29,476	100	34,261	100	41,794	100	58,646	100

자료 : 농협중앙회, 「금융주요계수」, 각년도.

그림 3 - 3 정책농업자금 지원체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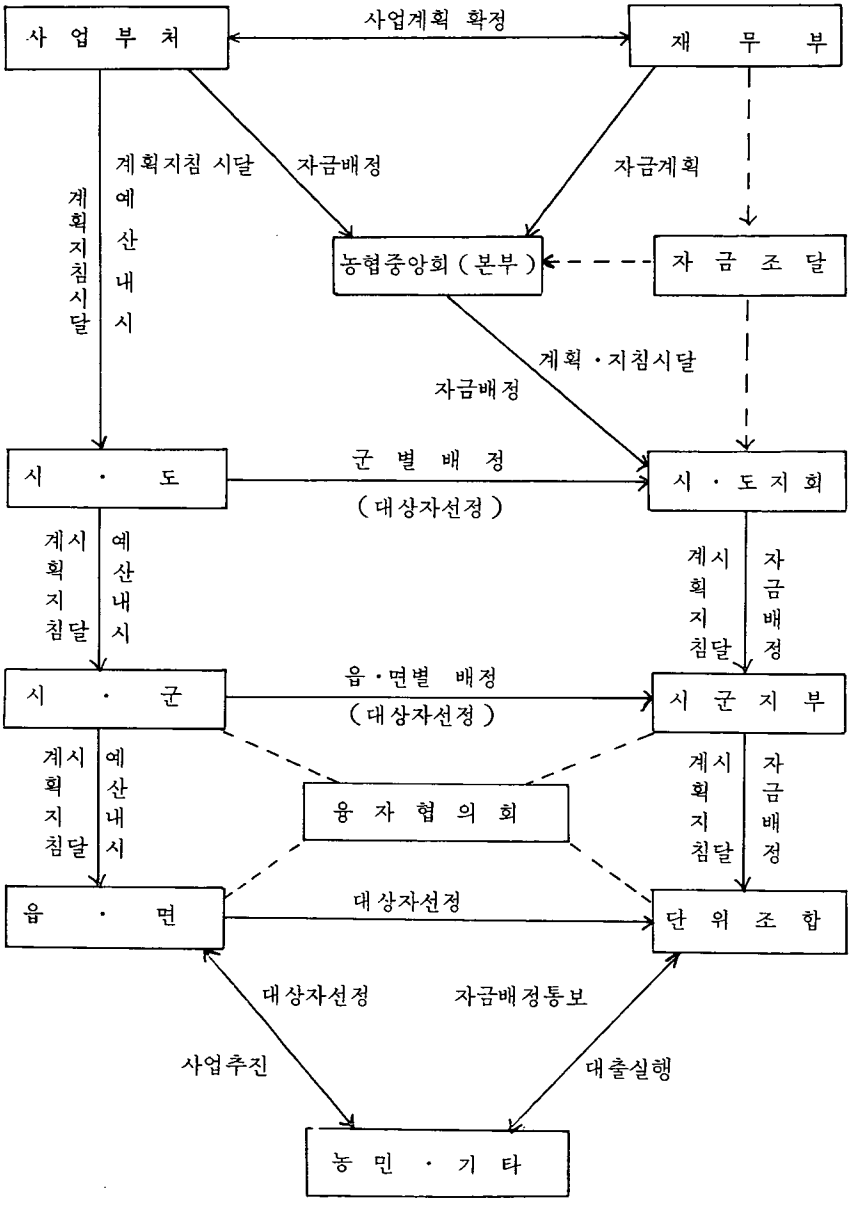

자료 : 농협중앙회, 「정책자금대출실무교재」, 1985.

앙회, 단협의 상호금융)을 통하여 농민에게 대출된 자금의 46.9%(1987년말 잔액기준)가 정책자금이다〈표 3-8〉.

2 정책농업사금의 지원체계

정책농업자금의 현행 지원체계는 행정기관이 사업을 주관하고 농협이 융자창구 역할을 맡고 있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즉 행정기관은 세부 사업별 융자지원계획의 수립, 융자조건 결정, 대상자 선정, 사업지도 등에 직접 관여하고 있는 반면, 농협은 융자대상자에 대한 대출의 실행, 채권관리 및 대출금 회수 등을 주로 담당하고 있다(그림 3-3, 표 3-9 참조).

3 정책농업자금의 지원형태

정책농업자금의 지원형태는 자금조달의 성격에 따라 분류되고 있는데, 크게 나누어 금융자금, 재정자금, 통합자금의 3가지로 분류된다. 금융자금은 농협중앙회의 신용사업부를 통하여 조달된 예수금을 재원으로 한 것으로서 이에 속하는 정책자금의 종류로는 금융중기자금이 있는데 그 주요 지원용도는 새마을종합개발, 농수산물유통개선 등이며, 지원대상자 선정은 농림수산부에서 정한 매년도별 운용지침에 따라 융자협의회에서 결정하고 있다.

재정자금은 정부의 재정대하금, 차관자금, 각종기금 등에서 조성된 재원으로 농업부문에 공급되는 자금인데 이에 속하는 정책자금의 종류로는 장기수리자금, 후계자육성자금, 개발기금, 국민투자기금, 농안기금,차관자금, 재정중기자금 등이며, 각 자금별 주요용도 및 융자조건, 지원대상자 선정 등은 〈표 3-10〉에서 보는 바와 같다.

통합자금은 재정대하금과 각종기금,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및 농협예수금을 통합하여 운용되는 자금으로서 이에 속하는 정책자금의 종류는 단기농사자금, 농업개발자금, 종합개발자금, 농업기계화자금, 농촌주택자금 및 농가특별자금 등이 있는데, 이 중 농업개발과 종합개발자금은 1987년 이후에는 새로이 공급되지 않고 있으며, 그 대신 농어촌지역개

표 3 - 9 정책농업자금의 지원절차

구 분	행 정 기 관 (사업추진)	농 협 (자금지원)
ㅇ 중앙단위	ㅇ 사업계획 수립 — 대상사업, 지원계획 — 자금계획 ㅇ 사업요령, 지침시달 ㅇ 자금배정요청, 예산내시 ㅇ 사업추진지도	ㅇ 자금계획 수립 — 자금조달 — D/C계획 ㅇ 융자지침 시달 ㅇ 자금배정 ㅇ 융자지도
ㅇ 시 · 도단위	ㅇ 세부사업계획 시달 ㅇ 대상자 확정 — 도단위 지원협의회 심의 ㅇ 자금배정요청, 예산내시 ㅇ 사업추진, 사업지도	ㅇ 자금배정 ㅇ 융자대상자 통보 ㅇ 융자지도
ㅇ 시 · 군단위	ㅇ 세부사업 확정 시달 ㅇ 대상자 선정 통보 — 군단위 지원협의회 심의 ㅇ 자금배정요청 ㅇ 사업추진, 사업지도	ㅇ 군지부 직접대출분 — 융자대상자 적격여부 심사 — 대출실행 ㅇ 단위조합 대출분 — 자금배정 — 대상자통보 — 융자지도
ㅇ 읍 · 면단위	ㅇ 대상자 선정 통보 — 읍 · 면단위 지원협의회 심의 ㅇ 사업추진, 사업지도	ㅇ 융자대상자 적격여부 심사 ㅇ 대출실행 ㅇ 사후관리, 사업지도

자료 : 농협중앙회, 「정책자금대출 실무교재」, 1988.

표 3 - 10 주요 농업정책자금 지원제도

구 분		영 농 자 금	금융중기자금	농업기계화자금	농촌주택자금
융자 개시년도		1961 (1949)	1968	1980	1978
조달자금		ㅇ한은차입금 ㅇ농협자금 ㅇ재특자금	ㅇ농협자금	ㅇ농업기계화촉진기금 ㅇ농협자금	ㅇ재정대하금 ㅇ지방비차입 ㅇ국민주택자금 ㅇ농협자금
지원용도		ㅇ일반영농자금 ㅇ객토 ㅇ재해대책 등	ㅇ농특사업 (과수채소 원예 특작잠업 등) ㅇ농업기계화사업 ㅇ농수산물유통개선 ㅇ조합육성 등 ㅇ새마을종합개발사업	ㅇ농기계구입자금 ㅇ수리시설, 사후봉사 ㅇ농기계생산 구매비축자금 등 ㅇ기타 농기계공급정책에 필요한 자금	ㅇ농촌주택개량 (신축) ㅇ취락구조개선
융자대상		ㅇ농민	ㅇ농민 ㅇ농민관련기업 ㅇ단협	ㅇ농민 ㅇ공공기관, 농업단체 ㅇ농기계생산업체 등	ㅇ농촌지역 주택개량 농민
융자조건	금리	연 8 %	연 8 ~ 11.5 %	연 8 %	연 8 %
	기간	1 년 이내 (객토자금 3 년 이내)	3 ~ 9 년 이내	8 년이내 (1 년거치 4 ~ 7 년)	20 년 이내 (5 년거치 15 년)
	한도		사업별 지침에서 결정		동당 5,280 ~ 7,040 천원 (기준정책비의 80 % 이내)
대상자 선정		부락영농회 (임원회)에서 농가별 영농규모와 자금사정을 감안 연간 융자예정액을 결정	농림수산부에서 정한 매년도별 운용지침에 따라 융자협의회에서 결정	ㅇ구입자금 : 농기계실수요자 ㅇ기타자금 : 행정기관, 농기구조합	시장·군수

표 3 - 10 주요 농업정책자금 지원제도(계속)

구 분		국민투자기금	농어민후계자 육성기금	농어촌지역 개발기금	농지구입자금
융자 개시년도		1974	1981	1987	1987
조달자금		국민투자기금	농어민후계자육성기금	농어촌지역개발기금	농어촌지역개발기금
지원용도		ㅇ농기계구입자금 ㅇ농기계생산자금 ㅇ국산기계구입자금 ㅇ양곡창고건립자금	ㅇ경종농업, 복합영농 ㅇ축산, 과수 ㅇ시설원예 ㅇ특용작물 ㅇ협동영농	ㅇ농지구입 ㅇ농업개발 ㅇ농공지구조성 ㅇ민간병원 지원 ㅇ농어촌환경개선 ㅇ관광소득원개발	ㅇ농지구입 ―단, 평당 12,000 원 이하의 농지에 한함
융자대상		ㅇ실수요자(농민 등)	ㅇ농어촌 청소년 (35세 이하) ㅇ새마을청소년회	ㅇ농민 ㅇ지방자치단체 ㅇ민간병원 ㅇ기타 개인 및 법인	ㅇ농민(50세 이하)
융자조건	금리	연 8 ~ 11.5 %	연 5 %	ㅇ농업개발 : 연 5 % ㅇ농공지구 조성 : 연10 % ㅇ기타 : 연 5 ~ 8 %	연 5 %
	기간	3 ~ 8 년 이내	7 ~ 10 년 이내 (3 ~ 5 년 거치)	5 ~ 20 년	20 년(2 년거치)
	한도	소요자금의 80% 이내	소요자금의 90 ~ 100 % 이내	소요자금의 30 ~ 100 % 이내	ㅇ일반농가 : 700 만원 (소요자금 80 %) 이내 ㅇ저소득농가 : 100 % (400 만원이내)
대상자 선정		ㅇ농기계구입자금 :농기계실수요자 ㅇ농기계생산자금 :생산업체 ㅇ국산기계 :국산기계 실수요자	ㅇ일반대상자 : 각 지역단위 육성협의회의 추천에 의거, 시장, 군수가 선정 ㅇ농업계 대학, 전문대 졸업자:농촌진흥청장	사업주관부서에서 별도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선정	ㅇ만 50세이하 농민중에서 시·읍 면장이 선정

발자금이 새로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다. 한편 농가특별자금은 농가의 부채경감조치와 관련하여 1987년에 限時的으로 공급된 자금이다. 이들 각종 정책자금의 주요 용도와 융자조건 및 대상자선정은 〈표 3-10〉에서 보는 바와 같다.

4 정책농업자금의 공급 및 배분

정책농업자금의 지원형태별 공급상황을 보면 1987년 현재 통합자금이 전체의 74.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재정자금이 23.3%, 금융자금이 1.8%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표 3-11〉. 최근 3년간의 추이를 보면 재정자금의 비중이 증가한 반면 금융자금과 통합

표 3-11 지원형태별 정책자금 공급액

단위 : 억원, %

구 분		1985	구성비	1986	구성비	1987	구성비	1988 (계획치)	구성비
금융중기		315	2.7	325	2.4	396	1.8	415	2.1
재정자금	장기수리	263	2.2	324	2.4	332	1.5	364	1.8
	재정중기	334	2.8	669	5.0	739	3.4	1,231	6.2
	국민투자기금	445	3.8	576	4.3	527	2.4	600	3.0
	후계자육성기금	632	5.4	636	4.8	634	2.9	316	1.6
	농어촌개발기금	-	2.0	-	-	2,334	10.7	2,340	11.9
	차관기금	231	2.0	282	2.1	516	2.4	512	2.6
	(소 계)	1,905	16.2	2,487	18.7	5,082	23.3	5,363	27.2
통합자금	단기농사	6,891	58.7	7,779	58.5	10,000	45.9	12,000	60.8
	농업개발	897	7.6	1,110	8.4	-	-	-	-
	종합개발	137	1.2	80	0.6	-	-	-	-
	농업기계화	1,128	9.6	1,177	8.9	1,348	6.2	1,536	7.8
	농촌주택	459	3.9	333	2.5	351	1.4	422	2.1
	농가특별자금	-	-	-	-	4,620	21.2	-	-
	(소 계)	9,512	81.1	10,479	78.8	16,319	74.9	13,958	70.7
정책자금합계		11,732	100.0	13,291	100.0	21,797	100.0	19,736	100.0

자료 : 농협중앙회, 「정책자금대출 실무교재」.

자금의 비중이 낮아지고 있는데, 이는 주로 재정중기자금 (인삼, 연초, 영세민생업지원, 농공지구조성, 농지조성 등)과 농어촌개발기금의 확대 공급에 의한 것이다. 정책농업자금을 융자기간별로 나누어 보면 대출기간 3년 미만의 단기성자금이 1985년에 전체 정책자금의 58.7%를 차지하던 것이 1987년에는 45.9%로 그 비중이 감소한 반면 중장기성 정책자금의 비중은 1985년의 41.3%에서 1987년에는 54.1%로 증가했다〈표 3-12〉.

정책농업자금의 배분상황을 최종수혜자가 누구인가 하는 측면에서 살펴 보면 연도말 잔액기준으로 1982년에 정책자금의 78.2%가 농민에게 배분되었던 것이 1987년에는 85.5%로서 정책자금의 대농민 대출비중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반면, 농수산단체나 농업관련기업에 대한 정책자금지원비중은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3-13〉.

한편 정책농업자금이 농가계층별로 어떻게 배분되고 있는가를 7개 주요 정책자금(단기농사자금, 농업기계화자금, 금융중기자금, 국민투자기금, 농촌주택자금, 농어촌개발기금, 농가특별자금)을 중심으로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표 3-14〉.

표 3 - 12 융자기간별 공급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	1985		1986		1987	
단 기(3년 이 내)	6,891	58.7	7,779	58.5	10,000	45.9
일반영농(1년)	6,177	52.6	6,688	50.3	7,714	35.4
특수목적(1년)	479	4.1	831	6.2	1,986	9.1
객 토(3년)	235	2.0	261	2.0	300	1.4
중 기(3 ~9 년)	4,119	35.1	4,855	36.5	8,780	40.3
장 기(10년이상)	722	6.2	657	4.9	3,017	13.8
계	11,732	100.0	13,291	100.0	21,797	100.0

자료 : 농협중앙회, 「정책자금대출실무교재」.

표 3 - 13 정책농업자금의 배분(연말 잔액 기준)

단위 : 억원, %

연 도	농 민		농업단체		기 타		계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1982	9,851	78.2	2,277	18.1	477	3.8	12,605	100.0
1983	12,497	79.3	2,760	17.5	496	3.1	15,753	100.0
1984	14,882	82.6	2,566	14.2	579	3.2	18,027	100.0
1985	17,126	83.1	2,955	14.3	523	2.5	20,604	100.0
1986	19,437	83.3	3,274	14.0	619	2.7	23,330	100.0
1987	27,529	85.5	3,570	11.1	1,110	3.4	32,209	100.0

주 : 농업단체 = 농수산단체 + 관련업체

자료 : 농협중앙회, 「금융주요계수」, 각년도.

표 3 - 14 경지규모별 대 농민 주요 정책자금의 배분(1987년 공급액 기준)

단위 : %

구 분	0.5 ha 미만	0.5~1.0 ha	1.0~1.5 ha	1.5~2.0 ha	2.0 ha 이상	계
단기농사자금	13.0	28.5	28.6	17.0	12.6	100.0
농업기계화	4.6	9.4	26.8	26.3	34.8	100.0
금융중기	11.6	20.1	36.5	5.8	27.0	100.0
국민투자기금	6.6	12.0	43.0	33.0	4.5	100.0
농촌주택	14.4	29.0	27.6	15.7	13.5	100.0
농어촌개발기금	11.3	34.5	20.5	17.7	16.8	100.0
농가특별자금	24.1	41.0	23.2	8.1	4.6	100.0
전 체	14.3	28.7	27.8	16.0	13.3	100.0

자료 : 농협중앙회.

단위 : %

구 분	0.5 ha 미만	0.5~1.0 ha	1.0~1.5 ha	1.5~2.0 ha	2.0 ha 이상	계
단기성자금	13.0	28.5	28.6	17.0	12.6	100.0
중장기성자금	8.9	16.9	29.8	20.3	25.3	100.0

주 : 농가특별자금 제외, 단기성 자금은 단기 농사자금임.

먼저 자금총액의 배분면에서는 단기성 정책자금인 단기농사자금은 비교적 경지규모별 농가분포수에 비례하여 고르게 배분되고 있고, 농가의 부채경감대책을 위한 농가특별자금은 영세농이나 소농에게 집중적으로 공급된 반면, 융자조건이 비교적 유리한 중장기성자금은 중농 또는 대농에게 편중되어 지원되고 있는 실정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표 3-15 참조), 1 *ha* 미만의 영세소농의 경영비가 전국 농가전체의 총농업경영비에서 차지하는 점유비가 44.3%인데 비하여 이들 농가계층에게 배분된 단기농사자금은 총단기농사자금 공급액의 41.5%로서 그 배분비중이 2.8% 포인트 적게 배분되었을 뿐인데 반하여, 중장기성자금의 경우를 보면 전국 농가전체의 고정자산 투자액(gross-investment)에 대한 각 농가계층의 점유비에 비하여 중장

표 3-15 농가계층별 정책자금 배분의 격차, 1987

단위 : %

경지규모	단기농사자금			중장기성자금		
	경영비점유비 (A)	농사자금 배분비 (B)	B-A	고정자산구입비 점유비 (A)	중장기자금 배분비 (B)	B-A
0.5 *ha* 미만	14.7	13.0	△1.7	17.6	8.9	△8.7
0.5 ~ 1.0	29.6	28.5	△1.1	30.1	16.9	△13.2
1.0 ~ 1.5	26.8	28.6	1.8	25.7	29.8	4.1
1.5 ~ 2.0	14.1	17.0	2.9	15.0	20.3	5.3
2.0 *ha* 이상	14.8	12.6	△2.2	11.6	25.3	13.7
계	100.0	100.0	-	100.0	100.0	-

주 : 경영비 점유비 : 전국 모든 농가가 지출한 농업경영비 총액 가운데 각 계층이 차지하는 비중.

농사자금 배분비 : 총단기농사자금 공급액중 각 계층이 이용한 비중.

고정자산구입비 점유비 : 고정자산구입을 위해 전국농가가 지출한 총비용중 각 계층이 차지한 비중.

중장기자금배분비 : 전체 중장기자금 공급액 중 각 계층이 이용한 비중.

자료 : 농림수산부, 「농가경제조사결과보고」, 1988.

농협중앙회.

표 3 - 16 농업기계화자금의 농가계층별 불평등

구 분	0.5 ha미만	0.5~1 ha	1~1.5 ha	1.5~2 ha	2.0 ha이상	계
농업기계화자금배분비(A)	4.6	9.4	26.8	26.3	34.8	100.0
대농구구입비점유비(B)	6.5	34.1	26.8	17.5	15.2	100.0
A - B	△1.9	△24.7	0	8.8	19.6	

자료 : 앞의 표와 동일.

기자금의 배분비는 0.5 ha ~ 1 ha의 소농층이 13.2 % 포인트나 적게 배분받은 반면, 2.0 ha이상의 대농층은 오히려 13.7 %포인트나 많이 배분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불평등 현상은 농업기계화자금과 관련하여 심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소농인 0.5 ha ~ 1 ha 농가와 대농인 2.0 ha이상 농가사이의 불평등이 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3 - 16 〉.

5 주요 정책자금의 차입 용도

정책자금을 공급하는 정책당국의 입장에서는 농업정책자금이 과연 자금공급의 목적에 합당하게 사용되고 있는가 하는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다. 즉, 농업정책자금이 농업생산과 관련된 부분에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가 주요한 관심사인데 이를 〈표 3 - 17〉에 의거해서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영농지원성격의 단기농사자금의 경우 농업생산과 관련된 농업경영비 및 자본적 지출에 사용된 비율은 66 %로서 단기농사자금을 지원받은 농가가 그 자금을 본래 목적이외에 사용한 경우가 34 %에 이르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중장기성자금의 경우는 대출자금의 87.9 % 정도가 농업생산과 관련되어 사용되거나 본래 목적에 합당하게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중장기성자금의 경우는 타용도로 정책자금이 사용되는 경우가 별로 문제시되지 않는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그리고 단기농사자금의 약 1/3 정도가 본래 목적이외로 사용되고 있지만 이를 단순히 단

표 3 - 17 주요 정책자금의 차입금의 용도

단위 : %

구 분	계	농업 경영비	겸업지출	자본적 지출	가계비	기 타	타인대여
단기농사	100.0	57.3	1.5	8.7	19.0	13.4	-
금융중기	100.0	19.2	3.3	61.7	10.3	5.5	-
재정중기	100.0	1.8	22.3	61.1	11.0	-	-
농업개발	100.0	10.7	5.9	55.5	5.1	22.4	-
국민투자	100.0	1.7	-	90.9	6.6	-	-
농업기계화	100.0	0.5	-	97.7	1.3	0.5	-
축산진흥	100.0	26.9	-	69.2	-	-	-
농촌주택	100.0	-	-	100.0	-	-	-
농촌지역개발	100.0	5.2	-	76.6	-	17.7	-
농가특별	100.0	4.9	0.6	3.7	11.7	74.8	4.2
단기농사자금과 농가특별자금을 제외한 정책자금 합계	100.0	6.9	1.6	81.0	3.9	6.6	-

자료 : 농협중앙회.

기농사자금의 소비자금화 현상이라고 부정적으로만 이해해서는 안될 것이다. 왜냐하면 농가경제의 특성상 농가가 단기농사자금을 받아서 그 일부를 우선 필요한 가계비 등에 사용하고 그렇게 해서 부족한 영농비는 다시 다른 자금으로 충당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 사후적으로 보면 공급된 단기농사자금이 모두 영농활동을 위해 투입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단기농사자금의 일시적 소비자금화 현상은 同資金의 성격이 영농지원이란 본래의 성격이외에 농가의 계절적 자금수급조절의 역할을 강하게 띠고 있다는 현실을 인정한다면 크게 문제시되지 않을 것이다.

다. 주요 정책자금별 현황과 문제

1 단기 농사자금

1) 단기 농사자금의 성격

여기서 단기농사자금이란 농협의 단기농사자금계정을 통하여 공급되는 자금으로서 그 성격상의 특징은 첫째, 농업경영비지원을 위해 공급되는 정책자금으로 융자기간이 짧고 同資金의 이자율결정, 공급계획, 상환계획 등 제반 자금운용과정이 정부의 통제를 받고 있다는 점이며 둘째, 이자금에 대한 수요가 농업생산의 계절성으로 인하여 상반기에 편중되고 있고 세째, 전국의 대부분 농가를 수혜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소액융자이며 네째, 농가의 경영과 가계가 미분리되어 있는 상황하에서 자금의 실제 사용면에 있어서 자금의 일부가 가계비 등 소비성자금에 사용되고 있음과 동시에 자금수혜자인 농가의 입장에서는 단기농사자금이 농가의 계절적 자금수급의 불균형을 해소보완하는 성격으로 이해되고 있다는 점 등이다.

2) 융자조건 및 수급상황

단기농사자금은 미작중심의 경영비지원을 위한 일반영농자금과 객토,복합영농, 협동출하 및 원예단지조성, 재해대책 및 기타 등의 특수목적자금으로 구분되며, 객토자금을 제외한(객토자금은 3년 분할상환임) 단기농사자금의 대출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 이내로 되어 있으며, 미곡생산을 위해 상반기(1～6월)중에 공급되는 일반영농자금은 융자 당해년도 12월말까지로 상환기간을 정하고 있고 하반기에 공급된 것은 대출일이 속하는 달의 익년도 전월 말까지로 되어 있다. 다만 보리수매에 응한 농가중 상환기일이 2/4분기중에 도래한 분에 대해서는 보리수매 종료시까지 상환연기가 가능하다.

현재 융자금리는 연 8%이며, 이자납부는 원금상환할 때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원금상환기일을 대출 익년도로 정했을 경우에는 당해년도 말까지 발생하는 이자는 당해년도 말에 징수하게 되어 있다. 또한 이자납입 지연에 따른 연체이자는 부과하지 않고 있다.

단기농사자금의 재원은 1984년까지는 중앙회자금과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차입에 의존했으나 1985년부터 재정자금과 상호금융자금을 단위조합에서 통합운용하기 시작함에 따라 중앙회자금의 비중이 감소하였다〈표 3-18〉. 공급규모는 1984년에 5,468억원이던 것이 1987년에는 9,508억원으로 동기간 중 연평균 20.3%를 보이고 있어 동일기간의 농가호당 연평균 농업경영비 증가율 5.8%보다 훨씬 높은 증가를 보이고 있다. 그 결과 1984년에 영농자금지원비율(=영농자금지원 총액/영농비 총액)이 17.6%이던 것이 1987년에는 25.8%로 높아졌다〈표 3-19〉.

공급시기면에서는 1984년에 단기농사자금의 63.6%가 2/4분기에 집중적으로 공급되던 것이 1987년에는 49.3%로 줄어든 반면 1/4 분기와 4/4분기의 공급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영농형태의 변화에 따라 최근 들어 쌀농사 중심의 영농이외에 겨울영농자금의 수요, 즉 원예, 비닐하우

표 3-18 단기 농사자금의 수급상황

단위 : 억원, %

구분 \ 연도			1984	구성비	1985	구성비	1986	구성비	1987	구성비
공급	일반영농		4,845	88.6	5,728	83.1	6,688	86.0	7,714	81.1
	특수목적	객토	277	5.1	246	3.6	261	3.4	243	2.6
		복합영농	109	2.0	203	2.9	278	3.6	110	1.2
		협동출하, 원예단지	118	2.2	242	3.5	466	6.0	426	4.5
		재해대책, 기타	119	2.2	472	6.8	86	1.1	1,015	10.7
		소계	623	11.4	1,163	16.9	1,091	14.0	1,794	18.9
	계		5,468	100.0	6,891	100.0	7,779	100.0	9,508	100.0
조달	재정자금		-		500	7.3	1,000	14.5	2,000	21.0
	한은차입금		1,619	29.6	1,662	24.1	2,629	38.2	3,076	32.4
	중앙회자금		3,849	70.4	4,172	60.5	3,750	54.4	3,076	32.4
	상호금융		-		557	8.1	400	5.8	1,356	14.3
	계		5,468	100.0	6,891	100.0	7,779	100.0	9,508	100.0

자료 : 농림수산부, 「농림수산주요통계」, 1988.
농협중앙회, 「정책자금대출실무교재」, 각년도.

그림 3 - 4 영농자금 배정 및 융자 체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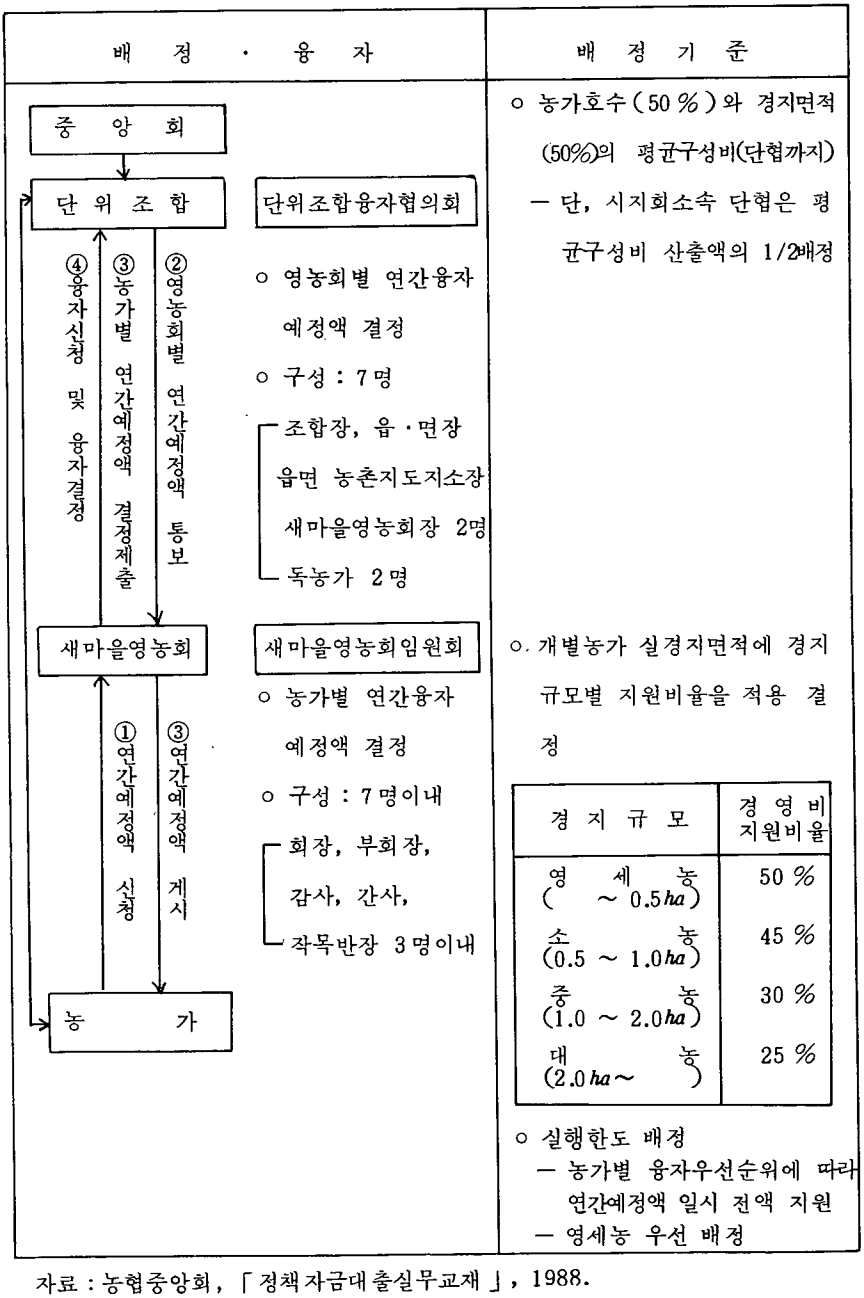

자료 : 농협중앙회, 「정책자금대출실무교재」, 1988.

표 3 - 19 단기 농사자금의 경영비 지원비율

연도		1984	1985	1986	1987
농가호수(천호)		1,974	1,926	1,906	1,871
경영비	총액(억원)	31,130	33,994	37,014	36,821
	호당평균(천원)	1,577	1,765	1,942	1,968
영농자금지원	총액(억원)	5,468	6,891	7,779	9,508
	호당평균(천원)	277	358	408	508
호당 지원비율(%)		17.6	20.3	21.0	25.8

자료 : 농림수산부, 「농림수산주요통계」, 1988.

표 3 - 20 연도별 · 분기별 단기 농사자금 공급액

단위 : 억원, %

구분	1984		1985		1986		1987	
	공급액	구성비	공급액	구성비	공급액	구성비	공급액	구성비
1/4분기	1,673	30.6	2,327	33.7	2,791	35.9	3,263	34.3
2/4분기	3,477	63.6	3,851	55.9	3,996	51.4	4,692	49.3
3/4분기	105	1.9	198	2.9	146	1.9	227	2.4
4/4분기	213	3.9	515	7.5	846	10.9	1,326	13.9
계	5,468	100.0	6,891	100.0	7,779	100.0	9,508	100.0

자료 : 농협중앙회.

스 등 동절기의 영농자금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이다〈표 3-20〉.

3) 단기 농사자금의 배정

단기농사자금의 배정은 계통별 배정과 농가별 배정으로 나눌 수 있는데 계통별 배정은 중앙회에서 각 개별 단협에 단기농사자금을 배정하는 것으로 각 단협별 배정의 기준은 농가호수(50%)와 경지면적(50%)의 평균 구성비에 의하여 배정하고, 단협은 배정된 액수를 다시 영농회별로 배정하게 된다. 이 때 단협의 융자협의회에서 영농회별로 농가호수

와 경지면적의 평균 구성비에 의하여 배분하되 영농회별 특수사정을 감안하여 조정되기도 한다. 농가별로 단기농사자금을 배정할 때에는 융자금액과 융자우선순위를 부락영농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단위조합은 여기서 결정된 내용에 따라 융자해 주는 상향식 융자절차를 취하고 있다. 즉, 부락영농회에서 농가별 연간 대출소요금액을 신청받아 개별농가의 실경지면적(임차경지포함) 및 자금사정, 호당 평균지원액 등을 감안하여 경지규모별 호당 지원상한액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되는데, 단협은 이 결정에 근거하여 해당농가에게 단기농사자금을 융자하게 된다. 1987년 현재 호당 지원상한액은 0.5 *ha* 미만의 영세농가가 110만원, 0.5 ~ 1 *ha* 농가가 150만원, 1 *ha* 이상 농가는 200만원으로 되어 있다.

농협중앙회의 「농가신용실태조사결과보고」에 근거하여 1987년 중에 단기농사자금의 지원을 받은 농가를 살펴보면 전체농가의 약 73%가 이 자금혜택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농가계층별로는 0.5 *ha* 미만에 해당하는 농가의 66%가 이 자금을 받았고, 0.5 ~ 1 *ha* 농가는 68.4%, 1.0 ~ 1.5 *ha* 농가는 77.6%, 1.5 ~ 2.0 *ha* 농가는 76.6%, 그리고 2.0*ha*이상 농가는 약 83%가 단기농사자금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표3-21〉.

각 해당농가가 얼마만한 자금을 지원받았는지를 살펴 보면 경지규모가 1.5 ~ 2.0 *ha*에 해당하는 농가가 평균 150만 7천원으로 가장 많이 받았고, 그 다음으로는 2.0 *ha* 이상 농가가 호당 80만 6천원, 1.0 ~ 1.5 *ha* 농가가 77만원, 0.5 *ha* 미만의 영세농이 호당 평균 62만6천원씩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지급받은 단기농사자금이 해당농가의 농업경영비에 비해 얼마만한 비중을 갖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실질경영비지원율을 보면 0.5 *ha* 미만의 영세농이 78.9%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1.5 ~ 2.0 *ha* 농가의 경우가 57.4%, 0.5 ~ 1.0 *ha* 농가의 경우가 52.5%, 1.0 ~ 1.5 *ha* 농가가 36.4%, 2 *ha* 이상의 대농이 20.9%로 각각 나타나고 있다〈표3-21〉.

표 3 - 21 단기 농사자금 배정실태

단위 : %, 천원

구 분	전 체	0.5ha미만	0.5~1.0ha	1.0~1.5ha	1.5~2.0ha	2.0ha이상
지원받은 농가비율	73.2	66.0	68.4	77.6	76.6	83.1
평균지원금액	751	626	726	771	1,507	806
경영비지원율	38.2	78.9	52.5	36.4	57.4	20.9

자료 : 농협중앙회.

이상의 결과를 놓고 볼 때 현행 단기농사자금의 배분은 대체적으로 농가계층간의 공평한 분배라는 형평상의 원칙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단기농사자금을 일시에 지급받지 못하고 두번에 걸쳐 나누어 받은 농가는 8.8% 정도인 것으로 추정된다.

4) 단기농사자금의 시기별 배분문제

우리는 앞의 〈표 3 - 20〉에서 단기농사자금의 공급이 상반기, 그중에서도 2/4 분기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져 왔음을 보았다. 최근 몇 년간 이러한 경향이 완화되긴 하였지만 1987 년 현재에도 단기농사자금의 분기별 배분이 여전히 2/4 분기, 1/4 분기, 4/4 분기, 3/4 분기의 순으로 이루

표 3 - 22 농가의 분기별 차입금과 단기 농사자금의 공급, 1987

단위 : 억원, %

구 분	1 / 4		2 / 4		3 / 4		4 / 4		계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농 가 차 입 증 가	14,463	37.2	14,163	36.4	5,445	14.0	4,883	12.5	38,954	100.0
농 협 계 통	8,401	36.6	10,160	44.3	2,657	11.6	1,721	7.5	22,939	100.0
사 채	5,707	37.9	3,436	25.7	2,258	16.9	2,629	19.6	13,393	100.0
기 타	992	37.8	567	21.6	530	20.2	533	20.3	2,622	100.0
영 농 자 금	3,263	34.3	4,692	49.3	227	2.4	1,326	13.9	9,508	100.0
농 업 경 영 비	5,819	17.0	9,580	28.0	6,174	18.1	12,629	36.9	34,202	100.0
상호금융대출증가	6,583	60.6	3,920	36.1	1,563	14.4	-1,202	-11.1	10,864	100.0

자료 : 농림수산부, 「농가경제조사결과보고」, 1988.
농협중앙회 특수금융과.

어지고 있다〈표3-22〉. 이러한 분기별 배분이 개선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 보기 위하여 분기별로 농가의 농업경영비, 차입금증가비중, 사채 및 상호금융의 분기별 대출증가 등을 비교해 보기로 한다.

〈표3-22〉에 의하면 농가의 농업경영비 수요비중은 4/4분기, 2/4분기, 3/4분기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만약 단기농사자금이 순수히 영농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자금이라면 위의 순서대로 단기농사자금이 배분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단기농사자금은 현실적으로는 농가의 자금수급 불균형을 보완하는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능에 의하면 농가의 차입금증가, 그 중에서도 사채 및 상호금융자금의 차입이 많은 시기에 보다 많은 단기농사자금이 배분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농가의 차입금증가가 많은 시기는 곧 농가의 자금수요가 많은 시기를 뜻하는 것으로 이 시기에 단기농사자금을 가능한 한 많이 배분함으로써 농가가 필요 이상의 높은 사채 및 상호금융 이자부담을 갖지 않도록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농가의 금융비용을 경감시켜 주고 필요한 시기에 가능한 한 많은 정책자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1/4분기에 공급되는 단기농사자금의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앞으로 통화당국의 통화관리방식이 현재의 직접규제에서 간접규제방식으로 완전히 전환하게 되면 농가 스스로가 필요한 시기에 자신에게 배정된 단기농사자금을 인출하여 자금수급을 조절할 수 있도록 「자동대출한도제」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2 농업기계화 자금[1)]

농업기계화자금은 농촌노동력의 도시로의 유출, 노동력의 질적저하(부녀화, 노령화), 농촌노임의 상승과 영농작업의 편의주의 등 농촌여건의 변화에 따라 농촌의 일손부족을 해소하고 농업기계화를 통하여 농업생산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자금이다.

---

1) 농업기계화자금에 관해서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기계화사업의 장기정책방향연구」, 1988 참조.

표 3-23 농기계 투자재원 구성 추이

단위 : 백만원, %

구 분	1965	1970	1975	1980	1985	1987
보 조	417 (46.0)	1,430 (39.5)	526 (2.1)	1,805 (1.6)	11,551 (6.1)	13,446 (5.4)
융 자	- (-)	1,429 (39.5)	15,612 (63.1)	86,905 (75.5)	131,801 (69.9)	173,523 (70.01)
농 민 자부담	490 (54.0)	763 (21.0)	8,590 (34.8)	26,357 (22.9)	45,238 (24.0)	60,922 (24.6)
합 계	907	3,622	24,729	115,067	188,590	247,893

주 : ( ) 안은 구성비율임.

자료 : 한국농기구공업협동조합, 「농업기계연감」, 각년도.

우리 나라의 농업기계화사업은 아직 초기단계에 있기 때문에 공공성을 강하게 띤 정책사업으로 간주되고 있어 보조 및 장기저리융자 등 정부지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기계화가 본격화된 최근에도 농업기계투자재원의 약 75% 정도가 정부의 보조 및 융자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고 농민의 自負擔은 25% 수준에 머물고 있다〈표 3-23〉. 이러한 정부지원에 의한 농업기계화는 앞으로도 상당기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1) 농업기계화 자금의 재원조달

농기계투자재원인 정부보조, 농협융자, 농민자부담 중 농업기계화를 위한 정책금융의 재원은 농업기계화촉진기금, 국민투자기금, 농협자금 및 자특자금과 차관회전자금 등으로 구성되고 있다.

이 중 농업기계화촉진기금은 「농업기계화촉진법」 제 8, 9조에 의거하여 정부출연금, 기금운용수익금 등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1980년부터 농기계구입을 위한 융자재원으로 활용하여 왔으나 1984년부터는 정부출연금이 중단되어 기금운용수익만을 융자재원으로 하고 있다. 1987년 현재 전체 농업기계화자금 1,957억원의 18.1%에 해당하는 350억원이 농업기계화촉진기금에서 조달되고 있으며 이 중 기금회수자금이 248억원, 이자수입 등이 102억원이다〈이하 표 3-24 참조〉.

국민투자기금은 「국민투자기금법」 제 16조 및 동시행령 제 2조에 의

표 3 - 24 농업기계화 지원자금 조달실적

단위 : 억원

구 분	1980까지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농업기계화촉진기금	200	277	343	314	150	238	284	350
○ 정 부 출 연	(200)	(250)	(280)	(200)	(-)	(-)	(-)	(-)
○ 이 자 수 입 등	(-)	(3)	(14)	(38)	(49)	(55)	(62)	(102)
○ 기금회수자금	-	(24)	(49)	(76)	(101)	(183)	(222)	(248)
국 민 투 자 기 금	870	350	450	450	300	250	250	300
자 특 자 금	-	-	-	-	-	-	200	-
차 관 회 전 자 금	86	15	21	27	27	22	39	21
OECF 차관자금	-	-	-	-	-	-	-	276
농 협 자 금 등	1,394	631	557	809	895	808	889	990
계	2,550	1,273	1,371	1,600	1,372	1,318	1,662	1,937

자료 : 농림수산부 농업기계과, 「농업기계업무자료」, 1988.2.

해 1974년에 약 75억원을 농기계융자재원으로 이용하기 시작한 이래 현재까지 활용되고 있으며, 1987년 현재 총농업기계화자금 재원의 15%를 점하고 있다.

농협자금은 농기계융자재원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1968년 이후부터 정책금융화하였으며, 여·수신금리차는 정부의 이차보상으로 충당되어 왔으나 1977년 이후부터는 통합자금형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정부정책자금의 대하금리와 대농민 대출금리와의 차이로 여·수신금리 차이를 간접적으로 보상받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농업기계화와 관련된 자금중 농협자금의 비중은 1987년 현재 약 51%에 이르고 있다.

그밖에도 자특자금, 차관회전자금, OECF (The Overseas Economic Cooperation Fund, Japan) 차관자금 등이 농기계구입자금으로 활용되고 있다.

농업기계화자금의 배분상황은 1987년중 전체농가의 4.5%에 해당하는 농가가 농기계자금의 혜택을 받고 있으며, 농가계층별로는 0.5 *ha* 미만의 영세농계층의 1.3%, 0.5 ~ 1 *ha* 농가의 2.4%, 1 ~ 1.5 *ha* 농가

의 4.3%, 1.5～2 ha 농가의 7%, 2 ha 이상 대농의 9.9%가 同年度中 농기계자금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경지규모가 큰 농가일수록 농업기계화자금의 혜택을 받은 농가비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중·대농일수록 기계화작업의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다는 이유도 있지만 농기계의 구입시에 필요한 自負擔能力,농업기계화자금의 상환능력과도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한편 농업기계화자금의 농가호당 평균 수혜액은(혜택받은 농가평균으로) 약 150만원 정도이며, 0.5～1.0ha의 소농을 예외로 하면 경지규모가 큰 농가일수록 同資金의 수혜혜택도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표 3-25〉.

2) 농업기계화 자금의 융자조건

농업기계화자금의 융자조건은 금리면에서 機種에 관련없이 연 8%가 적용되고 있으며 상환기간은 대체로 농기계의 내용연수에 맞추어 4～7년의 균분상환으로 거치기간은 機種에 관계없이 1년으로 되어 있다〈표 3-26〉.

표 3-25 농가계층별 농업기계화자금 차입현황, 1987

구 분	전 체	0.5 ha미만	0.5～1 ha	1～1.5 ha	1.5～2ha	2 ha이상
차입농가비율 (%)	4.5	1.3	2.4	4.3	7.0	9.9
농가당차입액(천원)	1,543	1,460	853	1,656	1,800	2,381

자료 : 농협중앙회.

표 3-26 농업기계화 자금의 융자조건, 1988

기 종	융 자 율	상 환 기 간	금 리
경 운 기	65%	1년거치 6년균분상환	연 8%
트 랙 터	80	〃 7 〃	〃
이 앙 기	90	〃 5 〃	〃
바 인 더	90	〃 5 〃	〃
콤 바 인	90	〃 6 〃	〃
건 조 기	90	〃 6 〃	〃
관 리 기	90	〃 6 〃	〃
기 타	70 ～ 90	〃 4～6 〃	〃

자료 : 농림수산부, 「농업기계업무자료」.

이하에서는 현행 농업기계화자금의 이자율 수준과 상환방법을 개선할 여지가 있는지를 간단히 언급하고자 한다.

먼저 상환방법에 있어 현재 농업기계화자금의 상환은 1년 거치 4~7년 균분상환방식인데 반하여 농기계의 자본소득은 초기에 많이 발생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감소하고 있다〈표 3-27〉. 이러한 자본소득과 상환액의 불일치는 농가의 농기계융자자금 상환에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현행의 원리금 균분상환방법을 원금상환이 초기에 많고 말기에 적어지는 체감식 상환방법으로 전환하는 것이 농가의 농기계융자자금에 의한 부채증가 가능성을 줄이고, 동시에 자금관리를 하는 농협의 입장에서는 농기계자금의 회수가 용이해 질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현행 농업기계화자금의 금리수준은 농기계의 機種에 관계없이 8%로 되어 있는데 이 금리수준이 적정한가의 여부는 객관적으로 판단하기가 매우 어렵다. 왜냐하면 원래 정책금융의 금리수준이란 것이 어떤 특정사업을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 또는 장려하기 위하여 결정되는 것이므로 정부의 정책적 의지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가지 기준으로 택할 수 있는 것은 적어도 정책금리수준인 현행금리수준이 농기계수익률보다 높아서는 본래의 정책목적달성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농기계자금의 금리수준은 농기계의 수익률보다는 낮아야 한다는 점이다.

〈표 3-28〉은 주요 機種別 資本收益率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에 따르

표 3-27 농업기계 자본소득의 추이

단위 : 천원

구 분	1 년 째	2 년 째	3 년 째	4 년 째	5 년 째	6 년 째
이 앙 기	547	515	584	480	394	201
콤 바 인	3,200	2,085	1,482	1,611	996	507

주 : 자본소득 = 조수입 - 기계비용 제외한 경영비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기계화사업의 장기정책방향연구」, 1988.

표 3 - 28 기종별 자본수익률('86년 기준)

단위 : %

이용형태 \ 기종		트랙터 20~30HP	이앙기	바인더	콤바인	건조기
농가		13.1	14.4	△ 7.5	11.1	△ 2.3
영농단	보조가 없을 경우	2.6	19.4	-	5.4	△10.0
	현행 (40%보조)	13.2	47.1	-	23.4	△ 4.3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기계화사업의 장기정책방향연구」, 1988.

표 3 - 29 농가의 경지규모별 농기계 임작업률*

단위 : %

경지규모 \ 기종	트랙터	이앙기	콤바인	건조기
1 *ha* 미만	96.5	94.0	98.0	97.3
1 ~ 2	90.9	85.3	94.0	93.2
2 ~ 3	88.1	76.0	90.1	83.8
3 ~ 4	80.8	65.0	85.2	56.9
4 ~ 5	53.3	57.1	76.8	75.7
5 *ha* 이상	44.8	29.8	49.9	48.0
평균	87.6	79.5	90.5	86.5

* 임작업률 = (임작업면적 / 총이용면적) × 100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기계화사업의 장기정책방향연구」, 1988.

면 이앙기, 콤바인, 트랙터의 경우는 자본수익률이 13.1 ~ 47.1 %의 높은 수준에 있어 현행 정책금리수준이 별문제가 없으나 바인더와 건조기는 현행 정책금리수준에 못미치고 있다. 특히, 바인더와 건조기는 負(-)의 收益率을 나타내고 있으며, 기계화영농단의 경우는 補助가 없을 경우에는 이앙기를 제외하고는 수익률이 모두 현행 금리수준에 못 미치고 있다. 그리고 현재 우리 나라 농가의 대부분이 농기계수입을 賃耕作業에 의존하고 있음을 볼 때 〈표 3-29〉, 향후 계속적인 농기계보급의 확대에 따라 농기계의 대당 평균이용면적이 감소되어 농기계 수익률이 저하될 것이기 때문에 농기계자금의 대출금리를 하향조정할 필요가 조만간 닥칠 것으로 예상된다

3 농지구입자금

1) 농지구입자금의 지원 조건

농지구입자금은 自耕農民에게 장기저리의 농지구입자금을 지원하여 농지의 소유규모와 경영규모를 늘리도록 함으로써 농가소득의 증대를 통한 自立安定農家를 육성하고, 不在地主나 離農者등 비농민소유농지의 매입지원을 통하여 점진적인 耕者有田의 실현으로 농지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1987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정책자금이다.

농지구입자금 지원의 필요성은 현재 우리 나라 농가의 호당 경지면적이 영세하여 농가소득증가에 한계가 있다는 인식과 함께 비농민의 농지소유가 증가함에 따라 농가의 임차료지출이 늘어나고, 지출된 임차료의 63.7%(1985년 기준)가 도시로 유출되고 있는 현상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표 3-30〉.

1987년중 농지구입자금의 지원규모는 2,000억원으로서 농어촌지역개발기금을 그 재원으로 하고 있다. 구입대상농지는 법적으로 지목이 전·답으로 되어 있는 농지(과수원제외)로서 평당 가격이 12,000원 미

표 3-30 비농민 토지소유 현황과 임차료 유출 현황

구분 \ 연도	1983	1984	1985	1987
농지총면적(천ha)	2,107	2,152	2,144	2,143
임차면적	581	609	654	666
	(26.8)	(28.3)	(30.5)	(31.1)
비농민소유면적	350	370	413	未調査
	(16.1)	(17.2)	(19.3)	
임차료총액(백만원)	299,638	434,520	509,504	〃
비농민귀소임차료(백만원)	177,899	264,188	321,497	〃
	(59.7)	(60.8)	(63.7)	

주 : ( )안은 농지 총면적 또는 임차료 총액에 대한 비율.
자료 : 농림수산부.

만인 농지에 한한다. 융자대상자는 만 50세 이하의 농민으로서 3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고 있고 농업을 主業으로 하며 농지소유규모가 1.5 *ha* 미만인 농민으로 영농정착 의지가 뚜렷한 농민으로 되어 있다. 대상자의 선정은 새마을영농회의 심사위원회에서 종합평가 배점기준표에 의한 고득점자를 선정, 마을총회를 거쳐 시·읍·면장에 추천하면 시·읍·면장이 심의회를 구성하여 대상자를 확인·심사결정토록 되어 있다.

농지구입자금의 융자조건은 일반지원대상자의 경우에는 1인당 700만원 이하의 범위내에서 소요자금의 80%를 융자하고 있고, 저소득지원대상자의 경우는 1인당 400만원 이하로 소요자금의 100% 이내에서 융자하고 있다. 상환방법은 2년 거치 18년 상환으로 연 1회 원금균등할부 상환이고 이자율은 연 5%이다.

2) 농지구입자금의 지원실적

농림수산부의 자료에 의하면 1988년 5월말 기준으로 볼 때 농지구입자금을 지원받은 농가는 총 33,746호로서 전체농가의 약 1.8%가 혜택을 받았고, 지원대상농가(1.5 *ha*이하 농가)의 2.2%가 농지구입자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호당 평균 수혜액은 일반농가의 경우가 614만원, 저소득농가가 400만원이고 호당 평균 농지구입면적은 각각 1,227평과 770평이다〈표 3-31〉.

표 3-31 농지구입자금 지원실적 총괄('88. 5. 31 기준)

구분 / 사업별	지원계획	지원농가	지원실적		구입농지면적	
			전체	호당	전체	호당
	억원	호	억원	천원	*ha*	평
일반농가 (1.5 *ha*미만)	1,850	29,999	1,843	6,143	12,173	1,227
저소득농가 (0.5 *ha*미만)	150	3,747	150	4,000	953	770
총계	2,000 (100%)	33,746	1,993 (99.6%)	-	13,126	-

자료 : 농림수산부.

한편 농지구입자금을 융자받은 농가가 구입한 농지를 유형별로 보면 임차농지를 구입한 것이 60.4%, 일반농지를 구입한 것이 39.6%로 임차농지가 자작지로 된 것이 60.4%인데, 그 중 부재지주 소유분이 32.4%이고, 在村地主 소유분이 28%이다. 그리고 농지구입시의 자부담률은 31.1%로서 농가호당 평균 277만원 정도는 자기자본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표 3-32〉.

그리고 농가가 구입한 농지가 농가와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를 살펴 보면 구입농가의 90% 이상이 반경 2㎞ 이내에 소재하는 농지를 구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영농관리가 용이한 농지가 구입대상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표 3-33〉.

표 3-32 구입농지의 유형

구분 / 유형	지원 농가수	%	구입농지 면적	%	금액 계	금액 융자	금액 자부담
	호		ha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계	29,999	100.0	12,172.6	100.0	267,348 (100%)	184,297 (68.9%)	83,051 (31.1%)
임차농지	17,958	59.9	7,349.4	60.4	158,639	109,237	49,402
부재지주 소유	9,446	31.5	3,942.9	32.4	82,282	57,018	25,264
재촌지주 소유	8,512	28.4	3,406.5	28.0	76,357	52,219	24,138
일반농지	12,041	40.1	4,823.2	39.6	108,709	75,060	33,649

자료 : 농림수산부.

표 3-33 구입농지의 거리

단위 : %

거리	논	밭
1㎞ 이내	59.5	62.5
1 ~ 2㎞	35.5	31.0
2 ~ 4㎞	4.7	5.3
4㎞ 이상	0.3	1.2
계	100.0	100.0

자료 : 농협중앙회, 설문조사결과.

그리고 자금지원을 받은 농가의 농지소유면적이 농지구입후 얼마나 변화하였는가 하는 것을 살펴 보면 자금지원전에는 농가평균 소유농지면적이 0.6 *ha* 이던 것이 호당 평균 0.42 *ha*를 구입하여 소유농지면적이 1.02 *ha*로 늘어났는데 이러한 소유규모의 변화는 농가형태(임차농, 농민후계자, 일반농가)에 관계없이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표 3-34〉.

한편 농지구입자금의 지원을 받은 농가를 영농경력별, 연령별, 영농전문성별로 살펴 보면 영농경력에 있어서는 경력이 10년 이상인 농가가 80.7%, 10년 미만인 농가가 19.3%로서 대부분 10년 이상의 영농경력을 가진 농가가 선정되었고, 연령별로는 총 지원농가의 60.4%가 40세 미만으로서 후계농민으로 육성가능한 젊은층에 지원되었다. 그리고 영농의 전문성에 있어서는 전체 지원농가의 80.6%가 농과계학력과 관련없이 대상자로 선정되어 자금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표3-35〉.

표 3 - 34 **지원농가 형태별 소유면적 변화**

농가형태	지원 농가수		농지소유규모 (평균)		
		%	지원전	지원후	증가
임차농가	11,456호	38.2	0.58*ha*(1,755평)	1.00 *ha*(3,025평)	0.42 *ha*(1,270평)
농어민후계자	1,633〃	5.4	0.65 *ha*(1,966〃)	1.08 *ha*(3,267〃)	0.43 *ha*(1,301〃)
일반농가	16,910〃	56.4	0.61 *ha*(1,846〃)	1.03 *ha*(3,115〃)	0.42 *ha*(1,270〃)
평균(계)	29,999〃	100.0	0.60 *ha*(1,815〃)	1.02 *ha*(3,085〃)	0.42 *ha*(1,270〃)

자료 : 농림수산부.

표 3 - 35 **농지구입자금 지원농가의 분류**

단위 : 명

지원 농가수	영농경력				연령			영농전문성		
	10년 이상	7년 이상	5년 이상	3년 이상	20~30세 미만	30~40세 미만	40~50세 이하	자영농고 및 자영농과졸	농업계고교 이상졸	기타
29,999	24,214	3,267	1,641	877	11,164	6,950	11,885	668	3,071	26,260
(100.0)	(80.7)	(10.9)	(5.5)	(2.9)	(37.2)	(23.2)	(39.6)	(2.2)	(10.2)	(87.6)

주 : 저소득농가지원분 분석 제외.

자료 : 농림수산부.

표 3 - 36 농지구입자금 대상자 선정 배점기준표

구 분	세 부 항 목	배 점
1. 영농정착 의욕 및 능력 —자립안정 농 육성 (52점)	1) 영농경력(15점)	○ 10년이상 : 15점
		○ 7년 〃 : 12〃
		○ 5년 〃 : 10〃
		○ 3년 〃 : 8〃
	2) 농지구입자연령 (20점) ('87.12.31기준)	○ 만 20 ~ 35세미만 : 20〃
		○ 만 35 ~ 40세미만 : 15〃
		○ 만 40 ~ 50세이하 : 10〃
	3) 영농전문기술성 (10점)	○ 자영농고 및 농고자영농가졸업자 : 10〃
		○ 농업계고교이상졸업자 : 8〃
		○ 기타 : 6〃
	4) 농어민후계자 (7점)	○ 후계자로 선정된 후 5년이상인 자 : 7〃
		○ 〃 4 〃 : 5〃
		○ 〃 3 〃 : 3〃
2. 구입대상 농지 —자작농육성(30점)	○이농자 및 비농민 소유농지구입 (30점)	○ 경작중인 임차농지 구입자 : 30〃
		○ 비농민소유 및 이농하려는 자의 농지구입자 : 20〃
		○일반 농지구입자 : 10〃
3. 농지상태 —경영개선 (10점)	1) 구입농지위치 (5점)	○ 구입자의 농지와 인접한 농지구입 : 5〃
		○기타 2㎞이내 농지구입 : 3〃
	2) 농지기반정비정도 (5점)	
	○논(畓)의 경우	○ 수리안전지대로서 경지정리된 논이거나 경지정리대상이 된 논 : 5〃
		○ 수리안전답 : 4〃
		○ 기타의 논 : 3〃
	○밭(田)의 경우	○ 관계가 가능하거나 밭경지정리가 가능한 밭 : 5〃
		○ 기타의 밭 : 3〃
4. 경영규모 —영농규모화(8점)	1) 당해년도 영농규모 (소유농지+임차농지) (8점)	○ 1.5 ㏊이상 : 8〃
		○ 1.0 ~ 1.5 ㏊미만 : 5〃
		○ 1.0 ㏊미만 : 3〃
계 100 점		

자료 : 농림수산부.

3) 농지구입자금 지원상의 몇가지 문제

정부의 농지구입자금 운용방침을 간접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 대상자 선정시의 종합평가 배점기준인데 〈표3-36〉, 영농정착의욕 및 능력이란 기준에 있어 영농전문기술성과 영농후계자 여부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영농후계자의 선정과정에서도 현재 학력이 중요시되고 있음을 고려하면 앞의 두 가지 기준이 모두 학력을 그 중요한 선정기준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우리가 앞의 〈표 3-35〉에서 살펴 본 바에 의하면 지금까지 농지구입자금의 수혜혜택을 받은 농가의 80.6%가 농과계통의 학력과는 상관없는 농가이었던 것을 감안한다면 학력보다는 영농정착의지가 확고한 농가가 선정될 수 있는 방안이 보충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영농후계자가 후계자육성자금을 융자받아서 그 자금을 어디에

표 3-37 육성자금의 대부 연도와 투입용도와의 관계

단위 : %

대부연도 / 투입용도	1981 (60 호)	1982 (109 호)	1983 (130 호)	1984 (236 호)	1985 (176 호)	1986 ~ 1987 (110 호)
한(육)우사육	56.3	40.5	35.6	37.8	27.3	12.5
낙 농	8.7	7.7	11.0	8.0	11.5	6.2
양 돈	4.3	1.6	2.3	0.4	1.6	2.6
축 사	4.0	2.3	1.3	3.0	2.9	2.9
양 계	0.0	0.0	0.8	0.6	0.5	0.0
과 수 원	1.2	2.4	2.3	1.3	2.1	6.2
시 설 원 예	8.6	10.1	8.9	9.3	9.6	9.7
채 소 류	0.0	0.0	3.1	1.8	0.4	1.1
특 용 작 물	1.4	4.0	1.6	2.0	2.6	5.3
농용자재구입	1.3	3.5	9.6	4.7	10.6	11.9
농 지 구 입	6.7	19.1	11.5	22.7	25.7	20.9
기 타	7.5	8.8	11.9	8.4	5.2	20.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 박진환, "농산물가격안정하에서의 중장기성 저리자금의 수요증가에 관한 연구," 「농업경제연구」, 1988.12.

투입하고 있는가를 살펴 보면 농지구입에 가장 많이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표 3-37〉. 이러한 사실은 영농후계자가 농지구입과 관련하여 농지구입자금 이외에도 영농후계자육성자금의 지원도 받고 있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자금배분상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농지구입자금의 지원규모의 한도는 호당 7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예상되는 농지가격의 상승에 따라 농가의 自負擔이 늘어날 것을 감안하면, 구조조정에 따른 중·대농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현행의 지원한도액이 보다 확대되어야 한다. 농가호당 농지구입자금 지원한도액의 확대는 농지구입자금의 전체적인 공급규모확대가 동시에 수반되지 않는 한 수혜대상농가의 감소가 불가피해지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농지구입자금의 확대공급을 위한 재원확보가 필요할 것이다.

다만 한 가지 유의할 것은 농지구입자금의 확대공급이 농지구입수요의 급증을 가져와 농지가격의 상승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의 방지를 위해서는 농지구입자금의 융자를 지역별로, 그리고 시기별로 분산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실제로 농지구입을 희망하는 농가에게 이 자금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하는 방안의 하나로서 일정기간 일정액수를 농지구입 목적으로 농협에 불입한 농가에게 우선적으로 농지구입자금의 융자혜택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신중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라. 농업정책자금의 몇가지 문제와 개선점

1 융자대상자 선정의 문제

농업정책자금의 융자대상 선정에 있어서 농협역할의 정도를 보면 1987년도 총 융자대상 42개 사업중 78%에 해당하는 33개 사업이 행정기관 또는 각종 단체의 주관하에서 결정되었고 농협은 융자협의회에 참석하거나 검토의견서 등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융자대상자 선정과정에 참여하고 있을 뿐이다〈표 3-38〉. 이러한 상황은 결국 융자대상자 선정과 사후관리기능의 분리로 농협으로 하여금 자금의 효율적 배분과 이용에 대한 역할 보다는 채권 및 담보확보에 치중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표 3 - 38 농협의 융자대상자 선정비중

단위 : 개

총지원사업수	행정기관선정	단 체 선 정	농 협 선 정
42	27	6	9
100 %	64 %	14 %	22 %

자료 : 농협중앙회, 「정책자금대출실무교재」, 1987.

자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융자대상자의 선정과 사후관리를 동일기관에서 수행할 수 있는 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 농촌경제의 전반과 관련된 투자사업과 그 보조사업 등 융자기관인 농협 단독으로 대상선정이 곤란한 사업은 행정기관에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그 밖의 사업에 관련된 융자대상자의 선정은 행정기관에서 사업의 방침이나 대상자 선정기준만을 시달하고 실제 융자대상자의 선정과 사후관리는 융자기관인 농협에 권한을 가능한 한 많이 이양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2 정책자금 재원의 농협예수금 의존

1987년 현재 정책자금중 농협예수금 비중은 약 40%를 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러한 농협예수금의 정책자금화는 일면으로는 도시자금을 흡수하여 농촌지역에 공급한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농협예수금의 지나친 정책자금화는 예수금 조달확대와 직접 관련이 있는 저축추진대출의 축소를 가져오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농협을 통한 자금조달의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고, 금융자율화와 함께 심화될 타금융기관과의 경쟁에서 농협신용사업부의 경쟁력약화를 초래하게 된다. 또한 농협예수금은 단기성예금의 비중이 큰 데 반하여 (1987년 현재 총예수금의 68.3%를 차지하고 있음) 정책자금은 단기농사자금을 제외하고는 중장기성대출이 주종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자금회전에 문제가 있다.

따라서 향후 농협신용사업부가 독립된 은행기관으로의 성격을 띠지 않을 수 없음을 고려할 때 정책자금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은 농협예수금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대신 자본시장의 성숙에 따라 장기성 농업금융채권의 발행을 통한 조달방식을 확대하여 자금의 안정적 확보를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③ 정책자금 운용의 지나친 세분화

현행 농업정책자금은 그 운용방식에 있어 정부의 사업계획과 관심에 따라 자금의 용도를 그때 그때 추가하여 온 결과 자금용도가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다. 예를 들면 단기농사자금은 일반영농과 특수목적 등 12개 항목, 후계자육성자금은 경종, 복합영농, 축산, 과수, 시설원예, 인삼 등 7개 항목, 농어촌지역개발기금은 농어촌주민생활개선, 농공지구조성 등 9개 항목(보다 세부적으로는 약 30여개 항목), 재정자금은 인삼, 연초, 임업 등 12개 항목, 금융중기자금은 생산시설, 유통시설, 작목입식 등 세부적으로는 80개가 넘는 항목 등으로 되어 있다. 또한 각종 정책자금이 동일한 용도를 위하여 중복되어 지출되고 있어서(예를 들면 과수관련자금이 후계자육성자금, 농어촌지역개발기금, 금융중기자금 등에서 공급됨), 주요 용도별 또는 목적별 자금지원 현황을 일원화하여 파악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다. 또한 자금의 조달방식도 예산확보의 수단이나 행정적 편의 등에 따라 여러 형태가 출몰하고 있다.

이와 같이 재원조달방법의 잦은 변화나 자금운용의 세분화는 자금의 안정적 확보나 자금의 효율적 관리를 어렵게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자금별 또는 항목별로 자금의 과부족 현상을 초래하여 정책자금의 신축적 운영을 불가능케 한다. 따라서 정책자금을 주요 목적이나 용도별로 그룹화하여 종합적으로 운용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④ 정책자금의 금리수준 조정

현행 정책자금의 금리수준은 영농후계자육성자금, 농지구입자금 등 몇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8%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비하여 농업자본의 수익률은[3] 농가평균 6.5%(1987년 현재)로서 농가의 입장

3) 농업자본수익률 계측방법에 관해서는 설광언, "농업자금의 이자율 수준에 관한 연구,"「농촌경제」, 제 11권 제 3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88.9, 참조.

에서 볼 때 현행 금리수준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3-39, 표 3-40〉. 농업자본수익률에 근거하여 이자율을 하향조정할 때 농가평균 농업자본수익률인 6.5% 수준을 그 기준치로 사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적절하지 못하다.

〈표 3-41〉에 나타나 있는 것은 경지규모별 농가수의 분포인데, 만약 정책자금의 이자율을 농가평균 농업자본수익률을 기준으로 하여 6.5%로 할 경우 이 보다 높은 농업자본수익률을 갖고 있는 농가계층은 1.5

표 3-39 주요 정책자금 금리수준

주요정책자금	이자율
단기농사자금	8%
농기계구입관련자금	8%
축산진흥기금	8%
금융중기	11.5%
후계자육성자금	5.0%
농안기금	8 ~ 10%

표 3-40 농업자본의 순수익률

경지규모 \ 연도	1975	1980	1985	1986	1987
0.5ha 미만	10.8	1.4	3.9	2.6	2.5
0.5ha~1.0ha	11.2	3.7	4.8	5.0	5.0
1.0ha~1.5ha	10.7	4.2	6.4	5.6	6.2
1.5ha~2.0ha	11.1	5.4	8.5	7.0	6.7
2.0 ha 이상	10.6	8.0	9.1	9.1	8.2
농가평균	11.0	4.6	7.0	6.5	6.5

주 : 농업자본 수익률 = $\frac{\text{순수익}}{\text{총투하자본}}$

총투하자본 = 재생산 가능한 자본액 + 차용지 평가액 + 자작지 평가액

순 수 익 = 농업조수입 − 농업경영비 (농지임차료 제외) + 재고생산자재 증감 − 자가노력비 − 조세공과 및 부담금

표 3-41 경지규모별 농가수, 1987

경 지 규 모	농 가 수 (천호)	구 성 비 (%)
0.5 ha 미 만	522	17.9
1.5 ~ 1.0 ha	647	34.6
1.0 ~ 1.5 ha	384	20.5
1.5 ~ 2.0 ha	163	8.7
2.0 ha 이 상	116	6.2
경 종 외 농 가	39	2.1
계	1,871	100.0

자료 : 농림수산부, 「농림수산 주요통계」, 1988.

ha 이상의 농가들로서 전체농가의 14.9%에 불과하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 농가의 5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경지규모 0.5 ha~1.5 ha에 해당하는 농가들의 농업자본수익률에 근거하여 정책금리수준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는 곧 금리수준이 5% 정도가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지적할 것은 정책농업자금의 대출금리수준이 5%가 될 경우 현재의 여타 금융기관의 예수금리수준보다 훨씬 낮아지는 預貸金利間의 逆金利現象이 생겨서 농가가 정책농업자금을 대출받아 본래 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금융기관에 예탁함으로써 금리차익을 얻고자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책자금의 대출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이다.

마. 금융자율화에 따른 변화

정부의 금융자율화 조치에 따른 금융여건의 변화는 금융기관으로서 농협의 위치변화와 기능분화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즉, 금리의 자유화와 지역금융기관의 증가, 이에 따른 금융기관간의 예금 및 대출경쟁의 심화는 농협이 지금까지와 같이 상업은행역할과 농업정책자금의 배분자로서의 역할, 그리고 경제사업을 통한 협동조합의 역할을 복합적으로 영위하

는 기관으로서는 심화되는 타금융기관과의 경쟁에서 불리한 입장에 설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농협의 신용사업부는 상업금융기관의 역할을 강화하지 않을 수 없고, 장기적으로는 신용사업부가 하나의 독립된 경영체를 갖추지 않는 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필연적으로 지금까지 유지되어 오던 신용사업부와 경제사업부와의 관계재정립이 문제로 대두된다. 즉, 현재 신용사업부분이 경제사업부분의 적자를 보전하던 관계가 지속되기 어렵기 때문에 두 부분간의 관계는 상업적 자금의 대체관계로 발전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곧 경제사업부가 원가의식과 수익성에 근거하여 경제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않을 수 없음을 의미하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현행 경제사업 중 적자요인이 되는 일부를 축소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농협중앙회의 기능이나 역할도 현재와는 달리 각 개별 단위협동조합의 연합회 성격을 강하게 띠게 될 것이다.

신용사업부의 전문적인 상업은행화와 농협의 민주화 추세는 정부로 하여금 정책농업자금의 공급경로를 현행대로 둘 것인가 하는 점을 검토하게 될 것인데 그 방법으로 거론될 수 있는 것은 정책농업자금의 공급을 농협이외의 타금융기관을 통해서도 가능토록 하는 방법과 새로운 정책농업금융을 전담할 기구를(가칭 농업금융금고) 설치하는 방법, 그리고 현행대로 두는 방법 등이 거론될 수 있다.

타금융기관을 통한 정책농업자금의 공급은 지금까지의 기존 조직망 등을 고려할 때 단위조합을 통하여 농민에게 공급하는 것보다는 비효율적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주로 논의될 수 있는 것은 새로운 기구를 설치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새로운 기구를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대농민 대출경로는 여전히 농협의 하부조직인 단위조합을 통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다. 그러나 재원의 확보나 관리운영을 현재와 같이 농협중앙회가 정부로부터 위임받은 형태를 취할 것인지 아니면 상업은행으로서의 기능강화에 따라 농협중앙회의 신용사업부를 완전히 상업금융화하고 대신 정책농업금융의 전담기구를 설치·운영할 것인지는 쉽게 결론을 내릴 수 없는 문제이다. 새로운 기구의 설치·운영은 필연적으로 그 조직의 운영과

유지에 필요한 별도의 비용이 수반될 뿐 아니라, 이 기구를 정부가 운영할 경우 지금까지 많은 경우에서 보아 온 바와 같은 비효율적 운영의 가능성이 대두된다. 그리고 새로운 기구의 인적 구성이나 관할권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농협중앙회의 기능 및 영향력 축소나 상대적인 정부의 영향력 강화를 쉽게 예상할 수 있다.

또한 농협중앙회의 입장에서 보면 새로운 기구의 설치로 인하여 지금까지 중앙회로 유입되는 막대한 액수의 자금이 중단되었을 때 과연 농협중앙회가 경영수지상의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타금융기관과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는지 의문시되며, 지금과 같이 정책자금을 농협예수금과 정부자금의 통합형태로 운영하는 체제에도 근본적인 변화가 수반되기 때문에 농협의 대 농민 대출업무도 축소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농협신용사업부의 독립과 함께 정책자금의 관리운영을 위한 새로운 기구의 설립은 농협중앙회 자체기능의 축소를 가져오게 되고 결국에 가서는 중앙회가 각 개별단위조합의 연합회 성격으로 변화하게 되는데, 이렇게 될 경우 이익단체로서의 농협중앙회의 정치적 비중은 본래의 체제가 유지되는 하에서 민주화되는 경우보다는 약화되는 반면 정부의 농업정책에 관한 상대적 입장 강화를 쉽게 예상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정부와 농협중앙회 사이의 이해관계 대립이 제도개편의 주요한 배경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제도개편은 이러한 이해관계에 앞서서 어떤 방법이 보다 효율적 정책수행에 도움이 되며, 농민에게 보다 나은 농업금융의 공급체계는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입장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제도의 변경은 항상 그에 따른 부작용과 피해집단이 발생하며, 일단 확정된 제도의 새로운 개편이 매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새로운 기구의 설치여부는 별도의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

제 4 장
상호금융의 현황과 과제

1. 상호금융의 자금조달과 운용

상호금융은 단위조합을 기본조직으로 하여 조합원으로부터의 예·적금을 받아서 원칙적으로 조합원에 대한 대출을 수행하는 금융중계기관이다. 조합금융인 상호금융의 개별 조합원 사이의 자금수급조정은 단위조합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단위조합간 또는 지역간의 자금수급조정은 농협중앙회에 설치되어 있는 상호금융특별회계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단위조합과 상호금융특별회계간의 중계업무는 농협중앙회의 시·군지부가 담당하고 있다. 한편 단위조합간의 자금수급조정은 단위조합들의 상호금융 예수금 중 여유자금과 상환준비예치금을 상호금융특별회계를 통하여 자금이 부족한 다른 단위조합에게 대출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그림 4-1 〉.

그림 4 - 1 상호금융자금 조달 및 운용 체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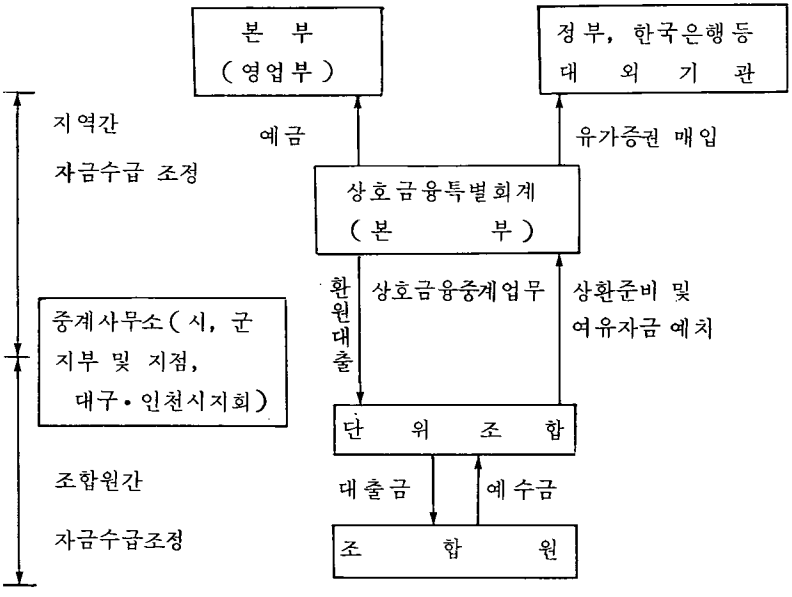

자료 : 농협중앙회, 「농협의 상호금융」, 1987.

표 4 - 1 단위조합의 재원조달과 운용방법

구 분	항 목	조 달 및 운 용 방 법	
		대 상	종 류
조달	예수금	농 민 조 합 원 (일부 비조합원)	별단예탁금, 정기예탁금, 장학적금 보통예탁금, 정기적금, 농가목돈마련저축
	차입금	중앙회(상호금융 특별회계)	지원자금, 운전자금, 일시차입금 등
운용	대출금	농민 조합원 (일부 비조합원)	일반대출, 적금대출, 자립예탁대월
	예치금	중앙회(상호 금융 특별회계)	상환준비예치금(전월말 예수금의 10 % 이상), 정기예치금
	현 금	자 체 보 유	보유한도 : 전월말 예수금의 3 % 이내

2. 상호금융의 현황

가. 예수금 현황

단위조합 상호금융의 재원조달은 고객의 예수금, 차입금, 출자금 등으로 구성되며, 이 중 출자금은 그 비중이 낮고 대부분 고정자산투자에 운용되므로 실제로 농업자금 또는 일반대출자금 등으로 활용되는 부분은 예수금과 차입금이다.

1987년말 현재 재원조달은 단위조합분 기준으로 볼 때 5조5천억원으로 이 중 예수금이 전체의 92.8%를 차지하고 있다. 상호금융의 예수금은 상호금융이 단위조합의 신용사업으로서 체계를 갖춘 1973년에 277억원이던 것이 1987년에는 5조1천억원으로 무려 184배나 증가하였는데, 예수금 성장률을 보면 1970년대에는 연평균 62.4%로 농협중앙회나 예금은행의 2배 수준이었고 1980년대에는 그 증가율이 다소 둔화되었으나 타금융기관보다도 훨씬 높은 수준을 유지하여 1987년 이후부터는 상호금융의 예수금이 농협중앙회의 예수금총액을 능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호금융 예수금의 급격한 신장은 금융상품으로서 상호금융 예

표 4 - 2 상호금융 예수금의 추이

단위 : 억원

연 도		상호금융 예수금	농협중앙회예수금	전체 예금은행 예수금
1973		277	1,694	17,604
1980		8,238	11,721	124,219
1985		26,283	27,167	310,227
1986		35,222	32,740	359,258
1987		51,072	45,841	457,204
연평균 증가율 (%)	'73－'80	62.4	31.8	32.2
	'80－'85	26.1	18.3	20.1
	'86－'87	39.5	30.3	21.5

자료 : 한국은행, 「조사월보」; 농협중앙회, 「조사월보」, 각호.

수금이 안정성, 편리성, 수익성을 모두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다. 즉 안전성에 있어서는 농협이라는 거대한 조직을 배경으로 신용도가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에 마을금고나 신용금고 등 타저축기관에 비해 안정성이 높고, 예금은행에 비해서도 안전성이 뒤지지 않기 때문이다. 편리성에 있어서는 단위조합이 종합농협으로서 여러 가지 경제사업을 동시에 취급하고 있어 고정적 고객의 확보가 유리하였고, 수익성에 있어서는 일반은행에 비해 예수금리수준이 높을 뿐만 아니라 이자소득에 대해 소득세 및 주민세의 면제혜택이 주어져 있기 때문이다.

상호금융 예수금의 특징은 예수금 구성에 있어 저축성예금의 비중이 매우 높다는 점이다. 상호금융의 저축성예금 구성비를 농협중앙회와 지방은행의 그것과 비교해 보면 1970년대에는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1980년대에는 지방은행이나 농협중앙회의 저축성예금 비중이 총예수금의 60% 수준에 머문데 비하여 상호금융의 저축성예금 비중은 80~90%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높은 저축성예금의 비중은 자금운영상 안정성이 높다는 장점이 되는 반면, 상호금융 예수금의 조달원가를 높임으로써 상호금융 대출금리의 인하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상호금융의 저축성예금 비중이 높다는 것은 상호금융의 중기성대출을 증가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하기도 한다.

한편 상호금융 예수금의 빠른 증가와 관련하여 일부에서는 농가가 충분한 여유자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간주하여 농업자금의 확대공급이나 부채경감조치 등에 대하여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 이는 농협의 상호금융 예수금과 농가의 예수금을 동일시하는 시각에서 비롯된

표 4 - 3 예수금 중 저축성 예금의 비중

단위 : %

연 도	1973	1979	1980	1985	1986	1987
상호금융	57.1	73.0	80.3	87.2	90.3	90.1
농협중앙회	58.1	67.8	70.2	64.3	65.8	59.7
지방은행	64.0	65.1	69.3	67.9	68.1	65.7

자료 : 농협 「조사월보」, 한은「조사월보」.

것으로서, 이하에서는 농협 상호금융 예수금 중 농가의 예수금이 얼마나 되는가를 살펴보기로 한다.

현재 농협의 상호금융예수금의 실적에 관한 통계는 농가, 비농가 별이나 조합원, 비조합원별로 구분 집계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는 1985년에 농협중앙회가 20개 단위조합의 사례조사를 통하여 얻은 결과를 이용하여 농가의 상호금융 예수금을 추정하였다.

〈표 4-4〉는 시·읍·면 단위에 소재하고 있는 단협의 상호금융예수금 중 농가의 저축비중을 나타낸 것으로서 시단위의 상호금융 예수금의 17%만이 농가의 저축분이고, 읍·면 단위 상호금융의 경우는 농가저축 비중이 각각 46.2%와 59.9%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농가저축비중이 최근 3년간 큰 변화가 없다고 가정하고, 이 비율을 각 지역별 상호금융 예수금(표 4-5)에 적용시켜 개략적으로 추정한 결과가 〈표 4-6〉에 나타나 있다. 이 결과에 의하면 상호금융의 예수금 중 농가저축분은 1987년말 현재 예수금의 42.4%에 해당하는 2조 1,640억원으로 추정된다. 한편 최근

표 4-4 상호금융 예수금 중 농가저축 비중

단위 : %

구 분	시	읍	면
농 가	17.0	46.2	59.9
비 농 가	83.0	53.8	40.1

주 : 농협중앙회의 20개 단협 사례조사(1985년 7월말 현재).
자료 : 농협중앙회, 「농협의 상호금융」, 1987.

표 4-5 지역별 상호금융 예수금

단위 : 억원

연 도	도 시	읍	면	계
1985	7,864	6,432	11,987	26,283
1986	12,034	7,471	15,722	35,226
1987	17,478	10,611	22,984	51,073

자료 : 농협중앙회, 「단위조합 경영계수 요람」, 1986 ~ 88.

표 4 - 6 상호금융 예수금 중 농가저축(추정)

단위 : 억원, %

연 도	농가저축(추정)				상호금융	A/B
	도 시	읍	면	소계(A)	총예수금(B)	(%)
1985	1,377	2,972	7,180	11,489	26,283	43.7
1986	2,046	3,452	9,417	14,915	35,226	42.3
1987	2,971	4,902	13,767	21,640	51,073	42.4

3년간 (1985 ~ 87) 예금자별 상호금융 예수금의 증가율은 농가가 연평균 37.2%인데 비하여 비농가의 상호금융 예수금 증가율은 41.1% 로 상호금융 예수금증가중 비농가부분에 의한 것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상호금융 대출금중 비농가에게 공급된 비중은 정확한 자료가 없으나 단위조합장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결과에 의하면 도시근교단협의 경우 20 ~ 40%, 그외 지역의 단협의 경우는 20%미만인 것으로 추정된다.

나. 상호금융 자금 운용현황

조달된 상호금융자금은 대출금, 중앙회예치금, 현금보유 등으로 운용되는데 이 중 대출금으로 운용되는 비중이 가장 높아 1987년말 현재 전체 운용액의 65.8%가 대출금으로 운용되었고, 상환준비예치금이 9.2%, 정기예치금이 23.4%, 현금보유가 1.7%를 나타내고 있다. 최근들어 상호금융의 자금운용에 있어 대출금의 비중이 점차 축소되고 (1983년의 73.6%에서 1987년에는 65.8%) 정기예치금의 비중이 급증하고 있는데 (1983년에 9.6%에서 1987년에는 23.4%), 이는 전체적으로 볼 때 상호금융의 예수금이 남아돌고 있음을 의미하므로 앞으로 상호금융의 과제는 대출확대 및 여유자금의 효율적 운용이 되어야 할 것임을 시사해 준다〈표4-7〉

그러나 이러한 여유자금 상황은 地帶別 또는 단위조합별로 각기 상이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4 - 8 〉은 1987년 현재의 도시형 단협과 농촌형 단협의 預貸比率을 나타내고 있는데 도시형의 경우는 그 비율이 57.8%로 여유있는 자금사정을 보이고 있는 반면, 농촌형 단위조합은 예·대비율이

표 4 - 7 상호금융자금 조달 및 운용실적*(단협)

단위 : 백만원, %

구 분		1983		1984		1985		1986		1987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조달	예수금	1,730,707	93.1	2,124,018	95.6	2,628,260	95.0	3,522,194	92.9	5,107,224	92.8
	차입금	128,796	6.9	97,565	4.4	139,218	5.0	271,193	7.1	397,395	7.2
	계	1,859,503	100.0	2,221,583	100.0	2,767,478	100.0	3,793,387	100.0	5,504,619	100.0
운용	대출금	1,367,905	73.6	1,584,485	71.3	1,855,631	67.1	2,532,208	66.8	3,618,599	65.8
	예치금 상환	220,477	11.9	241,583	10.9	289,977	10.5	357,829	9.4	506,577	9.2
	예치금 정기	178,311	9.6	248,981	11.2	375,209	13.5	674,821	17.8	1,290,282	23.4
	예치금 소계	398,788	21.5	490,564	22.1	665,186	24.0	1,032,650	27.2	1,796,859	32.6
	현금	65,611	3.5	69,558	3.1	80,791	2.9	75,062	2.0	94,148	1.7
	기타	27,199	1.4	76,976	3.5	165,870	6.0	153,467	4.0	△ 4,987	△0.1
	계	1,859,503	100.0	2,221,583	100.0	2,767,478	100.0	3,793,387	100.0	5,504,619	100.0

* 연말 잔액 기준.

자료 : 농협중앙회.

표 4 - 8 지역별* 상호금융의 예 · 대 현황

구 분		도시형				농촌형	계
			직할시	기타시	읍	면	
단위조합수		316 개 (21.6)	40 (2.7)	86 (5.8)	190 (13.0)	1,147 (78.4)	1,463 (100.0)
단협당	예수금(A)	88.7 억원	167.7	124.9	55.7	20.1	
	대출금(B)	51.3억원	67.1	68.5	40.3	17.4	
예대비 (B/A×100)		57.8	40.0	54.8	72.4	86.6	

*도시형은 행정구역상 시 • 읍에 소재하는 단협이고, 농촌형은 면에 소재하는 단협임.

자료 : 농협중앙회 상호금융부.

표 4 - 9 단위조합의 대출 현황

구 분 \ 연 도	1984	1985	1986	1987
총대출건수 (천건)	1,098	1,139(3.7)	1,384(21.5)	1,927(39.2)
총대출금액 (억원)	15,845	18,556(17.1)	25,322(36.4)	36,186(42.9)
건당대출액 (천원)	1,443	1,629(12.9)	1,829(12.3)	1,878(2.7)

* ( ) 안은 전년 대비 증가율%.

자료 : 농협중앙회, 「금융주요계수」, 각년도.

86.6%로서 단위조합이 지불준비를 위해 예수금의 13%를 보유해야 하는 것을 고려할 때 농촌형 단위조합은 대출재원의 부족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단위조합의 상호금융을 통하여 대출된 총대출건수는 1987년에 1,927천건으로서 건당 평균 대출액은 187만8천원이었다〈표 4-9〉.이를 대출형태별로 분류하면 총대출건수 1,927천건 중 無立保 신용대출이 3.4% 立保 신용대출이 71.0%, 농지담보대출이 5.3%, 일반담보대출이 20.2

%로 각각 나타나고 있어 담보나 보증인 없이 대출가능한 경우는 총대출 건수의 3.4%에 불과하다〈표4-10〉. 대출형태를 대출금액기준으로 분류해 보면 총대출금 3조6,186억원 중 무입보 신용대출이 2%, 입보 신용대출이 53.5%, 농지담보대출이 14.9%, 일반 담보대출이 29.6%로서 담보나 보증인 없이 대출된 경우는 총대출액의 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표4-11〉

표 4 - 10 단위조합의 대출 형태(건수별)

단위 : 천건, %

구분 \ 연도		1984	구성비	1985	구성비	1986	구성비	1987	구성비
신용대출	입보					988	71.4	1,369	71.0
	무입보					32	2.3	65	3.4
	소계	807	73.5	852	74.8	1,020	73.7	1,434	74.4
담보대출	농지담보			53	4.7	77	5.6	103	5.3
	기타담보			237	20.8	287	20.7	390	20.2
	소계	291	26.5	287	25.2	364	26.3	493	25.6
총계		1,098	100.0	1,139	100.0	1,384	100.0	1,927	100.0

자료 : 농협중앙회, 「금융주요계수」, 각년도.

표 4 - 11 단위조합의 대출 형태(금액별)

단위 : 억원, %

구분 \ 연도		1984	구성비	1985	구성비	1986	구성비	1987	구성비
신용대출	입보					13,199	52.1	19,361	53.5
	무입보					305	1.2	719	2.0
	소계	8,069	50.9	9,933	53.5	13,504	53.3	20,080	55.5
담보대출	농지담보			2,271	12.2	3,634	14.4	5,386	14.9
	기타담보			6,352	34.2	8,184	32.3	10,720	29.6
	소계	7,776	49.1	8,623	46.5	11,818	46.7	16,106	44.5
총계		15,845	100.0	18,556	100.0	25,322	100.0	36,186	100.0

자료 : 농협중앙회, 「금융주요계수」, 각년도.

다. 상호금융의 계절성

상호금융자금은 정책자금과는 달리 여신규제를 받지 않고 단위조합의 자금사정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단위조합이 자율적으로 자금을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비교적 농가의 계절적 자금수요에 맞추어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따라서 상호금융 대출금의 공급액변동은 농가의 상호금융에 대한 수요변화를 비교적 잘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상호금융 공급액의 분기별 공급비중을 보면 1/4분기에 가장 많은 공급(수요)을 나타내고 있고, 다음으로 2/4, 3/4, 4/4 분기의 순으로 공급액 비중이 점차 감소하고 있다〈표 4-12〉. 다만, 1986년도 4/4분기의 대출금 공급비중이 급증한 것은 당해년도의 후반기에 1인당 대출한도를 최고 2,000만원으로 확대하였고, 동시에 1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보증인 없이 신용대출이 가능토록 하였으며, 상호금융 중기대출(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을 신설하였기 때문이다.

상반기에 상호금융 대출수요가 집중된다는 것은 단위조합이 대출재원의 확보를 위해 상호금융 특별회계의 예치금을 집중 인출하게 되어 연말 기준으로 볼 때 상당한 여유자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으로는 상호금융 특별회계가 단협의 차입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자금부족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이러한 계절적인 자금수요의 편중으로 인하여 상호금융 특별회계의 여유자금 운용도 단기성투자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결국은 상호금융의 수익성을 저하시키는 문제가 발생하게된다.

표 4-12 상호금융의 분기별 공급비율

단위 : %

분기 / 연도	1/4	2/4	3/4	4/4
1980	38.7	25.0	23.2	13.1
1985	37.6	27.4	24.3	10.6
1986	34.2	22.2	18.8	24.7
1987	34.5	26.6	18.9	19.9

자료 : 농협중앙회 상호금융부.

라. 상호금융 특별회계의 자금조달과 운용

상호금융 특별회계의 자금조달은 단위조합의 상환준비예치금과 정기예치금, 특별회계 자체의 손익 및 적립금으로 이루어지는데 자금조달의 거의 대부분을 단위조합의 예치금이 차지하고 있다. 최근 5년간의 자금조달면에서 큰 변화는 단위조합의 정기예치금이 급증하고 있는 점이다. 이는 단위조합이 최근들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예수금을 대출로서 소화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유자금이 모두 상호금융 특별회계에 정기예치금으로 집중되기 때문이다〈표 4-13〉.

자금운용면에서는 단협이 상호금융 특별회계에 예치한 상환준비예치금을 1986년까지는 타금융기관의 예금형태로 보유하였으나 1987년부터는 통화안정증권이 지급준비예치로 인정됨에 따라 상환준비금을 통화안정증권보유의 형태로 운용하고 있다. 그 이유는 타금융기관에의 정기예치보다 통안증권의 수익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리고 단협의 정기예치금은 유가증권구입이나 C.M.A형태로 운용하거나 자금이 필요한 단위조합에 대출하고 있다. 단위조합에 대한 대출은 운전자금대출, 지원자금대출, 일시자금대출 등의 형태가 있는데 대부분의 대출이 운전자금대출이다. 이들 대출자금의 대출이자율은 1988년 현재로 운전자금대출이 11.7%, 지원자금대출이 5%, 일시자금대출이 13.5%이다. 반면에 단위조합이 상호금융 특별회계에 예치하는 자금에 대한 이자율은 상환준비예치금이 10%, 정기예치금이 예치기간에 따라 10%~11.5%의 이자율이 적용되고 있다. 상호금융 특별회계의 자금운용에 따른 수익은 단위조합의 예치이자율 및 대출이자율을 수시로 변경·조정함으로써 단협에 그 수익을 환원하고 있다. 그리고 상호금융 특별회계에 예치된 자금의 일부가 추곡수매입체를 위해 정부에 단기간(2~3개월) 대여되고 있는데 이것은 상호금융자금의 일시적 사용으로 D·C규제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여기서 상호금융 특별회계의 자금운용과 관련하여 한 가지 지적하고 넘어가야 할 것은 연말 기준으로 보아 상당히 많은 여유자금을 상호금융 특별회계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농업자금수요의 계절성으로 인하여 특별회계의 단협예치금과 대

표 4 - 13 상호금융자금 조달 및 운용실적(중앙회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

구분			1983년말		1984년말		1985년말		1986년말		1987년말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조달	예수금	상환	220,482	55.0	241,671	49.1	289,881	41.5	358,399	31.5	507,947	28.4
		정기	178,306	44.5	248,913	50.6	375,329	53.7	674,182	59.3	1,288,912	72.1
		(계)	398,788	99.5	490,584	99.7	665,210	95.2	1,032,581	90.8	1,796,859	100.5
	손익·기타		2,175	0.5	1,802	0.3	33,759	4.8	105,002	9.2	△8,965	△0.5
	합계		400,963	100.0	492,386	100.0	698,969	100.0	1,137,583	100.0	1,787,894	100.0
운용	유가증권		90,229	22.5	106,130	21.5	104,280	14.9	416,616	36.6	1,120,213	62.6
	대출금	지원	6,000	1.5	—	—	—	—	—	—	—	—
		운전	84,384	21.0	92,508	18.8	122,924	17.6	262,622	23.1	389,628	21.8
		일시	20,316	5.1	4,746	1.0	15,645	2.2	8,464	0.7	6,499	0.4
		(계)	110,700	27.6	97,254	19.8	138,569	19.8	271,086	23.8	396,127	22.2
	예치금	정기	100,000	24.9	129,000	26.2	123,000	17.6	108,000	9.5	—	—
		C.D	—	—	—	—	9,707	1.4	9,836	0.9	—	—
		보통	34	0.0	2	0.0	113	0.0	268	—	—	—
		C.M.A	—	—	—	—	323,300	46.3	258,600	22.7	253,100	14.2
		(계)	100,034	24.9	129,002	26.2	456,120	65.3	376,704	33.1	253,100	14.2
	가지급금		100,000	24.9	160,000	32.5	—	—	73,177	6.5	18,454	1.0
	합계		400,963	100.0	492,386	100.0	698,969	100.0	1,137,583	100.0	1,787,894	100.0

주 : 1987년의 유가증권속에는 상환준비용 통안증권보유 4,035억원 포함.

자료 : 농협중앙회, 「연차보고서」, 각년도.

출금이 계절에 따라 심한 변화를 보임에 따라 특별회계의 여유자금 보유 수준도 월별 또는 계절별로 심한 변동을 나타내고 있어 계절에 따라서는 단협이 대출자원 확보를 위해 특별회계에 예치금을 집중 인출함으로써 특별회계가 여유자금부족으로 단협의 차입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하여 특별회계의 對 單協 자금지원 역할을 어렵게 한다는 점이다.

마. 상호금융의 비농업금융화

〈표 4 - 14 〉는 상호금융자금을 차입하는 농가가 그 자금을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가를 나타내고 있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출된 상호금융이 농업용지출 (농업경영비, 자본적지출)을 위해 사용된 비율이 1983 년에는 60.1 %이던 것이 1987 년에는 38.8 %로 감소하고 있다. 비교적 단기성자금의 성격을 띠고 있는 상호금융자금이 농업경영비로 사용된 비율은 1987 년 현재 13 %에 불과한 것에 비해 가계비나 차입금 상환을 위한 지출이 전체의 60 %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이제 상호금융은 농업금융이란 성격이 약화되고 농촌지역의 가계금융화되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호금융의 가계금융화는 상호금융 대출이자율 결정과 관련해서 생각할 때 대출이자율 수준이 기타 농업정책자금 (특히, 단기농사자

표 4 - 14 상호금융 대출자금의 사용 용도

단위 : %

연도	농업용지출			겸업지출	가계비	기타지출	타인대여	계
		농업 경영비	자본적 지출					
1983	60.1	27.7	32.4	1.7	25.9	11.2	1.1	100.0
1984	50.8	20.3	30.5	1.0	20.9	24.8	2.5	100.0
1985	34.0	14.6	19.5	0.6	40.3	23.2	2.1	100.0
1986	31.3	14.6	16.7	1.3	30.9	35.0	1.3	100.0
1987	38.8	13.0	25.8	1.4	25.3	33.1	1.4	100.0

주 : 기타지출은 차입금 상환을 위한 지출이 대종을 이룸.
자료 : 농협중앙회.

금)의 이자율 수준과는 차등이 주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현재 농민의 일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과 같이 상호금융 대출금리 수준을 단기농사자금 수준으로 낮추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다만 현재 대출이자율 14.5%는 타금융기관의 일반대출 금리수준보다 높기 때문에 이를 일반대출금리 수준과 균형을 이루도록 하향조정할 필요는 있다.

3. 경제여건의 변화와 상호금융의 역할

최근들어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농촌의 도시화, 농가경제의 화폐경제화와 함께 금융자유화 조치에 따른 금리자유화, 신규금융기관의 시장참여 규제완화, 지방은행의 활성화 등은 일반금융기관의 농촌진출을 확대시키고 동시에 농촌지역의 고수익 금융상품 선호경향을 가속화시킬 것이다.이러한 여건변화에 비해 상호금융은 그 자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제약성—소액거래, 계절성, 높은 관리비용, 금융상품의 비다양성, 점포규모의 영세성 등—때문에 시장경쟁력이 약화되어 지금까지 상호금융이 농촌금융시장에서 누려오던 독점적 지위를 점차 상실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외부적 여건 이외에도 내부적으로 상호금융의 여유자금이 정책자금으로 전용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며(예를 들면 상호금융자금이 정책자금인 단기농사자금 공급재원으로 사용된 것이 1987년에 1,356억원이었고 사채대체자금으로 사용된 것이 약 3,800억원에 이름), 농가부채문제의 악화로 상호금융의 실질적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농민의 상호금융 대출금리 인하요구가 늘어나고 있다.

한편 농촌의 도시화, 공업화에 따라 농촌지역의 금융수요가 다양화되어 비농업부문의 생산자금수요나 소비금융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비조합원의 상호금융 대출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또한 농업경영주의 노령화 추세에 따른 농촌사회구조의 변화는 상호금융의 역할변화를 요구하게 될 것이다.즉 50세 이상 농업경영주의 비율증가로 농촌지역에서 고등교육비, 관혼상제비 등에 대한 지출증가가 예상되며 향후 이들 경영주의 대량은퇴와 함께

상호금융에 대해 각종 사회복지관련 금융상품의 취급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이상과 같은 제반여건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들이 필요할 것이다.

첫째, 상호금융 운용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서는 가급적 조성된 상호금융자금이 정책자금으로 전용되는 것을 억제하여야 한다. 현재 상호금융자금이 전용되는 이유는 정부가 담당하여야 자금의 일시적 부족을 보전한다는 측면도 있지만, 일면으로는 통화량조절과 관련하여 D.C규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측면이 강하다. 그러나 상호금융의 정책자금화는 단협의 자율성을 저해하게 되며, 상호금융자금의 일정분이 영농자금의 일부로 사용됨에 따라 영세단위조합이 많은 농촌형 단위조합의 자금운용수익을 잠식, 단협의 수지악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단협의 건전성을 위해서도 이러한 자금의 전용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여유자금을 가진 단협의 자금운용에 자율성을 부여하도록 해야한다. 단협의 여유자금을 현행과 같이 중앙회 특별회계에 정기예치하는 방법 이외에 각 단협별로 예수금을 일정한도내에서 — 예를 들면 6개월 이상 만기의 저축성 예·적금잔고의 일정비율 이내의 여유자금을 — 고수익 금융상품에 독자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단협의 수익성을 제고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단, 여유자금의 독자적 운용능력이 없는 단협은 특별회계에 예치하도록 하며, 장기적으로는 단협별로 지역이나 고객의 신용상태, 조

표 4 - 15 여유자금 운용시의 금융상품별 수익률 비교

단위 : %

금 융 상 품	수 익 률
특별회계 예치금리	11.5 %
회사채 수익률	12 ~ 13 %
CMA	12.0 %
CD	11.9 ~ 17.7 %
CP	12.3 ~ 12.5 %

자료 :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
농협중앙회, 상호금융부.

합원여부에 따라 차등대출금리를 적용할 수 있도록 단협의 경영능력을 높여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단협의 예수자금운용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대출을 확대하는 방안의 강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준조합원제도를 도입하고 또한 비조합원에 대한 대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비조합원에 대한 대출한도를 확대함으로써 지역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농가의 중기성자금수요의 증가에 부응하여 중기성 대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농가가 상환만기일에 이자와 함께 원금의 일정비율 이상을 상환할 경우 자동적으로 대출이 연장되는 방안도 고려되어야 한다. 그리고 본연구원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1987년 중에 상호금융대출을 이용한 농가는 조사응답농가 398호 중 35%에 해당하는 136호에 불과하였다〈표 4-16〉. 상호금융대출을 받지 않은 농가의 대부분은 그 이유를 대출의 필요성이 없었거나 높은 대출금리부담 때문이라고 대답하였지만, 조사응답농가의 약 7% 정도는 보증인문제나 담보부족을 이유로 들고 있다. 이러한 농가들에 대해서는 신용보증기금 이용을 확대토록 함으로써 대출을 확대토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넷째, 금융자율화와 관련하여 단위조합의 경쟁력문제는 대출보다도 예수금의 확보에 있게 될 것인데, 예수금 확대의 가장 큰 어려움은 타금융기관과의 경쟁심화가 될 것이며, 상호금융의 주요 경쟁기관으로는 우체국, 상호신용금고, 지방은행 등이 될 것이다. 현재 상호금융이 예수금 유치면에서 불리한 점은 1년 미만의 단기성 예수금리이다〈표 4-17〉. 따라서 상호금융

표 4 - 16 상호금융 대출을 받지 못한 이유

총 응답자	상호 금융 대출을 이용하지 못한 농가	그 이 유						
		대출 한도	보증인 구득난	담보 부족	대출 이자가 비싸서	대출 기한이 짧아서	대출 필요가 없어서	기타
398	262 (100.0)	11 (4.2)	10 (3.8)	8 (3.1)	58 (22.1)	6 (2.3)	163 (62.2)	6 (2.3)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설문조사결과.

으로서는 단기성 여유자금을 유치할 수 있도록 금리면에서 유리한 상품개발이 필요하다. 단협의 제일 중요한 경쟁대상인 우체국의 경우 소액단위의 단기성 환매채가 가장 중요한 예수재원으로서 (우체국 전체 예수금의 약 65%에 상당) 농촌지역에서는 독보적인 존재인데, 단협에서도 환매채의 취급이 가능토록 함이 좋을 것이다. 일부에서는 우체국의 단기성 환매채의 취급을 타금융기관과의 경쟁의 형평성문제나 국가의 저축시장개입 등의 이유로 폐지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단기성 고수익 금융상품에 접할 기회가 적은 농촌지역 주민에게도 고수익성의 단기성 금융상품의 공급이 필요하기 때문에 환매채를 존속시키되 이를 단위조합에서도 취급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우리가 단위조합의 예수금 확대문제를 강조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타금융기관의 예수금증가는 곧 자금이 농촌이외의 지역으로 유출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반하여 (예를 들면 체신예금의 경우 예수금의 지역환류는 약 5%에 불과함) 단위조합의 예수금은 대부분 농촌지역에 환류된다는데 그 이유가 있다.

다섯째, 상호금융 대출금리수준의 조정이 필요하다. 앞에서 우리는 농가의 부채문제나 경영수지악화와 관련하여 장기적으로 대출금리수준이 일

표 4 - 17 우체국 및 상호신용금고와의 단기예수금 금리 비교

단위 : % / 년

거치기간	우체국의 환매채	자유저축예금	상호금융의 정기예금	상호신용금고의 신용부금
7 — 15일	5.5	6.0	4.0	
16 — 30	6.5			
31 — 60	7.5			
61 — 90	8.5			
3 — 6개월	11.0	9.0	7.0	11.23*
6개월 이상	11.5	12.0	9.0	12.5 **
1년 이상			11.0	

* 100일 경우

** 10개월 경우

반금융기관의 대출금리수준으로 하향조정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상호금융대출금리의 인하는 수신금리의 인하조치가 수반되지 않는 한 단협의 경영수지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수신금리를 인하할 경우 금리수준의 변동에 민감한 비농민 저축의 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에 상호금융의 금리인하문제는 타금융기관의 여·수신금리수준에 연동시켜 점진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다.

이하에서는 여신금리인하가 단협의 수지나 농가수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개괄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조합원과 비조합원에 대한 차등금리를 적용하는 것으로 가정하되 예수금리는 불변이라고 가정하고 시산해 보기로 한다. 예를 들어 비조합원에 대한 대출금리는 현행대로 14.5%로 두고, 조합원에 대한 대출금리만을 1% 낮추었을 경우 단위조합에 미치는 효과는 단협당 년 2천만원 정도의 이자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여신금리 1% 감소시에 경영수지가 적자로 전환하게 되는 조합이 전체조합의 약 26%에 이르게 될 것인데 반하여 〈표 4-18〉, 농가의 수지개선 효과는 농가호당 이자부담경감이 16,000원에 불과하다. 이러한 결과는 상호금융 대출금리 인하문제가 쉽게 다룰 수 없음을 잘 나타내어 준다고 하겠다.

상호금융 대출금리의 인하에 따른 단협의 경영수지악화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영세단위조합의 통폐합을 통하여 조합의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상호금융이 금융기관으로서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규모의 경제를 실현

표 4 - 18 대출금리 1% 인하시 적자전환 단위조합 분포

단위조합의 유형	유형별 분포(A)	적자전환조합(B)	B / A (%)
도시근교형	126 개소	6 개소	4.8
읍소재형	188	15	8.0
평야형	515	272	52.8
산간형	634	89	14.0
계	1,463	382	26.1

할 수 있도록 영세규모의 단협을 지역여건과 경영상태를 고려하여 인근 단협과의 합병을 유도해야 한다. 현재 예수금 10억원 미만의 단협이 전체 단협의 9.7%에 해당하는 142개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들 조합을 인근 단위조합에 합병토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표 4-19 〉.

조합간의 합병을 유도하기 위하여 합병시에 합병단협에 지원하는 합병보조를 현재 3년간 무이자로 5억원을 지원하고 있는 것을 8억원 정도로 개선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리고 현재 단협경영수지의 적자요인이 되고 있는 경제사업중 불요불급한 것은 각 개별단협이 판단하여 축소·조정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덧붙여 1987년 현재 단위조합당 약 1,500만원 정도 지출되고 있는 지도사업비는 정부가 전액 보조해 주는 것이 타당하리라고 본다.

표 4 - 19 예수금 규모별 단협 분포

예수금 규모	10억원 미만	20억원 미만	30억원 미만	50억원 미만	70억원 미만	100억원 미만	200억원 미만	200억원 이상	계
단협수	142	594	261	226	88	48	76	28	1,463
(%)	(9.7)	(40.6)	(17.9)	(15.4)	(6.0)	(3.3)	(5.2)	(1.9)	(100.0)

자료 : 농협중앙회, 「단위조합 경영계수요람」, 1988.

제 5 장
요약 및 결론

o 농가의 저축규모는 1987년말 현재 농가호당 평균 256만원으로 도시가구의 평균저축액 (479만원)의 절반수준이며, 도시가구와는 달리 가구주 또는 경영주의 연령이 높은 농가일수록 저축보유액이 낮다. 이는 경영주의 연령이 50대가 넘는 농가가 우리 나라 전체 농가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농가자체에 의한 농업자금조달이 어렵다는 것을 시사해 준다. 한편 저축보유농가의 분포를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전체 농가저축의 45%가 저축보유가 많은 상위 10% 농가들에게 집중되어 있는 편중현상을 보이고 있어 최근 농가저축증가가 일부 상위계층농가에 의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o 농가의 저축행태를 조사한 결과 저축목적중 농업생산을 위한 중장기투자 재원의 마련을 목적으로 한 것은 매우 낮은 비중을 보이고 있어 중장기투자재원을 정책적으로 공급해 주지 않는 한 농가에 의한 중장기재원 확보는 어렵다고 본다.

o 농가의 저축기관 선택기준은 금융기관과의 인적 관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수익성 여부는 아직도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낮게 평가되고 있다. 조사결과 현행 거래금융기관보다 타금융기관의 예수금 이자율이 1% 정도 높을 경우 거래선을 옮기겠다는 농가는 전체조사농가의 9

%에 불과하여, 농가가 금융기관선택에서 이자율변화에 비탄력적으로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농가의 사금융저축의 한 형태인 계가입 목적은 친목과 상부상조가 대부분이고 수익성 때문에 가입하는 농가는 20%에 불과하였다. 농촌 친목계의 상당부분이 여행목적 등의 소비성 계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재산증식을 목적으로 한 계 가입은 상당히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재산증식목적의 계는 현물계가 많은데 비해 소비성계는 대부분 현금불입의 형태를 띠고 있는 특성을 보였다.

ㅇ 부채규모별 농가분포에 있어서는 부채 없는 농가가 21.8%이고, 300만원 이상의 부채를 지고 있는 농가는 전체 농가의 약 28.5%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도시가구와 비교해 볼 때 대부분의 농가가 동일소득수준의 도시가구보다 월등히 많은 부채를 보유하고 있고, 소득수준이 낮은 계층의 농가일수록 동일소득계층의 도시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농가가 도시가구와는 달리 소비주체인 동시에 생산주체이기 때문에 농업생산에 필요한 자금을 외부로부터 계속 차입할 수밖에 없다는 특성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ㅇ 정책자금중 단기농사자금은 현실적으로 농가의 영농비지원 이외에 농가의 자금수급불균형을 보완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데, 이러한 기능을 고려한다면 농가의 차입금증가, 그 중에서도 사채 및 상호금융차입이 많은 시기인 1/4분기에 보다 많은 단기농사자금을 배분함으로써 농가의 불필요한 이자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단기농사자금공급액을 계절별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통화규제방식이 직접규제에서 간접규제로 전환함에 따라 농가가 자신에게 배정된 단기농사자금을 필요한 시기에 인출하여 자금수급을 조절할 수 있도록 「자동대출한도제」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ㅇ 농업기계화자금의 상환방법에 있어 현재의 자금상환방식은 1년 거치 4~7년 균분상환으로 되어 있는데 반해 농기계의 자본소득은 초기에 많이 발생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하기 때문에 자본소득과 상환액의 불일치로 인한 부채누증을 피하기 위하여 원리금상환방식의 체감식 상환

방법으로 전환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ㅇ 농기계자금의 이자율은 기종에 관계없이 연 8%가 적용되고 있는데 1986년 기준으로 볼 때 바인더 건조기 그리고 기계화영농단의 경우 보조가 없을 때 이앙기를 제외한 모든 기종의 자본수익률이 현행 금리수준에 못 미치고 있다. 트랙터, 이앙기, 콤바인 등은 현재 자본수익률이 농기계자금의 이자율보다 높기는 하지만 우리 나라 농가의 대부분이 농기계투입에 의한 수입을 임경작업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을 볼 때 향후 계속적인 농기계보급의 확대에 따라 농기계 이용면적이 감소되면 농기계수익률이 감소될 것이기 때문에 조만간 농기계자금의 대출금리인하요구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된다.

ㅇ 정부의 농지구입자금 운용방식을 간접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대상자 선정을 위한 종합평가배점기준에 따르면 영농전문기술성과 영농후계자여부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영농후계자가 후계자육성자금을 어떤 용도로 주로 사용하고 있는가를 보면 농지구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농지구입과 관련하여 영농후계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크며 영농후계자 선정기준에 학력이 중요한 선발요인이 되고 있음을 비추어 볼 때 결국 농지구입자금혜택자의 선정과정에 학력이 중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지금까지 농지구입자금혜택을 받은 농가의 80.6%가 농과계통의 학력과는 상관없는 농가였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영농의지가 확고한 농가가 선정될 수 있는 방법이 보다 명문화될 필요가 있다.

ㅇ 현재 농지구입자금의 지원한도는 호당 7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예상되는 농지가격상승과 이에 따른 농가의 자부담증가를 감안할 때 구조조정을 위한 중·대농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현행 지원한도액을 상향조정해야 한다. 농가호당 농지구입자금 지원한도액의 상향조정과 더불어 농지구입자금의 전체적인 공급규모확대가 동시에 수반되지 않는 한 수혜대상농가의 감소가 불가피해지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재원확보가 필요할 것이다. 다만 농지구입자금공급확대가 농지구입수요의 급증을 가져와 농지가격상승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농지구입

자금의 융자를 지역별·시기별로 분산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농지구입을 목적으로 일정기간 일정액수를 농협에 불입한 농가에게 우선적으로 농지구입자금의 융자혜택을 주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 농가가 상호금융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농업생산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비중이 1983년에는 60.1%이던 것이 1987년에는 38.8%로 감소한 반면 소비성지출을 위한 상호금융차입이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상호금융은 이제 그 성격이 농업금융에서 농촌지역의 가계금융으로 변모하고 있다. 이러한 상호금융의 가계금융화는 상호금융 대출이자율결정과 관련하여 생각해 볼 때 대출이자율수준이 일부 농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단기농사자금의 금리수준으로 낮출 수는 없음을 시사해 준다. 다만 현행 상호금융금리수준이 일반 금융기관의 대출금리수준보다 높은 것은 점차적으로 일반대출금리수준으로 접근시켜 나가야 한다.

○ 금융자율화에 따른 경쟁심화와 농촌의 도시화에 따른 금융수요 다양화 등 상호금융을 둘러싼 여건변화는 상호금융의 역할변화와 함께 경영방식의 개선을 아울러 요구하고 있다. 새로운 여건변화 속에 상호금융이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호금융자금의 정책자금 전용방지, 수익성확보를 위한 단위조합 여유자금의 독자적 운용허용 등을 통해 상호금융 운영의 자율성이 확대되어야 하며, 영세조합의 통폐합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도록 유도하고 예수금경쟁을 위해서 상호금융의 단기성 환매채취급이 허용되어야 한다.

참 고 문 헌

농협중앙회, 「정책자금대출실무교재」, 1986, 1987, 1988.

_____, 「금융주요계수」, 각년도.

_____, 「농협조사월보」, 각호.

_____, 「한국의 농업금융」, 1982.

_____, 「한국농업의 제문제」, 제 3집, 제 4집.

_____, 「농협의 상호금융」, 1987.

_____, 「농가신용실태조사결과보고」, 각년도.

_____, 「연차보고서」, 각년도.

_____, 「농업금융의 현황과 발전방향」.

_____, 「단위조합 경영활성화세미나 결과보고서」, 1988.

_____, 「농업·경제통계요람」, 1987.

_____, 「농협연감」, 각년도.

농림수산부, 「농가경제조사결과보고」, 각년도.

_____, 「농수산업금융편람」, 1986.

_____, 「농림수산주요통계」, 각년도,

_____, 「농지구입자금지원현황과 과제 : 농지구입자금의 효율적 지원방안에 관한 토론회자료, 1988」.

강정일외, 「농업기계화사업의 장기정책방향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88.

박진환, "농산물가격안정하에서의 중장기성저리자금의 수요증가에 관한 연구", 「농업경제연구」, 제 29집, 한국농업경제학회, 1988.

서종혁, 설광언, 박성재, 「농가의 채무이행과 금리부담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88.

서종혁, 박성재, 「농가자산 및 차입구조의 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농

촌경제연구원, 1985.
설광언, "농업자금의 이자율수준에 관한 연구", 「농촌경제」, 제 11권 제 3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88. 9.
이정환, 정안성, 「농업금융제도 개선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80
장경수, "농촌저축계의 구조분석", 「농협조사월보」, 1979. 9.

研究報告 175
農業金融供給體系 改善을 위한 基礎調査研究

1988년 12월

發行人 金 榮 鎭
發行處 韓國農村經濟研究院
130-05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4-102
登録 1979年 5月 25日 第5-10號
電話 962-7311
印 刷 株式會社 文 花 社
電話 739-3911~5

出處를 明示하는 한 자유로이 引用할 수 있으나 無斷轉載 및 複製는 禁함.